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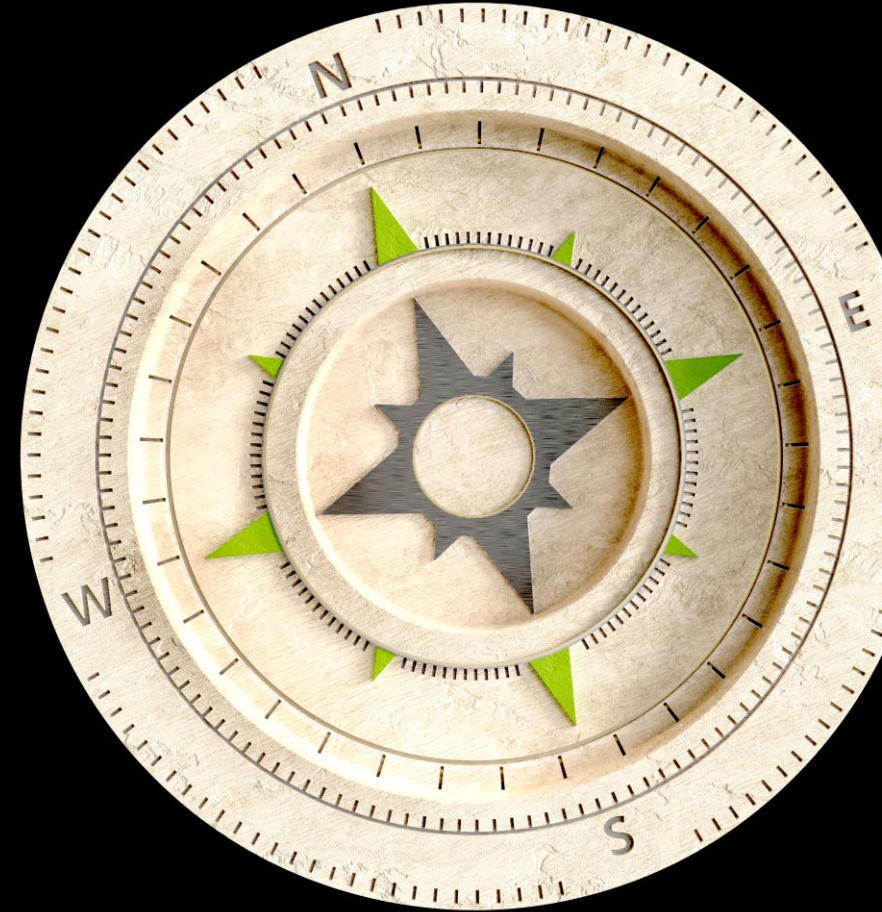
Deloitte.

Webinar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2 웨비나

일시 2022년 11월 23일(수) 14:00 - 16:00

주최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Schedule

- 2022년 11월 23일(수), 사회: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시간 | 내용 | 연사 |
|--------------------|---|--|
| 오후 1:55~2:00 (05분) | 참석자 안내 | 사회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
| 오후 2:00~2:05 (05분) | 인사말씀 | Audit & Assurance 본부 장수재 본부장 |
| 오후 2:05~2:20 (15분) | 세션 1.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동향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
| 오후 2:20~2:55 (35분) | 세션 2. 현행 회계감독기구에 대한 이해 -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 |
| 오후 2:55~3:05 (10분) | Break Time | |
| 오후 3:05~3:25 (20분) | 세션 3. 자금사고방지 현황과 대응방향 | Transformation & Analytics 이승영 수석위원 |
| 오후 3:25~3:45 (20분) | 세션 4.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 리스크자문본부 채수완 이사 |
| 오후 3:45~4:00 (15분) | Q&A / Closing | 세션 강연자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2 웨비나

Session

세션 1.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동향



김한석 센터장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Audit & Assurance 본부 COO · 파트너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사업 및 지분구조개선센터 센터장
-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이사

세션 2. 현행 회계감독기구에 대한 이해 -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박재환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前 비상임위원
-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前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前 위원
-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 심사위원 前 위원

세션 3. 자금사고방지 현황과 대응방향



이승영 수석위원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수석위원
- Audit & Assurance 본부 Transformation & Analytics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세션 4.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채수완 이사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
- Risk Advisory 본부 Data Analytics 리더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내부감사협회 강사
- 강원랜드 감사자문위원
-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前 외부자문위원



Session 1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동향

Contents

- I.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소개
- II. 글로벌 이사회 동향
- III.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
- IV. 결언



1.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소개

I.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소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2014년에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를 설립하여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된 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회계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설립 이후 월간 뉴스레터, 분기별 Brief, 이사회·감사위원회 실무 가이드북과 딜로이트 글로벌 자료의 한글 번역본 발간 등 다양한 자료 발간과 세미나 개최 등으로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실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소개 (계속)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 QR-Cod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역할

간행물 발간

- 월간뉴스레터, 분기별 Brief 등 간행물로 실무 진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사례 제공
- 딜로이트 글로벌의 발간보고서 번역본 등 제공 (Best Practice 포함)

교육 및 네트워킹

- 사외이사·감사(위원) 대상 화두가 되는 아젠다 기반의 세미나 진행
- 참석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소규모 행사 제공 본격화 계획 (그룹사 별 행사 포함)

II. 글로벌 이사회 동향

1. 개요
2. 글로벌 이사회 안건 비중
3.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할애 시간 예시
4. ESG와 이사회 거버넌스
5. 임원배상책임보험
6. 이사회 평가활동
7. 이사회 보수

II. 글로벌 이사회 동향

1. 개요

본 소단원에서는 국내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글로벌 이사회 동향에 대해 아래의 질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서베이 결과를 논의할 것입니다.



Q1. 글로벌 이사회에서 주로 다루는 안건은 무엇이고 그 비중은?

Q2. 글로벌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업무 수행 시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Q3. ESG와 이사회 거버넌스 정립 방향은?

Q4. 임원배상책임보험 동향은 어떠한가?

Q5. 글로벌 이사회 평가활동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Q6. 글로벌 사외이사의 보수 수준은 어떠한가?

II. 글로벌 이사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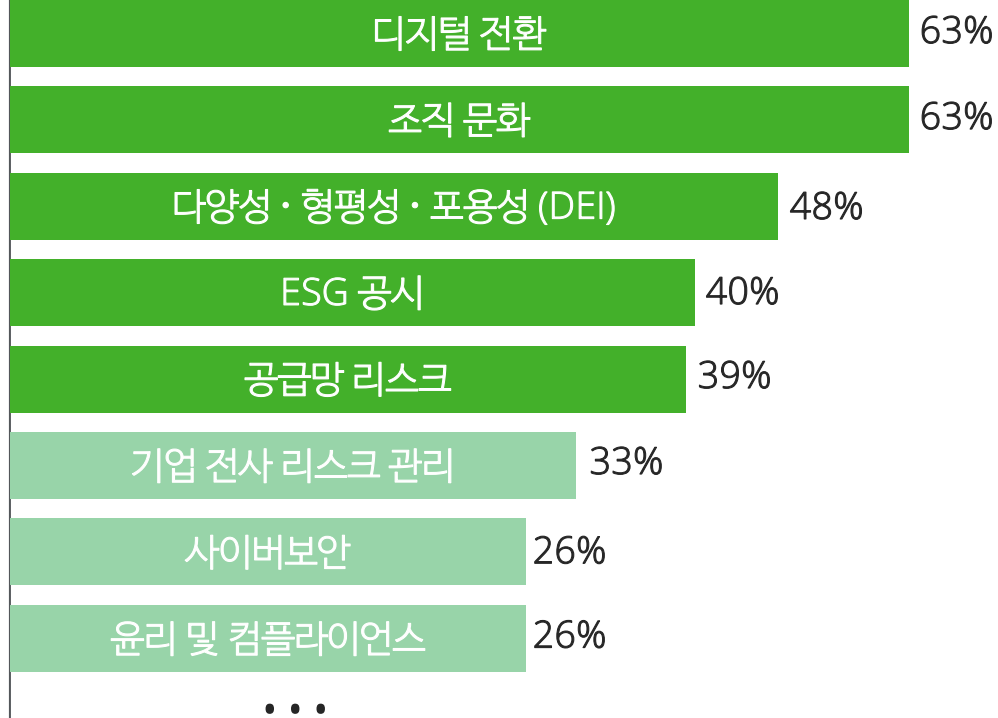
2. 글로벌 이사회 안건 비중

글로벌 이사회의 경우 주로 디지털 기술 및 조직문화 형성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루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거래활동, 경영 및 인사부문 안건이 대다수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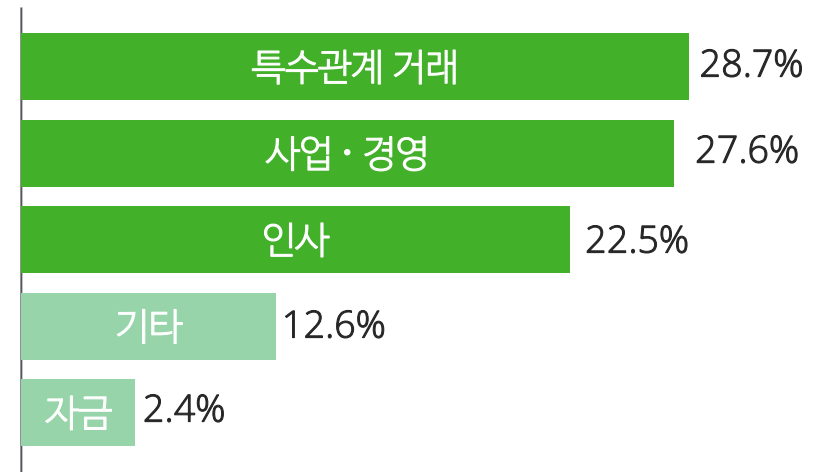
안건 비중 (*1)

(중복응답 포함)



국내

안건 비중 (*2)



(*1) 글로벌 Deloitte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2) CEO스코어, 「2020년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 277사 사외이사 이사회 활동 전수조사」, 2021.0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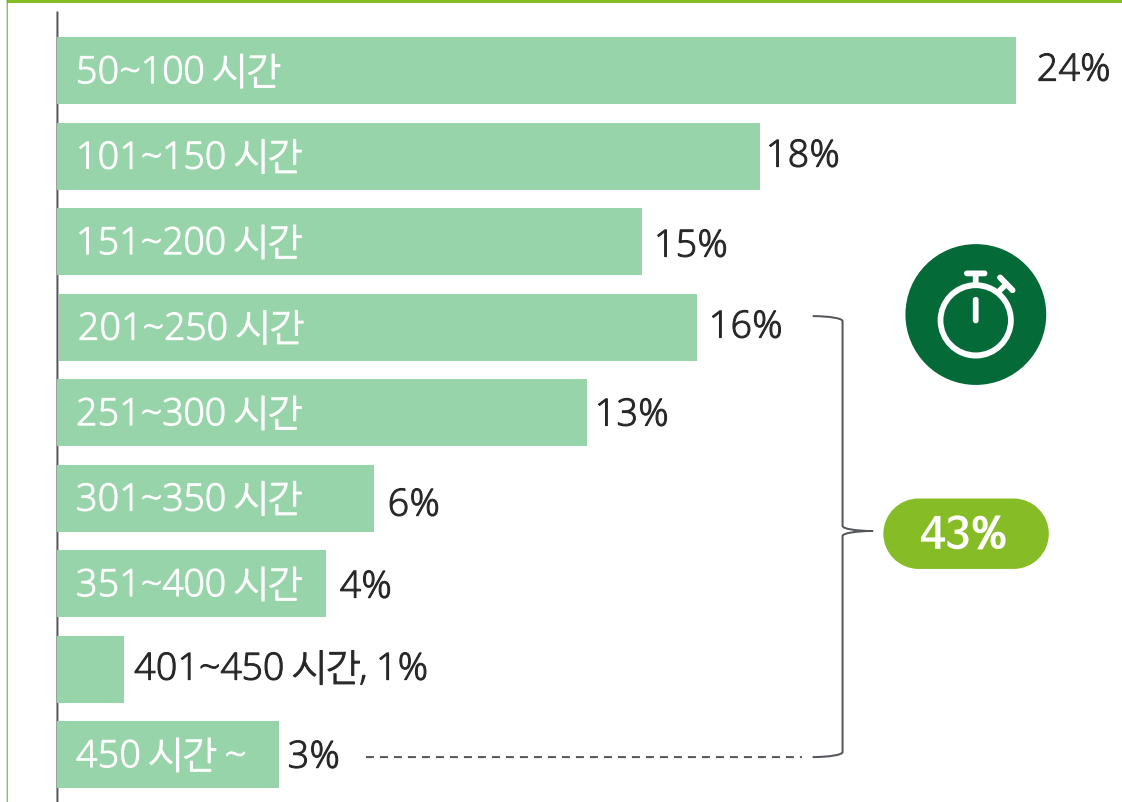
II. 글로벌 이사회 동향

3.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할애 시간 예시

서베이 결과 글로벌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 200시간 이상 할애하는 사외이사는 43%로 나타나는 등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아젠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중 투입시간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할애 시간 예시 (*1)



주요 결과

- 응답자의 43%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활동에 연 200시간 이상 소요
- 감사위원회의 경우 대응해야 할 리스크 범위가 빠르게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투입 시간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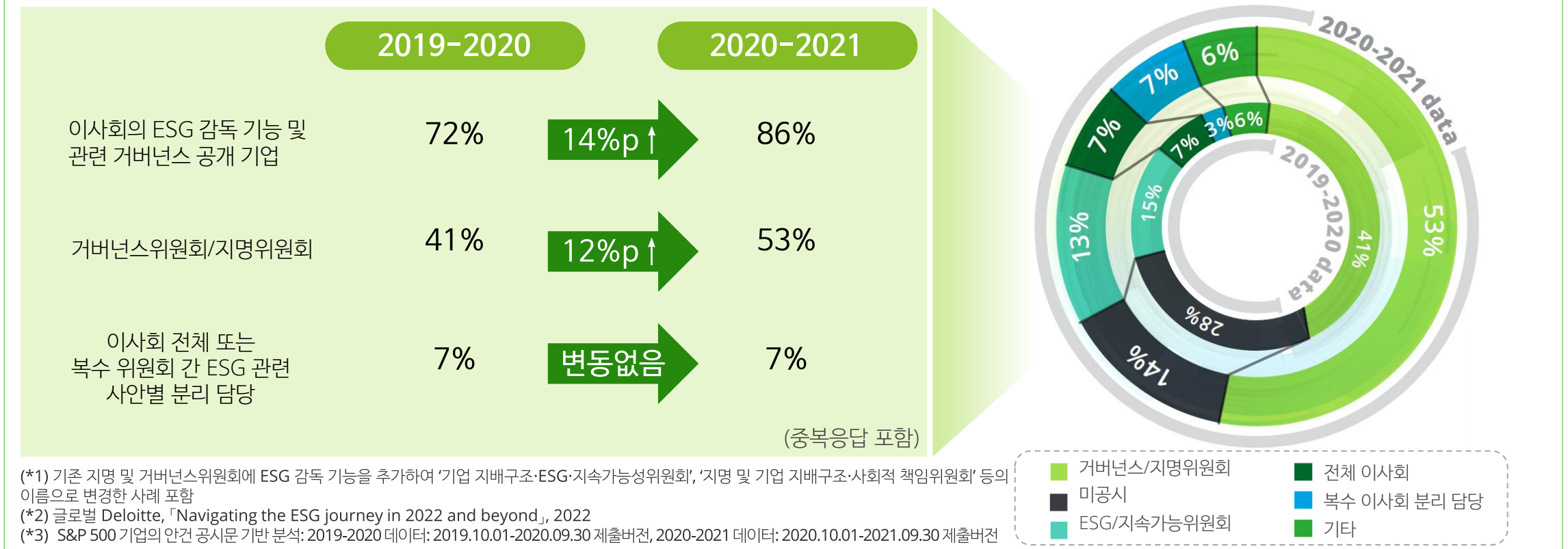
(*1) 글로벌 Deloitte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감사위원 글로벌 246명 대상

II. 글로벌 이사회 동향

4. ESG와 이사회 거버넌스

S&P 500 기업 기준, ESG 경영 도입에 따른 신규 감독 기능 측면에서 전체 86% 기업의 이사회가 관련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의 ESG 감독 담당 위원회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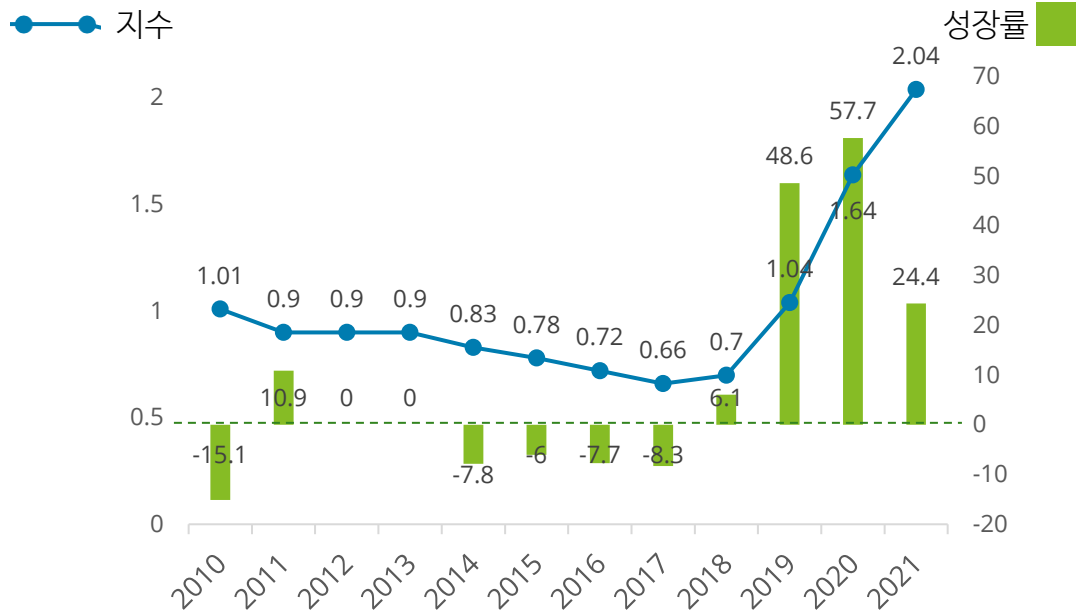


II. 글로벌 이사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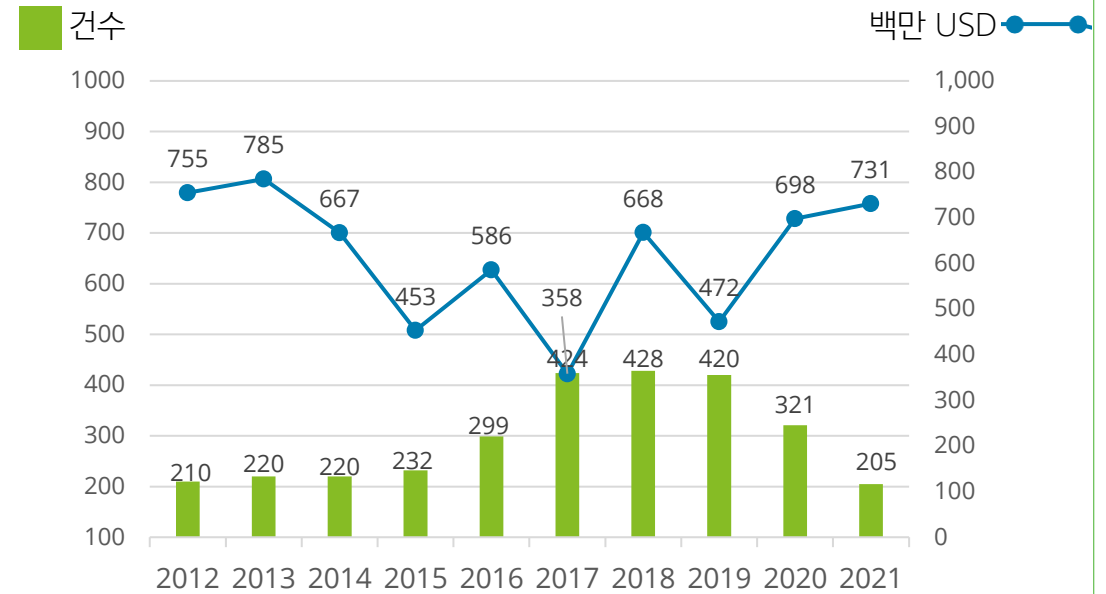
5. 임원배상책임보험

2017년 이후 미국 내 상장회사의 건별 평균 집단소송액이 증가하면서, 2010년~2018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지수는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사외이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위험보장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경영건전성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간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지수추이('10 ~ '20)(*1)



미국 연간 상장회사 집단소송 제기 건수 & 건당 투자자 평균 피해규모 ('12 ~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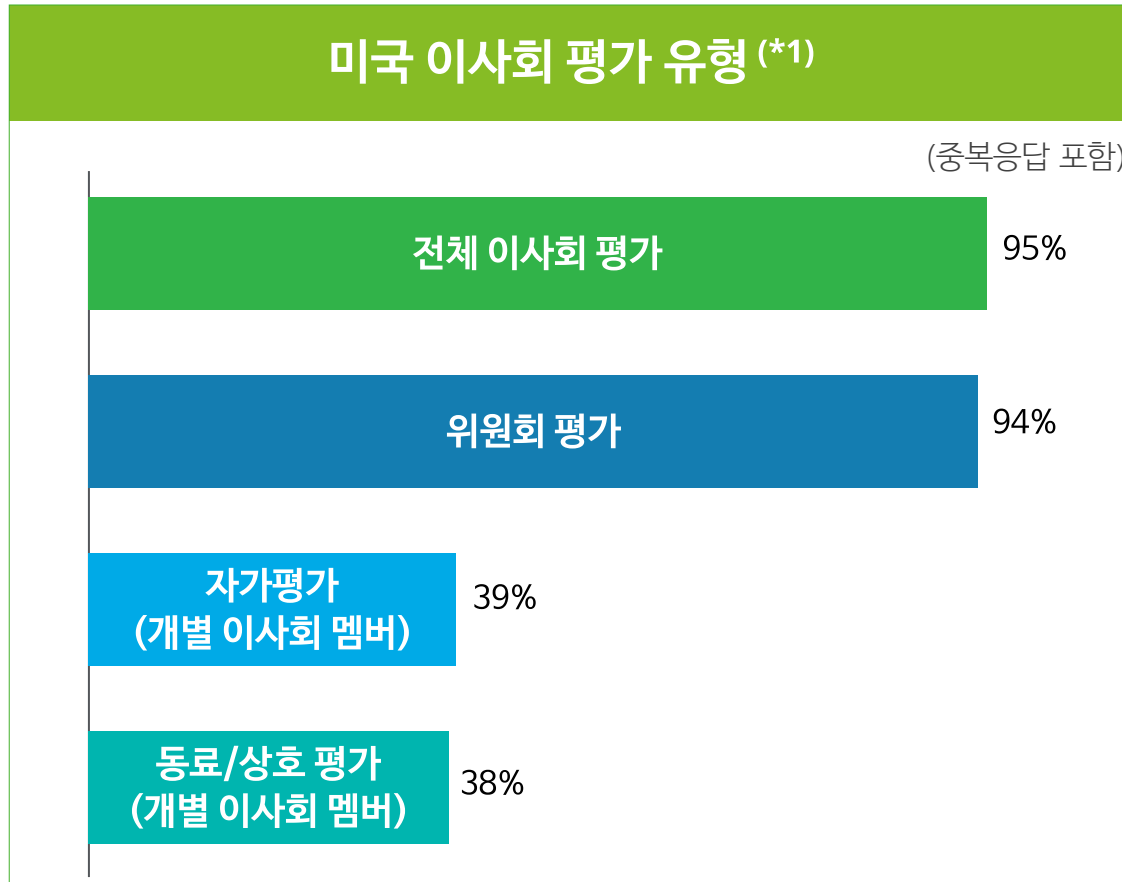
(*1) AON, 「Quarterly D&O Pricing Index」, 2022. 3Q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총보험료/총 보장 한도의 가중평균으로 2001년을 기준연도로 삼음 (2001년 지수는 1임)

(*2) NERA Economic Consulting, 「Recent Trends in Securities Class Action Litigation: 2021 Full-Year Review」, 2022.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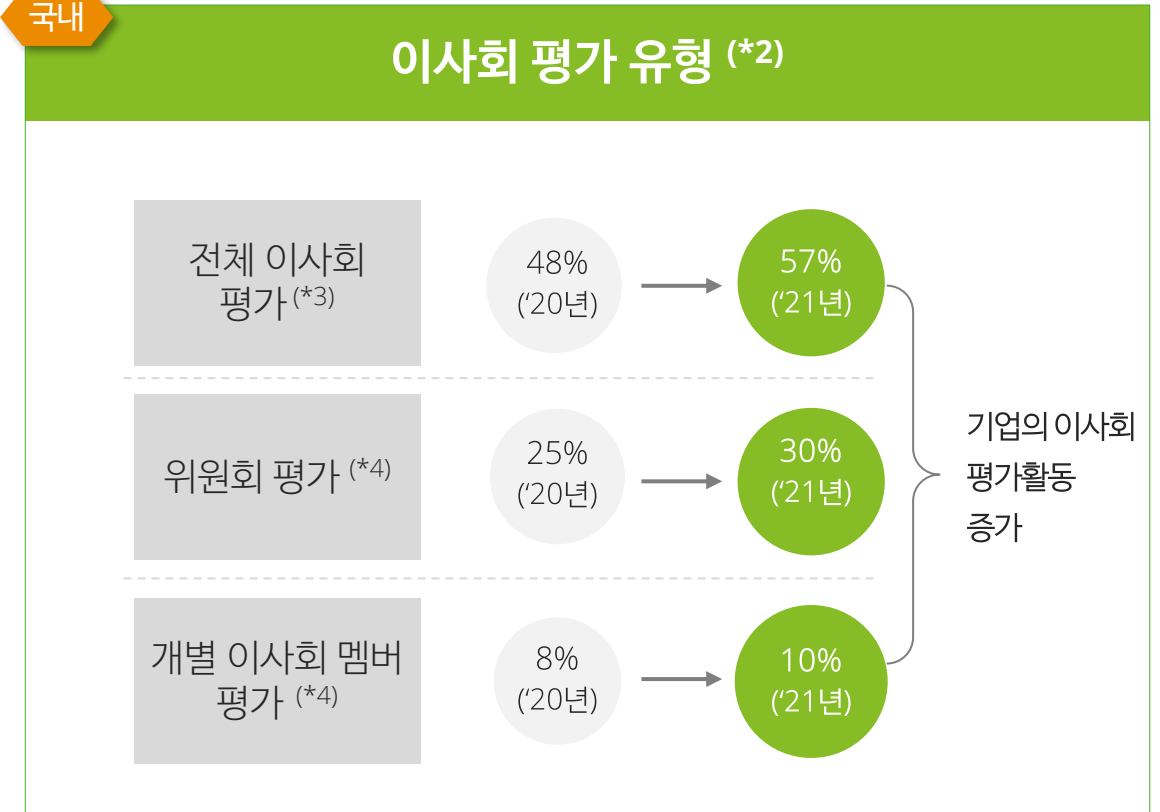
II. 글로벌 이사회 동향

6. 이사회 평가활동 (1)

미국의 경우 NYSE 상장규정 상 이사회 평가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강제화되는 반면, 국내의 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음에도 이사회 평가 활동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변화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Deloitte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Best Practices Quarterly」, 2022.09, 미국 상장법인 154사 이사진, 거버넌스 전문가, 사내변호사, 주주관계 업무 총괄 고위직 대상



(*2) 대신경제연구소, 「이사회 실효성 평가의 중요성」,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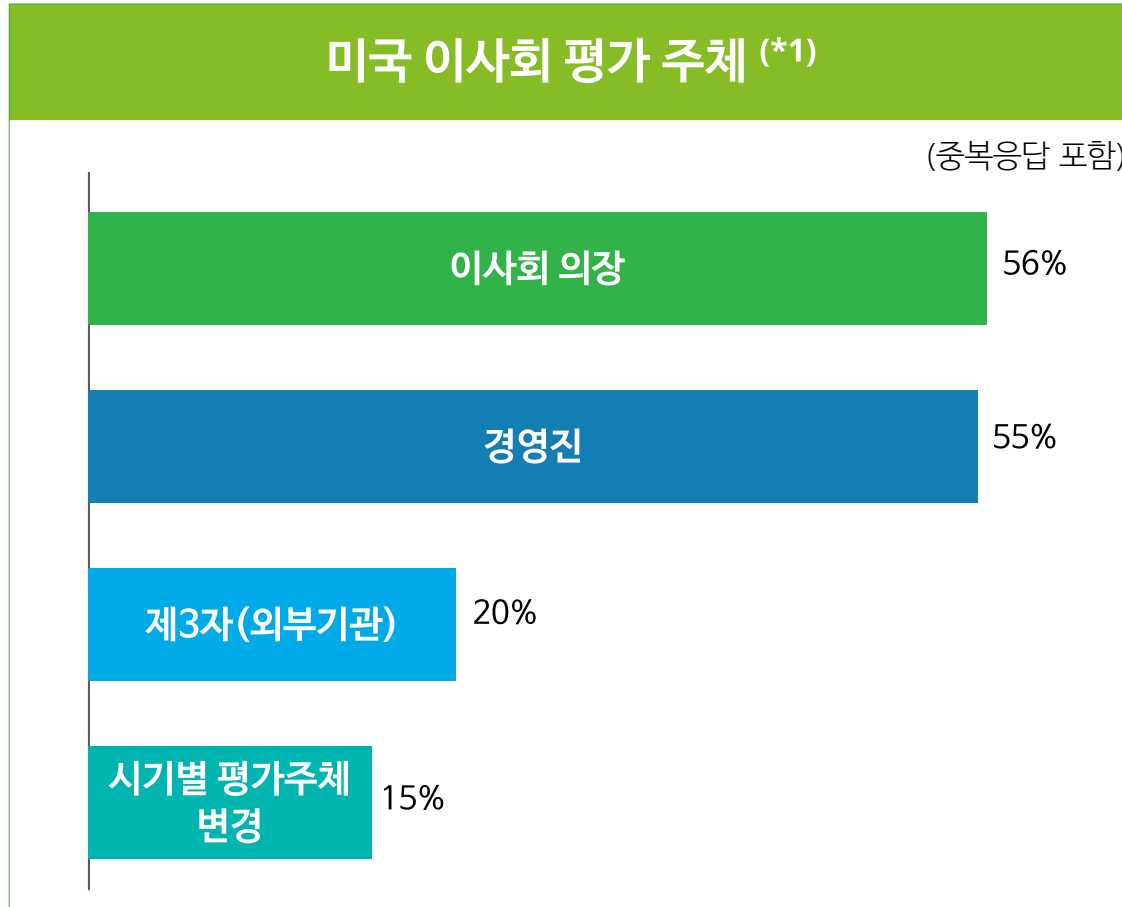
(*3) 2020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215사(의무공시 대상: 자산 2조원), 2021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345사(의무공시 대상: 자산 1조원) 중에서 각 연도별로 금융사 및 공공기업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4) 2020년(48사), 2021년(57사)의 기업 중에서 해당하는 비율을 의미함

II. 글로벌 이사회 동향

6. 이사회 평가활동 (2)

미국의 이사회 평가의 주체는 이사회 의장과 경영진의 두 축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제3자 외부평가의 비중도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이사회와 위원회 구성, 회의 및 전문성·경험·역량·다양성 등의 항목이 상위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사회 주요 평가 항목 (*1)

(중복응답 포함)

| 주요 평가 항목 | 비중 |
|-----------------------------------|-----|
| 이사회 구성 - 인원, 선임, 승계계획, 오리엔테이션 | 96% |
| 위원회 구성 - 감독분야/범위, 위원장 및 멤버 임명 절차 | 95% |
| 회의 - 주기, 시간, 유형 (대면/비대면/혼합) | 92% |
| 회의자료 - 정보흐름, 보고, 회의 전 회람여부, 안건 설정 | 91% |
| 전문성, 경험, 역량, 다양성 | 88% |
| 이사회 문화 | 86% |
| 감독 책임 | 81% |
| 이사회 운영 | 80% |
| 이사회 리더십 - 의장 및 위원장 | 79% |
|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 | 68% |
| ... | |

(*1) 글로벌 Deloitte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Best Practices Quarterly」, 2022.09, 미국 상장법인 154사 이사진, 거버넌스 전문가, 사내변호사, 주주관계 업무 총괄 고위직 대상

II. 글로벌 이사회 동향

7. 이사회 보수

글로벌 사외이사 1인당 평균보수 수준은 국내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 사외이사의 경우 국내 사외이사 대비 위원회 검임 수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회의자료 검토, 비공식 회의, 외부감사인 및 유관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에 투입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로벌

사외이사 보수 (*1)

| 글로벌 주요 300대 기업 시가총액 |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 (2021) |
|------------------------|-----------------------|
| 대형 상장법인 (100억 USD 이상) | USD 294,167 |
| 중형 상장법인 (20억~100억 USD) | USD 236,000 |
| 소형 상장법인 (20억 USD 미만) | USD 185,833 |

지급방법

현금 40%

주식 57%

기타 3%

(*1) 회사가 제시한 평가항목을 충족할 경우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e)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음

국내

유가증권시장 사외이사 보수 (*2)

| 구분 | 1인당 평균보수 (2021) |
|-------------|-----------------|
| 사외이사 | 4,430 만원 |
| 감사위원 | 4,980 만원 |
| 감사위원 외 사외이사 | 3,934 만원 |

지급방법

- 사업보고서 상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미공시

(*1) FW Cook, 「Director Compensation Report」, 2021.11

(*2)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유가증권시장 2021년 사업보고서 제출기업 773사 사외이사의 평균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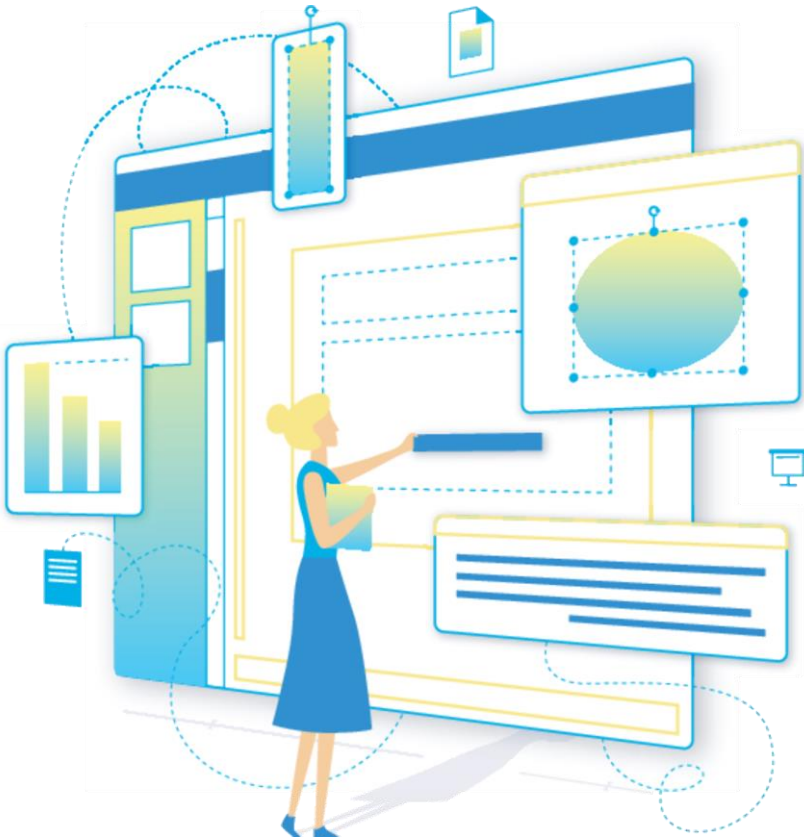
III.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

1. 개요
2. 감사위원회 주요 감독 영역
3. 재무보고 감독
4. 리스크·내부통제 감독
5. ESG 감독
6. 내부감사 감독
7. 외부감사인 감독
8. 전문성 확보

III.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

1. 개요

본 소단원에서는 국내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에 대해 아래의 질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서베이 결과를 논의할 것입니다.



Q1. 주요 아젠다 중 재무보고 감독의 비중은?

Q2. 부정 모니터링 수단 및 코로나로 인한 부정 리스크의 변화는?

Q3. 전사 리스크 감독 책임 보유자는 누구이고 감독 할애 시간의 변화는?

Q4. 사이버보안감독 할애 시간의 변화와 추가 지식 필요성은?

Q5.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비적정 의견 비율과 미비점 유형의 차이는?

Q6. ESG 검증 검토, 독립적 외부검증 획득 현황은?

Q7. 내부감사부서의 주요 활동 영역, 보고라인 및 추가 책임수행 영역은?

Q8. 외부감사인 선정의 주요 평가요소 및 감사 파트너 선정 관여 효과는?

Q9. 감독 영역별 전문성 보유 현황과 전문성 필요 영역은?

III.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

2. 감사위원회 주요 감독 영역

감사위원회의 주요 감독 영역은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인 감독, 리스크·내부통제 감독, 내부감사 감독 및 ESG 감독으로 요약되며 해당 영역 중심으로 서베이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참고

III.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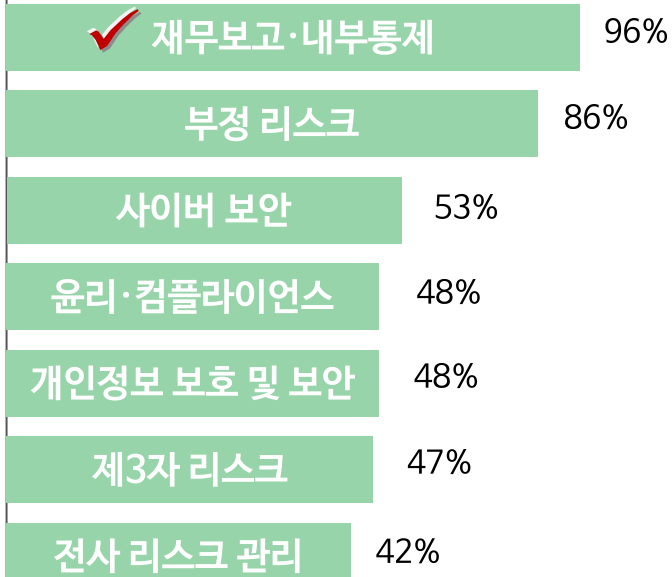
3. 재무보고 감독 – Overall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는 감사위원회의 핵심 책임 영역입니다. 응답자의 96%는 올해 해당 영역 감독 활동에 작년과 유사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아젠다는 분기별로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가 핵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책임 영역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시장의 신뢰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영역에 충실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감사위원회 아젠다 핵심 중점영역 (*1)

(중복응답 포함)



글로벌

논의주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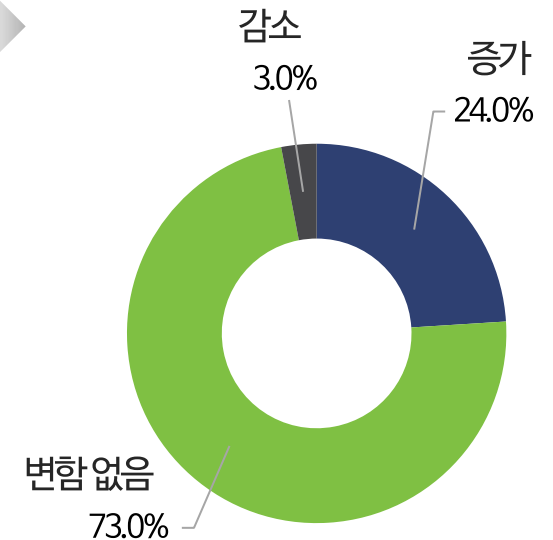
(중복응답 포함)

| 감독영역 | 분기별 | 반기별 | 연간 | 필요시 |
|------------|-----|-----|-----|-----|
| 재무보고·내부통제 | 89% | 5% | 2% | 3% |
| 부정 리스크 | 54% | 13% | 16% | 16% |
| 전사 리스크 관리 | 46% | 30% | 18% | 6% |
| 제3자 리스크 | 22% | 27% | 17% | 32% |
| 사이버 보안 | 60% | 22% | 8% | 8% |
| 개인정보 보호·보안 | 41% | 25% | 14% | 18% |
| 윤리·컴플라이언스 | 74% | 11% | 9% | 6% |

글로벌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 감독 시간 (*1)

(작년 대비) 예상 감독 할애 시간



(*1) 글로벌 Deloitte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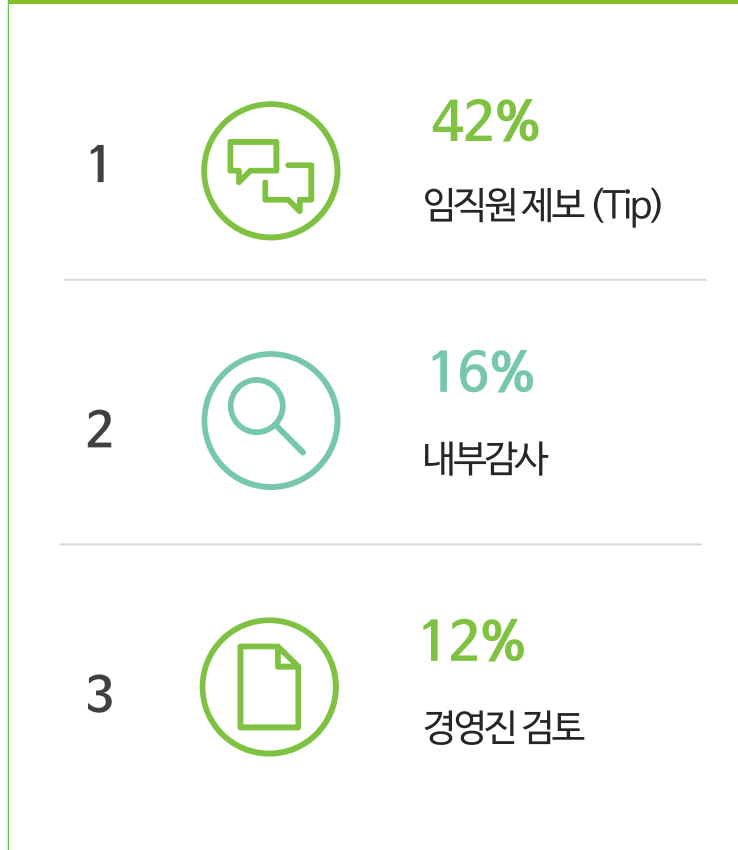
III.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

3. 재무보고 감독 – 부정조사 및 보고 (1)

부정 모니터링은 주로 부정행위 제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감독당국은 중장기적 회계부정 억제 대책으로 내부신고 활성화,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정 모니터링 수단 TOP 3 (*1)





국내


감독당국 회계부정 억제 대책 (*2)


新외부감사법에서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회계부정 근본 처방 제시 

 금융위원회 회계개혁평가·개선추진단 1차 회의(22.9.1) 중 정부기조

 **내부신고 활성화**
 • 회계부정 포상제 확대 및 익명신고 허용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 책임 강화

 **감리 강화**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감리주기 단축

 **처벌 강화**
 • 과징금 제도 신설 (개인 포함), 징역 강화 (5년 → 7년, 무기징역)

부정행위 신고 촉진을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은? (*3)

- 내부신고 관련 평가·테스트·감사방법에 대한 이해도 확인
- 내부신고 프로세스 및 통제를 통해 신고의 기밀성, 정확성, 적시성이 확보되는지 확인
- 내부신고 프로세스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평가 및 벤치마킹 되는지 확인
- 신고 접수 건이 경영진에게 보고되지 않는지 확인을 위해 무결성 테스트 수행
- 내부신고 된 부정혐의 및 기타위반 내용을 기반으로 Tone at the top 강화 필요성 확인
- 내부신고 관련 전사적인 정기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마련 여부 확인

(*1)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Occupational Fraud 2022: A Report to the nations」, 2022, 2020.01~2021.09까지 조사된 133개국의 부정 2,110건 대상

(*2)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2022.09.05 (*3) 글로벌 Deloitte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Questions for audit committees to consider」, 2022

III.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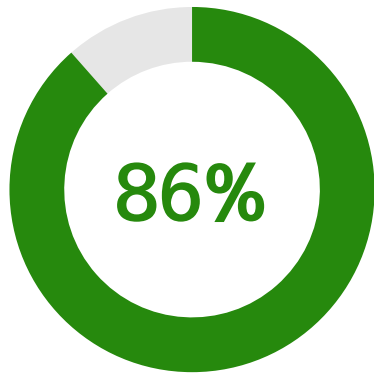
3. 재무보고 감독 - 부정조사 및 보고 (2)

감사위원회의 핵심 감독 영역으로 부정 리스크가 꼽혔고, 응답자의 42%는 코로나로 인해 부정 리스크가 증가한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부정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업데이트, 내부감사 집중, 부정방지 프로그램 마련 및 내부신고의 효과적 운영이 요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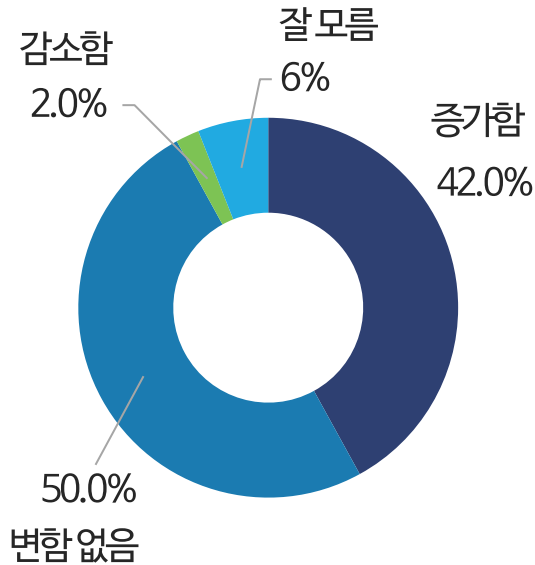
글로벌

부정 리스크 감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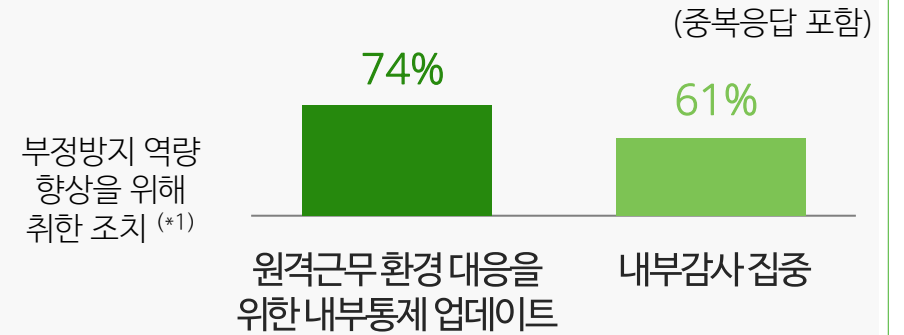
감사위원회의
부정 리스크 감독 담당



코로나로 인한 부정 리스크 변화



감사위원회 과제 (*1)



부정방지 프로그램 & 내부신고



- 부정행위 방지 프로그램 마련
- 경영진에게 내부신고 핫라인의 효과적 운영 요구

내부통제 변화 인지



- 내부통제가 원격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경영진에게 지속적 질문 필요

(*1) 글로벌 Deloitte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III.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

4. 리스크·내부통제 감독 (1) - 전사 리스크

응답자의 42%는 감사위원회에게 전사적 리스크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그 중 32%는 증가하는 신흥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사 리스크 감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 윤리원칙 준수 지원, 내부신고 프로그램과 Hotline 운영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글로벌

전사 리스크 감독 책임은? (*1)



42%
감사위원회



33%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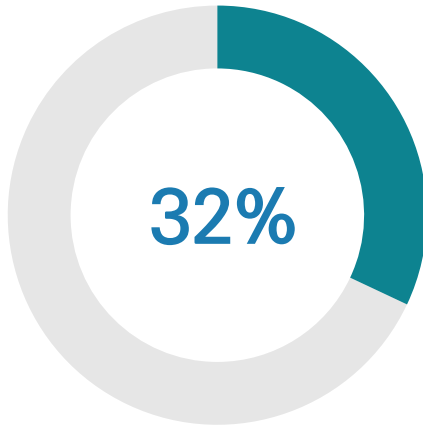


20%
리스크 관리 위원회



5%
기타

(작년대비)
전사 리스크 감독 예상 할애 시간 증가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1)



리스크 관리의 핵심

- 윤리·컴플라이언스 및 제3자 리스크는 모두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의 핵심



윤리원칙 준수 지원

- 재무보고·내부회계관리제도보다 광범위
- 법률·규정뿐 아니라 기업윤리원칙 준수 지원



내부신고 프로그램

- 감사위원회가 기업의 문화와 분위기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중요한 수단



Hotline

- 핫라인을 통해 보고된 내용을 전달받을 때 감사위원회는 트렌드 및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질문할 필요성 있음

(*1) 글로벌 Deloitte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III.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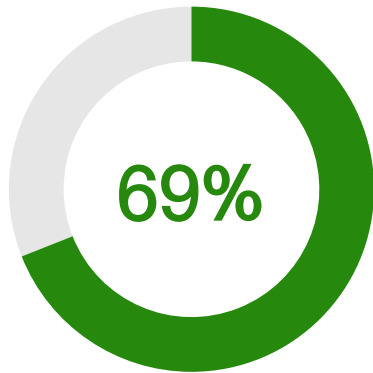
4. 리스크·내부통제 감독 (2) – 사이버보안

2순위 중점 리스크 영역으로 꼽힌 사이버보안은 2022년 주목할 최대 리스크 중 하나이며 추가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의 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참석 혹은 관련 외부전문가를 배석시킨다면 효과적인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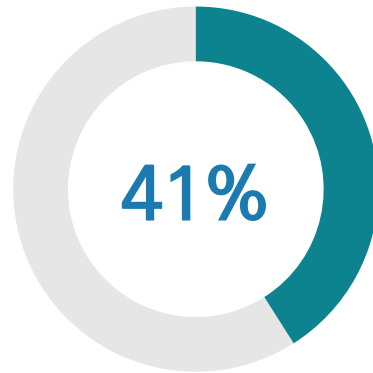
글로벌

사이버보안 감독 (*1)

(작년대비)
사이버보안감독 예상 할애 시간 증가



(타리스크 영역대비)
사이버보안 관련 추가 지식 필요



감사위원회 과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참석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의 감사위원회 회의 정기 참석



Outside-In 접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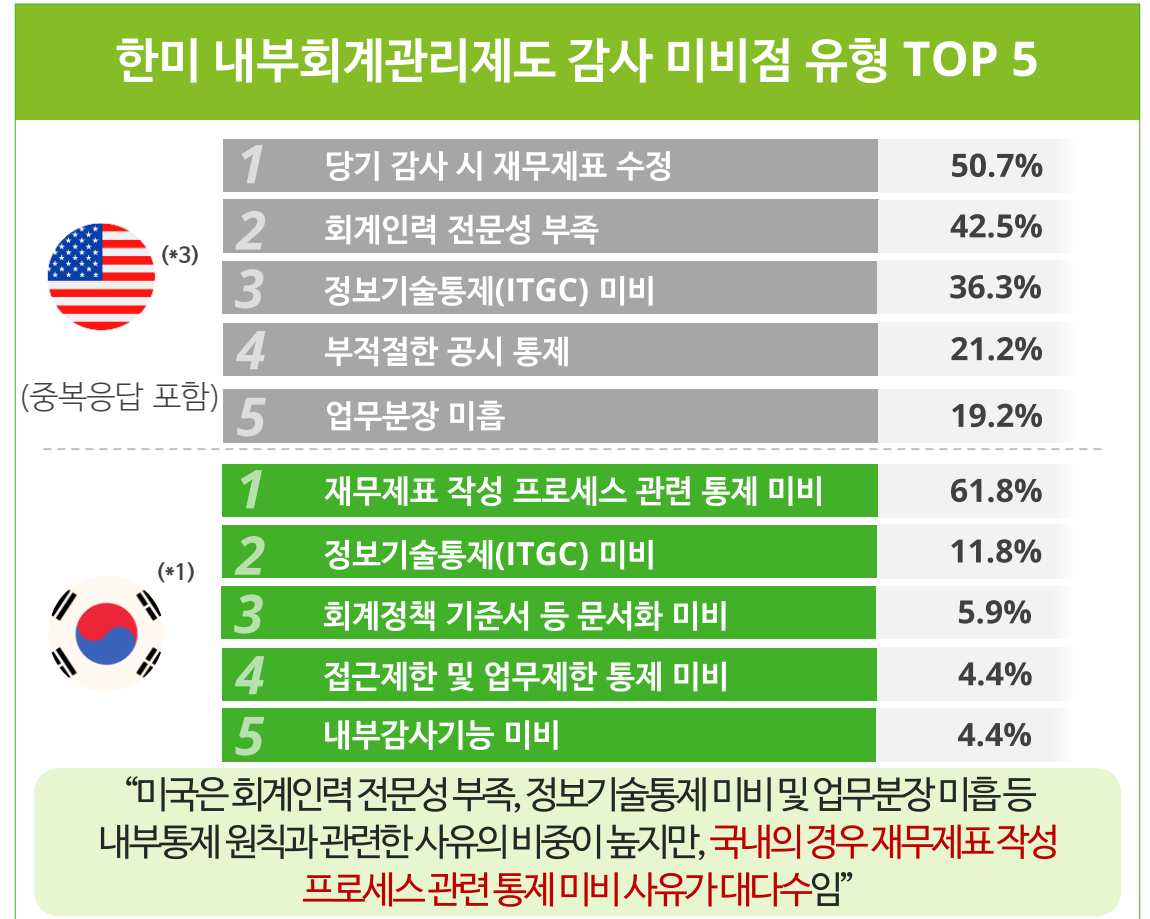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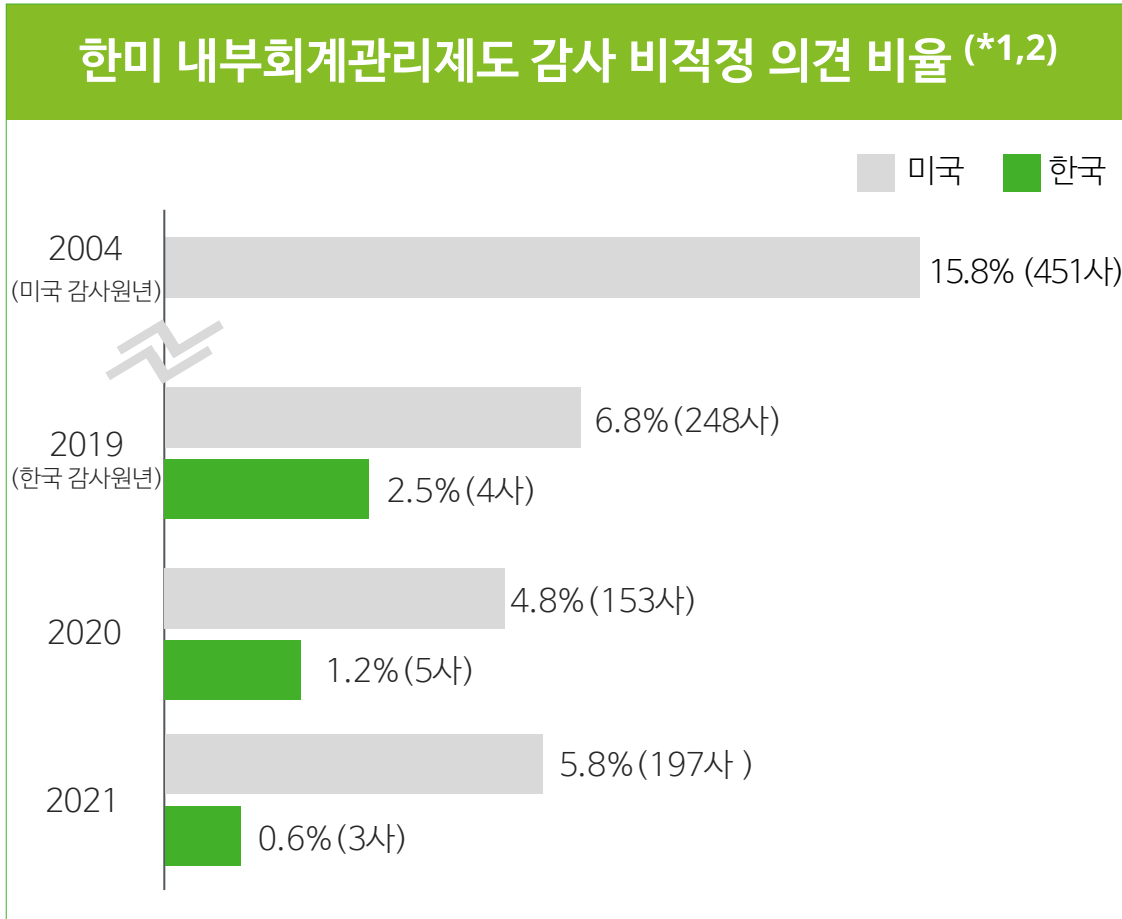
- 외부감사인 또는 관련 외부전문가에게 참석 요청(CISO와 함께)을 통해 아웃사이드-인(Outside-in, 기업활동을 고객의 시선에서 바라봄)관점 접근 가능

(*1) 글로벌 Deloitte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III.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

4. 리스크·내부통제 감독 (3)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국의 경우 SOX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준함) 감사 실시 이래 비적정 의견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적정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보다 면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1) 금융감독원,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2021.9.24 (*2)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n eighteen-year review」, 2022.07

(*3)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n seventeen-year review」, 2021.10

III.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

5. ESG 감독

감사위원회는 기존 감독영역과 연관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기후 리스크 관리, ESG 공시, 관련 외부감사 및 제3자 검증 등에 대한 감독을 우선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응답자의 67%는 감사위원회에서 ESG 검증 검토를 수행하며, 응답자의 약 70%는 1개 이상의 ESG 혹은 지속가능성 데이터 요소에 대한 독립적 외부검증을 획득하고 있거나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ESG 중요성의 대두를 시사합니다.

글로벌

기후 관련 신규 감사위원회 감독 영역 TOP 5 (*1)

(중복응답 포함)

| 구분 | Global | Americas | APAC | EMEA |
|--|--------|----------|------|------|
| (리스크 관리) 기후 리스크 식별 및 평가 절차의 효과성 | 64% | 63% | 64% | 64% |
| (기업 공시) 보고서 내 기후 리스크 및 기회 관련 정보의 일관성 | 63% | 52% | 56% | 75% |
| (기업 공시) 기후 리스크 및 기회 대응 관련 재무적 영향 - 재무제표 내 반영 | 60% | 54% | 56% | 66% |
| (외부감사) 기후 관련 재무제표상의 리스크 식별/조치를 위한 외부감사인의 접근 방식 | 56% | 53% | 51% | 62% |
| (제3자 검증) 기후 관련 공시 정보에 대한 검증 의견의 효과성 및 독립성, 객관성 | 48% | 42% | 43% | 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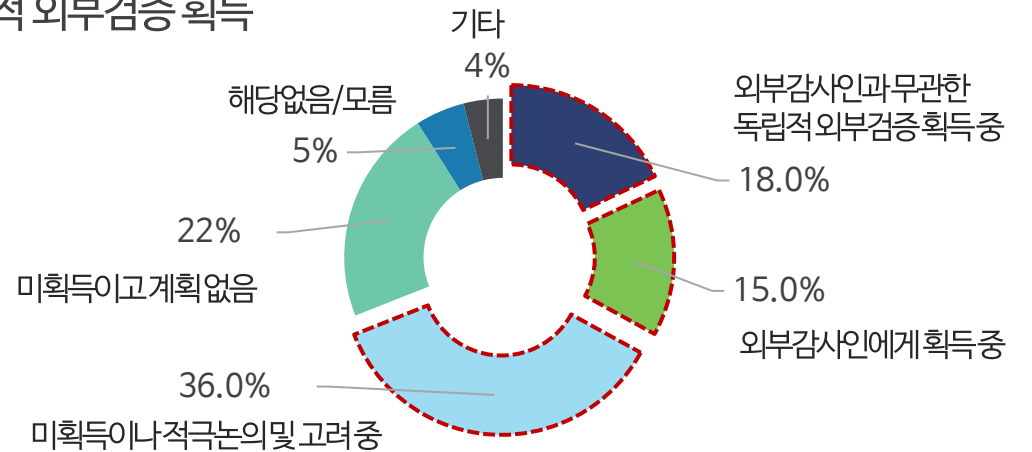
글로벌

ESG 검증 현황 (*2)

감사위원회의 ESG 검증 검토



독립적 외부검증 획득



(*1) 글로벌 Deloitte, 「The Audit Committee Frontier – addressing climate change」, 2021, 2021년 9월 40개국 이상 소재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회 멤버 353명(이 중 56%는 감사위원장) 대상

(*2) 글로벌 Deloitte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III.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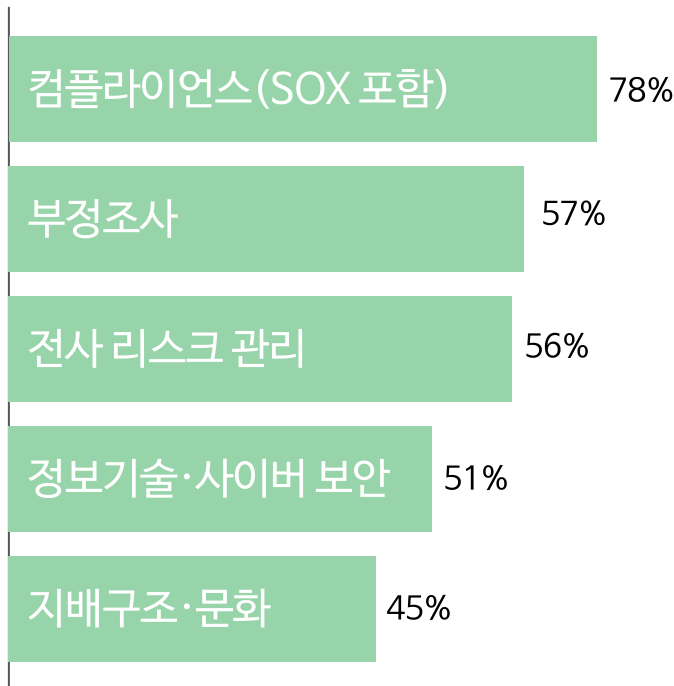
6. 내부감사 감독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부감사 활동은 SOX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부정, 리스크 및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70%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능적 보고 라인을 감사위원회로 두고 있으며, 3분의 2 이상의 내부감사부서장(CAE)은 내부감사 기능 뿐 아니라 추가적인 영역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글로벌

내부감사부서 주요 활동 영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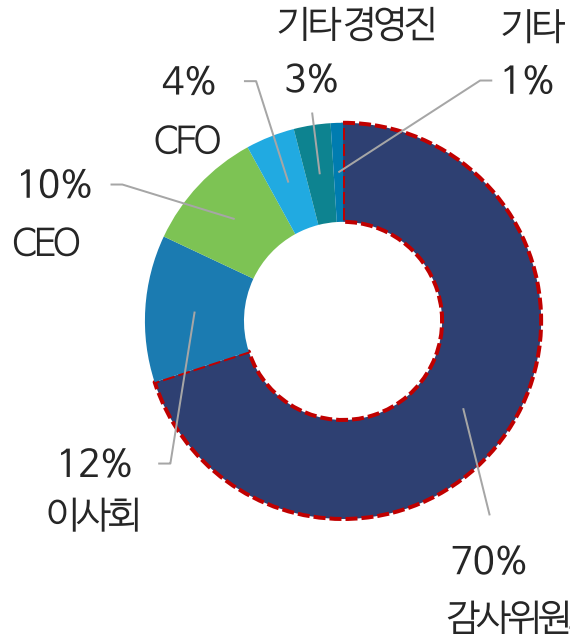
(중복응답 포함)



글로벌

기능적 보고라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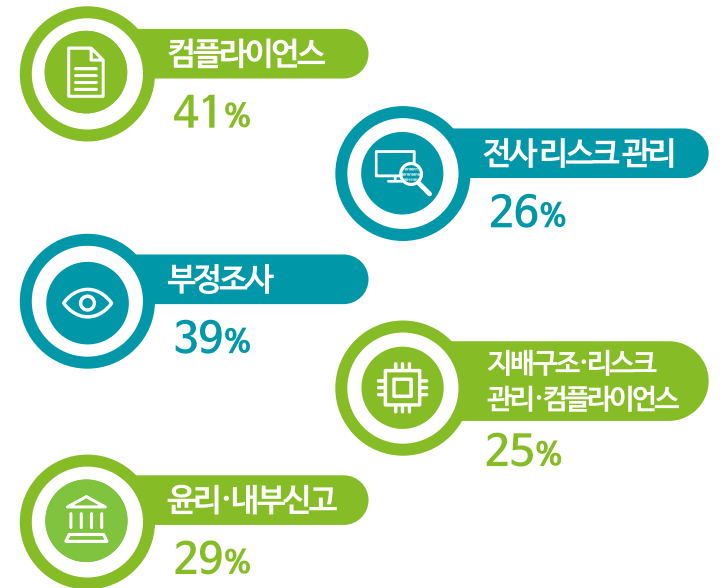
내부감사부서는 기능적 보고를 감사위원회에, 행정적 보고를 경영진에게 수행함으로써 독립성 확보 가능



글로벌

CAE 추가 책임수행 영역 (*1)

(중복응답 포함)



“리스크 관리는 경영진 및 이사회 책임이며, 내부감사부서는 통제활동의 촉진자(facilitator) 역할임”

(*1) Internal Audit Foundation, 「2022 Premier Global Research, Internal Audit: A Global View」, 2022, 159개국 내부감사인 3,631명 대상(이 중 33%는 CAE) (*2) 좌동, 북미 5개국 내부감사인 1,152명 대상

III.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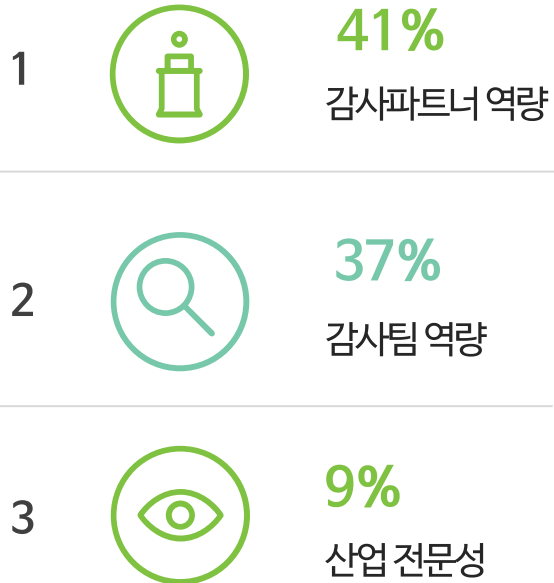
7. 외부감사인 감독 (1) – 외부감사인 및 파트너 선정

글로벌 감사위원회는 고유 권한인 외부감사인 선정 시 파트너 및 업무팀의 역량을 중시하며 감사 파트너 선정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S&P 100 기업 중 77%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파트너 선정에 관여한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높은 감사 및 재무보고 품질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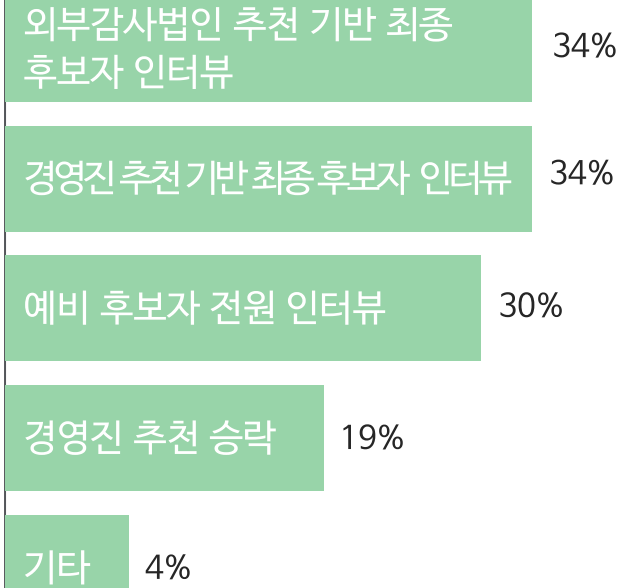
글로벌

외부감사인 및 감사 파트너 선정 (*1)

외부감사인 선정 평가요소 TO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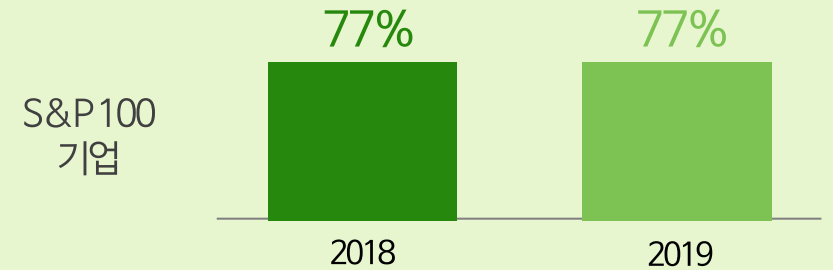
감사 파트너 선정 고려요소



(중복응답 포함)

미국 감사위원회의 감사 파트너 선정

감사위원회가 감사 파트너 선정에 관여한다고 공시한 기업 (*2)



“감사위원회가 감사 파트너 선정에 관여한다고 공시한 기업은 높은 감사 재무·보고 품질을 얻는 경향이 (*3)”



- 감사위원회가 보다 엄격하게 감사 파트너를 선정 하였다는 지표
- 이는 감사 및 재무보고 품질에 영향을 미침

(*1) 글로벌 Deloitte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2) 글로벌 Deloitte, 「On the board's agenda, 2019 Proxy Review」, 2019, (*3) Jimmy F. Downes; Michelle A Draeger; Abbie E. Sadler, 「Does Audit Committee Disclosure of Partner-Selection Involvement Signal Greater Audit Quality?」, accounting Horizons 36 (1): 49-75, 2022

III.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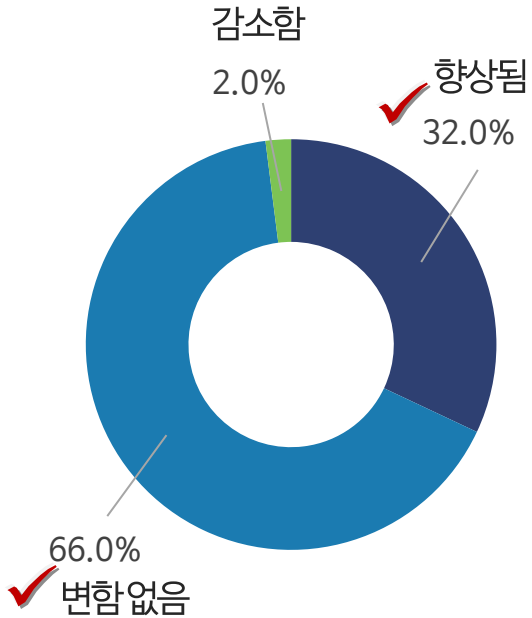
7. 외부감사인 감독 (2) - 감사품질 변화

응답자의 98%가 작년 대비 감사품질이 향상되었거나 변함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5%가 감사 파트너와 감사위원회 간의 원활한 소통, 외부감사인의 전문성을 감사품질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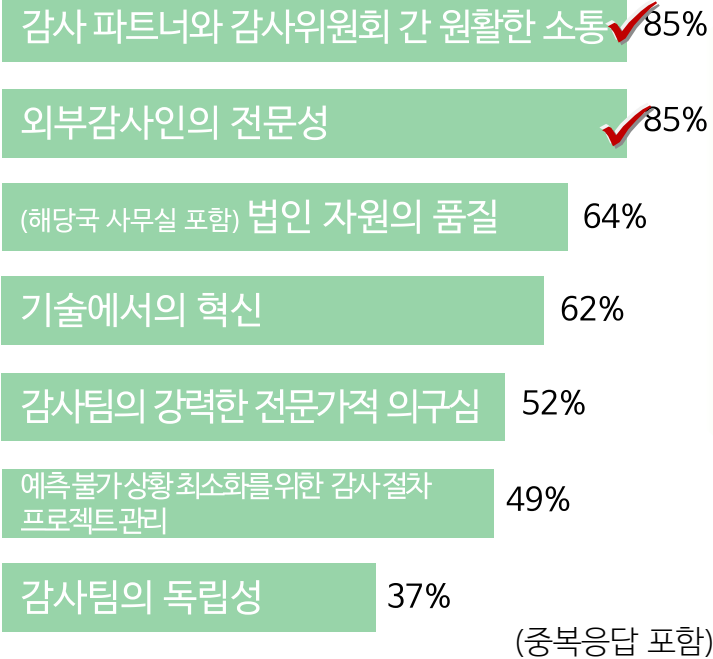
글로벌

감사품질 향상 및 기여 요인 (*1)

(작년대비) 감사품질 향상 여부



감사품질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



감사위원회 과제 (*1)

SEC 및 상장기관

- 감사위원회가 1년 내내 독립적인 감사인과 특정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

강력한 소통 필요

- 대부분의 감사위원회가 한해 최소 1회 이상 공식적으로 감사인 평가시행하나,
- 담당파트너와 보다 강력하고 빈번하게 소통할 기회가 있는지 고려 필요

(*1) 글로벌 Deloitte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III.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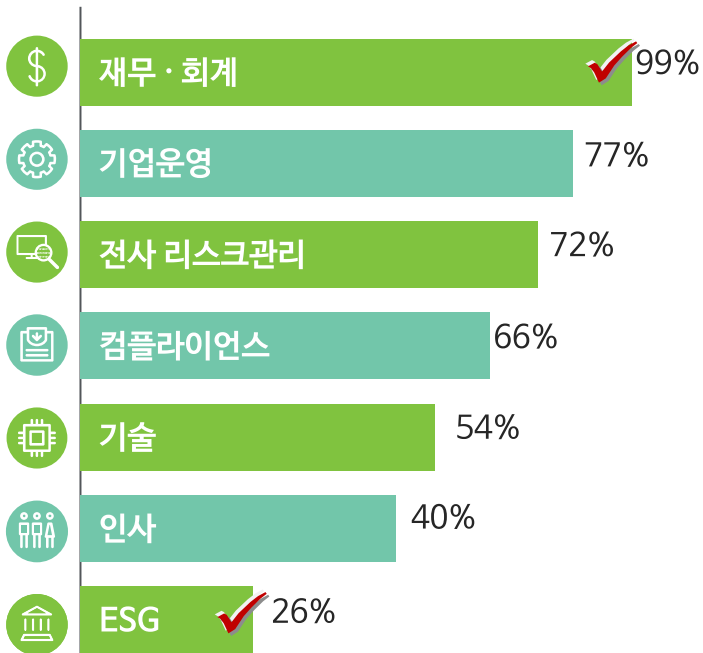
8. 전문성 확보

기존 핵심 감독 영역에 대한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은 갖춰져 있는 반면, 기술 및 ESG 관련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관련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사이버보안 및 기술 영역의 전문성 확보 수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 2조원 이상 국내 상장사 감사위원의 42%는 재무·회계 전문가로 파악됩니다.

글로벌

감독 영역별 전문성 보유 현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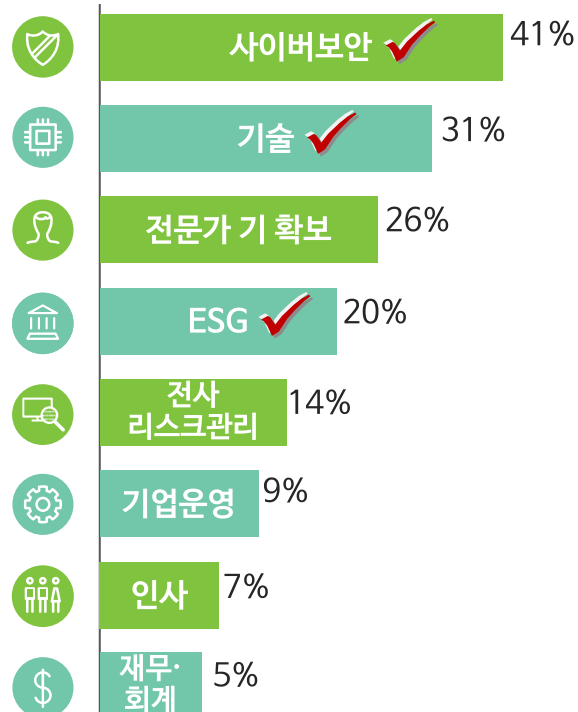
(중복응답 포함)



글로벌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 영역 (*1)

(중복응답 포함)



국내

2022년 감사위원 전문성 현황 (*2)

| 구분 | 인원 | 비율 |
|-------|-----|------|
| 재무·회계 | 258 | 42% |
| 학계 | 130 | 21% |
| 법률 | 100 | 16% |
| 재계 | 60 | 10% |
| 관료 | 45 | 7% |
| 언론·홍보 | 11 | 2% |
| 기타 | 4 | 1% |
| 소계 | 608 | 100% |

(*1) 글로벌 Deloitte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2)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2022년 반기보고서 기준 국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코스피, 코스닥) 184사의 감사위원 609명을 대상으로 함
 © 2022.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IV. 결론

1. 이사회·감사위원회 역할 제고
2. 딜로이트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IV. 결론

1. 이사회·감사위원회 역할 제고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지속가능성장 및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경영진 - 이사회·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지원조직 - 외부감사인 간 역할



IV. 결론

2. 딜로이트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딜로이트의 지배구조 프레임워크는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사회·감사위원회가 감독해야 할 각각의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1) 글로벌 Deloitt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Deloitte Governance Framework』

| | |
|-----------------------|---|
| 지배구조 (Governa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과 입장을 고려하여 이사회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및 프로세스 수립 • 기업전략과 부합되는 이사회 멤버와 의장 선정 |
| 전략 (Strateg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이 조직의 미션에 부합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략 수립과 우선순위 선정 지원 •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략방향을 커뮤니케이션하고 실행을 모니터링 |
| 경영성과 (Performa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략, 연간 운영계획 및 재무계획의 검토 및 승인 • 경영진이 사업계획을 실행하는 방식이 조직의 목표와 부합되는 지 여부와 계획 대비 성과를 모니터링 |
| 윤리경영 (Integr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윤리경영 추진 방향성 정립 • 조직 전반에 걸쳐 법규 준수,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윤리·준법프로그램에 적극적인 관여 |
| 인재관리 (Tal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성과 평가 및 보수 결정 • 주요 경영진 및 CEO 후보군의 역량 개발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감독 • 경영진의 보수 및 승계계획을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 |
| 리스크관리 (Ris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리스크(전략·운영·재무·준법 리스크 등)를 명확히 이해하고 모니터링 • 리스크 선호도를 설정하고 전략적 우선순위 연계 시 경영진에 조언 |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2.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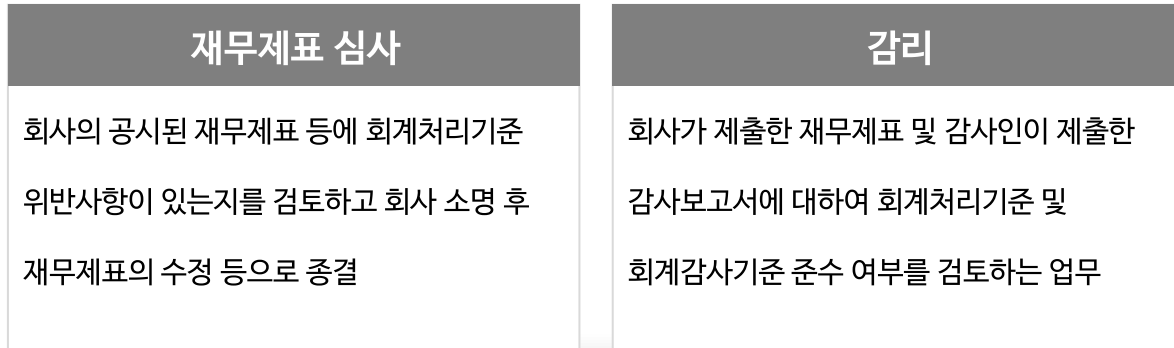
Session 2

회계 감독기구에 대한 이해 -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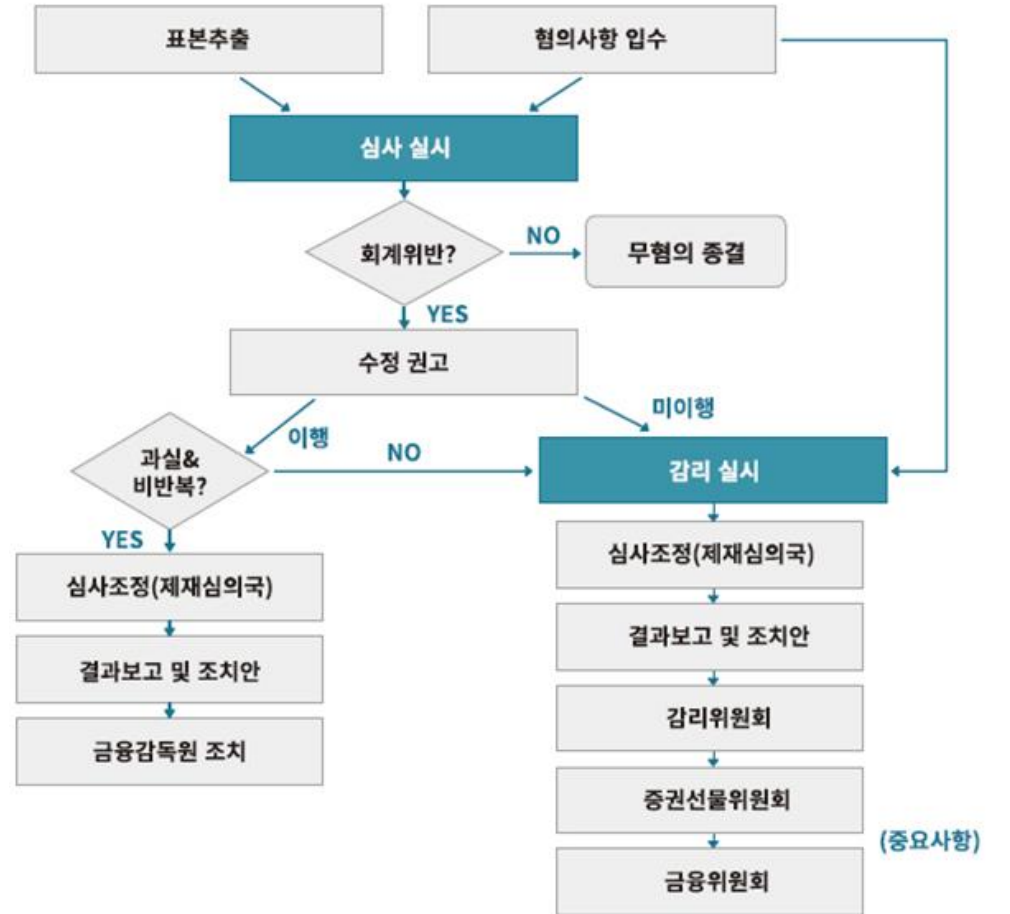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1. 회계감독과 재무보고품질 (Financial Reporting Quality)

1. 회계감독과 재무보고품질(Financial Reporting Quality)



Financial Reporting Quality 



* 심사감리업무 절차 (법률신문, 2020.6.5)

1. 회계감독과 재무보고품질(Financial Reporting Quality)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감사대란 막자”... 회계감독 대수술

서울경제, 2019.06.13, 수정 2019.06.14

Financial Reporting Quality

-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현장 혼란 커지자
- **제재중심** '검사'서 **사전지도** '심사'로
- 가벼운 위반 땀 재무제표 수정 권고 오류 스스로 정정하면 면책도 적용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

- 재무제표 심사 활성화 및 심사기간 단축(3개월)
- 상장 준비 기업 회계감독 효율화

기업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

- 이용자 중심의 질의 회신 체계구축
- 회계 오류의 자진 정정시 부담 완화

외부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 연중 상시감사 유도
- 품질관리감리 실효성 제고

1. 회계감독과 재무보고품질(Financial Reporting Quality)

Reality

(중대한 회계부정)

- 셀트리온 3사 '회계 과실 고의 없다'... 삼성·한영 '과징금·감사 제한' 중징계
머니투데이 2022/03/01
- KAI 분식회계 의혹, 외부감사인 삼일에도 불뚱 튀나
연합뉴스 2017/08/03
- KAI,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78.9억원... 삼바 이후 역대 최고액
인포스탁 데일리 2021/03/17
- 빅3 줄줄이 걸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 회계업계 논란 확대
연합뉴스 2018/05/10

(사회적 이슈와 내부통제 관련)

- 614억 횡령 까맣게 몰랐던 우리은행 - 엔터리 감시시스템 또 반복?
MBC 뉴스 2022/05/02
- '18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잡혔다... 수백억 금괴 22박스 발각
중앙일보 2022/01/06
-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에 책임론 불거지는 회계법인 3곳
아주경제 2022/01/12
- 금감원, 금융회사 횡령 막는다...내년 회계 '현금 실재성' 중점 점검
NEWSIS 2022/06/26

중대한 회계부정 제재강화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및 충분한 검증절차

1. 회계감독과 재무보고품질(Financial Reporting Quality)

Reality

회계감리 신조치양정기준 시행 (19년 4월)
 금융당국 "회계감리 '중과실' 비중 50%→30%로 줄인다"

한국경제, 2019.03.25

- 고의 회계부정은 제재 강화
-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 수준을 크게 강화해 일벌백계하되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하여 큰 틀에서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
- 외부감사법 상 과징금 제재
 - ✓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위반금액의 20%,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15%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약 3조5천억원에 달한 분식회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45억원에 불과, 새 기준을 적용하면 6천700억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조치수준 강화
- 회계위반에 큰 책임이 있는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신설

| 구분 | | 현행 | 변경 |
|------|------|-----------------------------------|--|
| 회사 | 법인 | (고의) 증권발행제한 2~12월 | (고의) 증권발행제한 4~12월 |
| | | (고의) 감사인지정 1~3년 | (고의) 감사인지정 2~3년 |
| | 대표이사 | (고의 1단계) 해임권고 (고의 2단계) 해임권고 가능 | (고의 2단계이상) 해임권고 & 직무정지 6개월 병과 |
| 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대표이사</u>와 <u>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u> 직무정지 신설(1년) • <u>담당이사가 등록취소 또는 전부 직무정지 조치시</u> <u>품질관리기준 설계운영소홀의 경우</u> |

2. Financial Reporting Risk

2. Financial Reporting Risk

Reality

- Financial Reporting Quality ?

Risk

- 감리 후 감독당국의 제재와 민형사상 책임
 - 횡령과 부정 등의 방지

2. Financial Reporting Risk

Financial Reporting Risk ↓

- *내부 역량* (지배구조 & 내부회계관리와 시스템 & HR)
- *Risk* 관점에서 품질 좋은 감사인

3. 회계감리와 제재

3. 회계감리와 제재

1)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동기와 위반규모를 고려하고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
 - 양정기준에서 감사위원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 ✓ 감사위원은 회사의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지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 ✓ 협의체 특성 등으로 인해 감사위원의 책임 구분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감사위원에 대하여 조치
 - ✓ 감사위원의 위법동기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위법동기와 동일하게 보며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회사보다 원칙적으로 1단계 낮은 수준

제35조(과징금)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2018년도 결산서류부터 적용됨)

| 부과대상자 | 회사 | 회사관계자 | 감사인 |
|-------|------------------|---------------|----------|
| 상한 |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 감사보수의 5배 |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가중
** XX사 ㄱ(고의 분식금액약 5조원) 적용시: 45억원 → 3천억원 수준(자본시장법의 경우 신고서당 20억 한도)
- 회사관계자(CEO,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기준으로 부과 (50~500%)
(자본시장법의 경우 회사관계자는 이사로 한정)

39조(벌칙) 형사처벌

3. 회계감리와 제재

2) 감리조치 양정기준

- 중요 금전 및 신분상 제재

- (금전적 제재)

- ✓ 과징금은 중과실 이상의 제재에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적용

- (임원해임)

- ✓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고의 2단계 이상
- ✓ 담당임원 해임권고는 고의 및 중과실 2단계 이상
- ✓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는 고의 4단계 및 중과실 2단계 이상

- (검찰고발 및 통보)

- ✓ 고의 2단계 이상에서 회사(임직원 포함)를 검찰고발하며 5단계 이상에서 검찰통보
 -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이사에 대하여 해임권고 조치를 하되, 담당 임원이 없고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생략하고 감사인 지정 등 다른 조치를 가중하고 담당 임원을 두도록 개선권고 조치를 병과
 - 검찰고발·통보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으며, 혐의는 충분하나 객관적인 증거에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 고발을 검찰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3. 회계감리와 제재

2) 감리조치 양정기준 (계속)

- 거래소 시장조치

-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제도(시장퇴출제도)는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와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로 구분

- ✓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 중)

- 비적정 감사의견의 경우 (1) 코스피시장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등이나, (2) 코스닥시장은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에 해당
- 상장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차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 다만,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실질심사 절차가 개시

-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중)

- (1) 횡령·배임의 발생 (2)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상장기업(前·現職 임원을 포함)에 대하여 검찰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한 경우에 해당
-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상장기업의 주권매매거래를 즉시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시작

3. 회계감리와 제재

2) 감리조치 양정기준 (계속)

Ⅲ.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양정기준)

1. 고의

위법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에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 1)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2)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3)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 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 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나) 특수관계자와 비정상적 거래가 관련되는 경우

다)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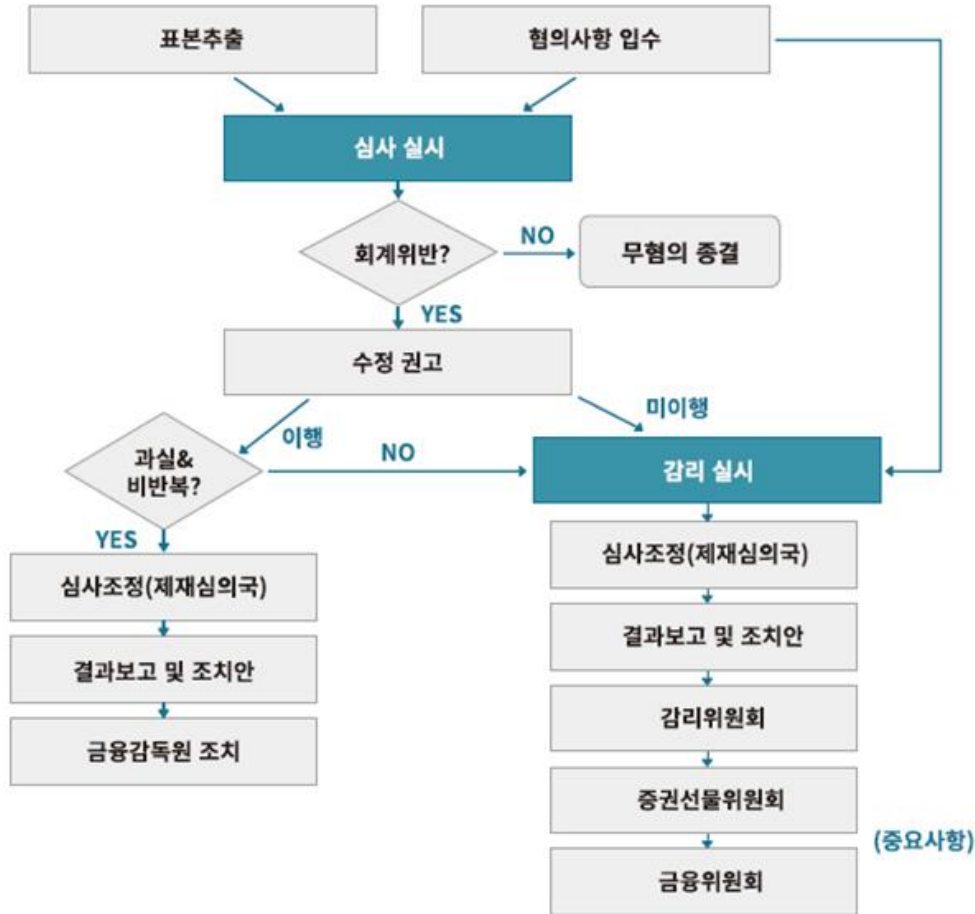
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마)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법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3. 회계감리와 제재

3) 심사감리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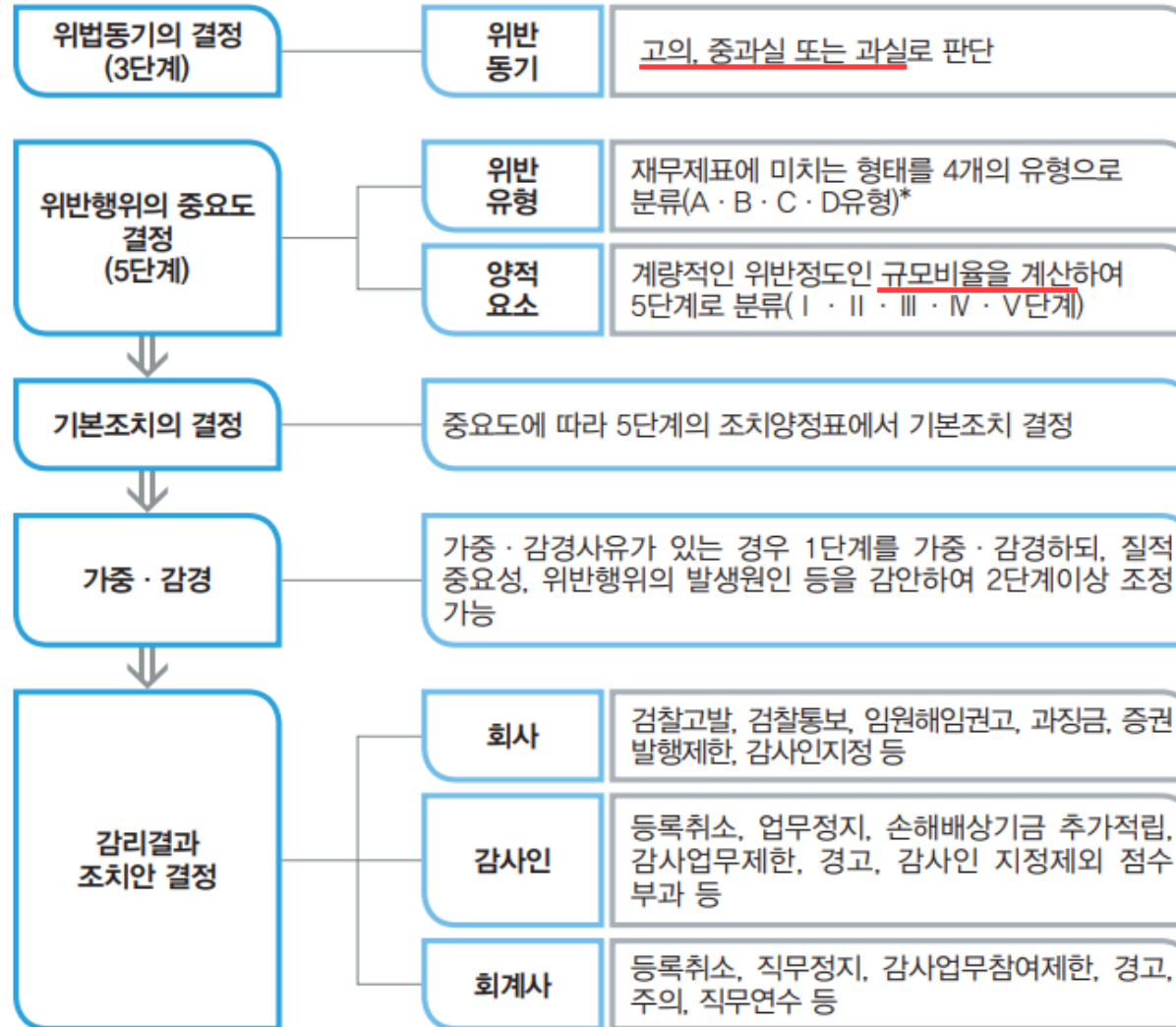
* 심사감리업무 절차 (법률신문, 2020.6.5)

| 재무제표 심사 | 감리 |
|--|---|
|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고치로 종결 |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 |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회계부정제보 접수 등에 따라 실시

3. 회계감리와 제재

4) 감리조치 과정



* 감리업무절차 (금융감독원)

3. 회계감리와 제재

5) 심사감리결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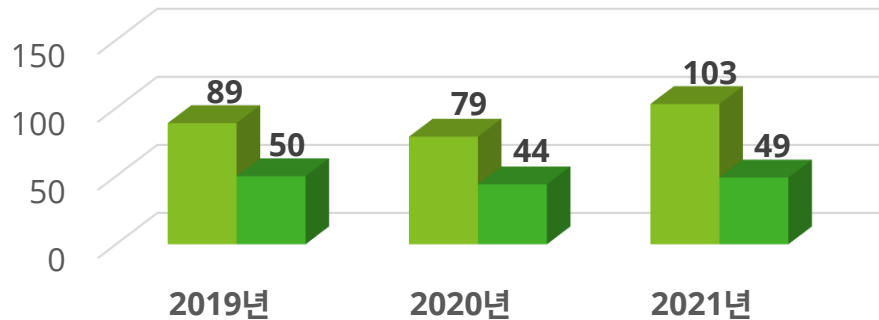
'21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간 심사·감리 상장회사 수 >

(단위: 사, %)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0년 대비 | |
|-------------|------|------|------|---------|--------|
| | | | | 증감 | 증감률(%) |
| 표본 심사·감리 | 89 | 79 | 103 | 24 | 30.4 |
| 혐의 심사·감리 | 50 | 44 | 49 | 5 | 11.4 |
| 합계 | 139 | 123 | 152 | 29 | 23.6 |

(단위: 사)



| | |
|------|---|
| 지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 (83사 조치)로 전년(66.4%) 대비 11.8%p감소(표본심사·감리 34.0%, <u>혐의 98.0%</u>) |
| 위반동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의(14.5%) 및 중과실(10.8%) 비율이 25.3%로 감소하는 추세* * 고의+중과실 위반비율 추이: 32.9%('19년)→28.2%('20년)→25.3%('21년) |
|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제도 등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하였고, 회계법인 30사, 공인회계사 68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 * 상장회사 과징금 추이: 49.8억원('19년)→94.6억('20년)→159.7억원('2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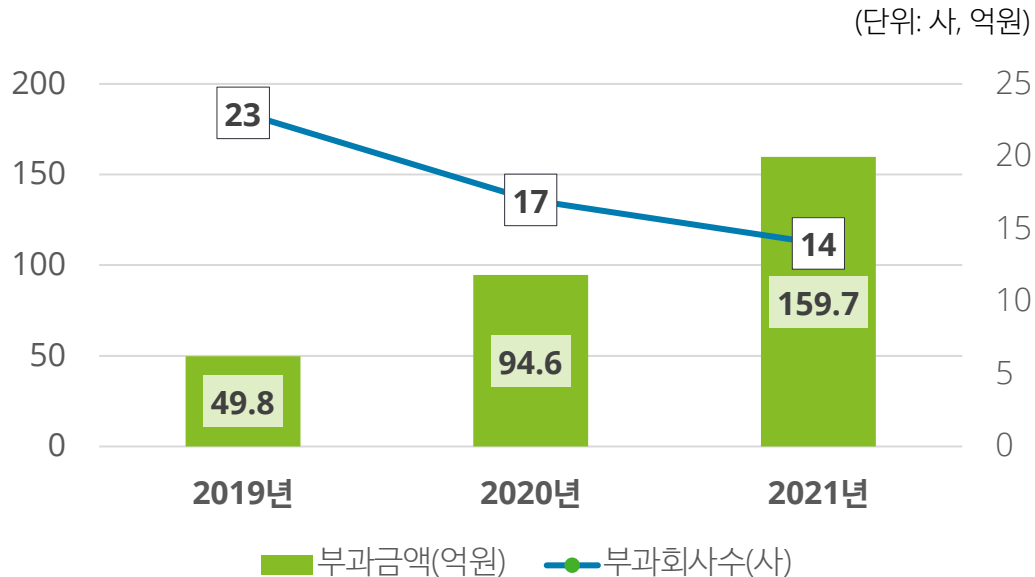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3.08

3. 회계감리와 제재

5) 심사감리결과 및 시사점 (계속)

< 과징금 부과 현황 >

| 과징금 | '19년 | '20년 | '21년 |
|-----------------|------|------|-------|
| 부과 회사 수 | 23 | 17 | 14 |
| 부과 금액 | 49.8 | 94.6 | 159.7 |
| 회사별 평균 부과 금액 | 2.2 | 5.6 | 11.4 |



| | |
|--------------|---|
| 과징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내 부과 회사 수는 감소하였으나 부과금액은 증가*하여,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지속 증가** * 과징금 총 부과금액: 49.8억원('19년)→94.6억원('20년)→159.7억원('21년) **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 2.2억원('19년) →5.6억원('20년) →11.4억원('21년) 이는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에 기인 |
| 수사기관 통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심사·감리결과 검찰 고발·통보 등 <u>수사기관 통보(6건) 및 임원해임권고(16건)는 총 22건으로 전년(13건) 대비 9건 증가</u> |
| 고의· 중과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도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12사*(14.5%), 중과실은 9사(10.8%)로 위험요소(표본), 회계부정신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감리 결과임 * 전년(14사, 17.9%) 대비 2사(3.4%p) 감소 중대(고의+중과실) 위반비율은 매년 감소* * 중대 위반비율 추이: 32.9%('19년) →28.2%('20년) →25.3%('21년) |

3. 회계감리와 제재

6) 감리절차의 진행

-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와 달리 회사에 광범위한 회계장부와 서류를 요구
- 감사인에게 감사조서 등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
-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뿐만 아니라 필요 시 금융거래 조회, 상대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 조회,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도 가능하며 회사에 대한 실사도 가능
-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회사의 회계담당자 및 이해관계인, 감사인 등에 대한 문답 및 진술을 요구 할 수 있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질문지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아 소명내용을 검토

3. 회계감리와 제재

6) 감리절차의 진행 (계속)

- **조치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
 - ✓ 대심제 도입으로 피조사자의 방어권 강화

금융당국, 셀트리온 분식회계 대심제로 진행 결정

Chosun Biz, 2022.02.09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혐의에 관해 대심제(對審制)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심제는 협의를 받는 기업을 회의 현장에 출석시켜 혐의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제공해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때 처음 적용된 제도다.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혐의에 관해 대심제(對審制)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심제는 협의를 받는 기업을 회의 현장에 출석시켜 혐의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제공해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때 처음 적용된 제도다.
-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때는 5차례의 증선위 정례회의와 금융감독원 재감리를 거쳐 최종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나기까지 6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3. 회계감리와 제재

6) 감리절차의 진행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 투명해집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06.23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
(6개월 단위로 연장·추가연장 가능)

1)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 (현행)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것은 금지 (적발 시 퇴거)
- (개선)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 가능

3. 회계감리와 제재

6) 감리절차의 진행 (계속)

2)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 (현행) 문답서*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 예야 열람이 가능

* 감리 조사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감리위·증선위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

- (개선) 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보장

3)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 (현행) 사전통지서가 구체적이지 못해, 피조치자가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 대응하는 경우가 있었음

- (개선)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

①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지적사항별)

-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감사기준서 문단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을 사전통지서에도 제시

3. 회계감리와 제재

6) 감리절차의 진행 (계속)

4)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 (현행) 피조사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권익보호수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지적
 - ✓ 문답과정에서 감사조서 등 필요자료 지참·열람이 가능하고, 회사 소속 회계사 등 전문가 조력이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개선) 금감원이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

3. 회계감리와 제재

7)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위원회

- **감리위원회**

- (성격) 감리위원회는 증선위의 자문기구
- (구성) 증선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위 법률자문관,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회계전문가 3인 (회계학 교수), 법률전문가(변호사) 로 총 9인으로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 (성격)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 및 회계기준과 회계감독제도 등에 대한 의결기구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증선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회계, 법률(주로 자본시장관련), 재무분야 전문가 인 5인으로 구성

3. 회계감리와 제재

7)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위원회 (계속)

■ 증권선물위원회 의사결정

• (증선위와 감리위)

- ✓ 감리위 단계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감독원 원안과 제재대상자의 주장 및 논거 그리고 감리위의 판단 등)의 증선위 보고
- ✓ 제재당사자로서 감리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거나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추가 주장이 있는 경우 논거와 함께 주장이 가능
- ✓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리 결과를 존중하기는 하나 광범위하게 사례 등을 참고하고 추가적인 주장이나 논거를 고려하여 최종 결론 도출

• (논의와 결론도출)

- ✓ 증선위 에서의 주된 이슈는 논의 사안에 대한 사실의 적용과 해석 및 판단의 문제가 대부분임
- ✓ 사실과 당시의 판단에 에 대한 증거와 논거 제시가 중요
- ✓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회계기준원 자문의견을 구함
- ✓ 자본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독립적인 3인의 비상임위원과 금융위의 전문적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
- ✓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 전원이 동의할 때까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의사결정

4. 행정 및 민형사상 제재

4. 행정 및 민형사상 제재

1) 재무제표 공시 관련 책임(민사)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1) 자본시장법 제125조(증권신고서 등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정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감사보고서)

2) 자본시장법 제162조(정기보고서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 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4. 행정 및 민형사상 제재

2) 형사

- 외감법이나 자본시장법의 벌칙 규정을 근거로 공소가 제기
-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포함
- 형사소송이 민사나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3) 행정

- 감독당국의 행정제재처분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
- 과징금처분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기도 함

4. 행정 및 민형사상 제재

4) 민사 사례

사외이사 대상 주요 민사소송과 판결*

※연도는 소송시점 ● 사건 내용 ● 법원 판단

| | |
|-----------------------|--|
| 부산2저축은행 2014~2015년 | 불법대출 등 금융 비리 기업이 후순위사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도 민법상 공동 책임이 있는가 대주주 부탁으로 사외이사직에 이름만 올려줬더라도, 사외이사로서 감독의무를 태만히 했다면 책임 있음 |
| 코어비트 2013~2014년 | 분식회계에 가담한 기업의 사외이사가 민법상 책임이 있는가 사외이사가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에도 불참했다면, 민법상 배상 책임 존재 |
| 엑사이엔씨 2010~2017년 | 주가조작 기업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사외이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가 이사회가 소집된 적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사 업무 해태했다면 공동 책임 |
| 한솔신텍 2012~2016 | 분식회계 기업 부도시,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사외이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가 사외이사가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면책되지는 않음 |
| 경남기업 2017~2018년 |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의 사외이사는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하는가 사외이사가 경영·재무에 관여하지 않아 분식회계를 알지 못했더라도, 불인지 사실 자체가 이사 임무를 게을리 한 것 |
| 대우조선해양 2015~2022년 | 분식회계 기업의 주가 하락시 사외이사는 손해배상 의무 있는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실을 증명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책임 없음 |

최종 대법원 판결(코어비트)

- 제 1,2심 판결이 서로 엇갈린 상황에서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 윤씨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정에 불과”
- “피고 윤씨가 그의 지위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사정이 아님은 물론이며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이 기재에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사정도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2심 판결을 취소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 주식회사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재무제표의 승인 등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을 감시 감독할 지위
- 사외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 바, 피고 A이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정에 불과하고, 위 사정과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피고 A이 그의 지위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사정이 아님은 물론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허위 이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사정도 되지 아니함

*The Joongang, 2022.01.27

4. 행정 및 민형사상 제재

5) 형사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7노460 판결

-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회사의 2012, 2013,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 ✓ 회계분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거나 무보증 사채 및 기업어음을 발행·매매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
 - ✓ 회계분식의 규모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2조 3,078억 원,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2조 2,802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도 엄청난 금액인 점,
 - ✓ 회사에 대출 등을 한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계분식이 밝혀진 이후 신용등급의 하락 및 주가 폭락으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재무 상태를 믿고 투자한 다수의 일반 투자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2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 회사의 CFO로 부임한 이후 회사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회계 부정행위에 편승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회계분식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은 점,
 -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대출금 및 재산상의 이익과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그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 회사가 이 사건 회계분식으로 인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신용장보증 및 선수금환급보증 중 일부를 상환하였으며, 기업어음 중 일부를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행정 및 민형사상 제재

6) 행정 사례

대법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 처분 적법성 재판 다시”

연합뉴스. 2021.01.07

- 1심은 안진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를 취소하라고 판결
-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의 소홀·부실 등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은 과중
- 하지만 2심은 "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로 이미 지나 효력이 소멸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
- 대법원에서는 업무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상태
- 감사팀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회계법인 전체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심리가 필요하다
-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

5. Financial Reporting Risk에 대한 대응

5. Financial Reporting Risk에 대한 대응

1) 제재 사례

증권선물위원회, 허위매출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4개사 제재

이투데이, 2019.02.13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개최한 제3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XX 사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XX사에 대해 "2013년 원도급사가 수행한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사를 회사가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해 45억 원 상당의 허위매출 등을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352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처리 위반' XX사에 검찰통보 조치

한국경제TV, 2022.04.06

- 증선위에 따르면 제조업체인 XX 사는 2013~2019년 특수 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특수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5. Financial Reporting Risk에 대한 대응

1) 제재 사례 (계속)

특수관계자 주식 미기재 관련 '고의' 지적 주요 사례

| 구분 | 고의 동기 판단 사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주요 경영진 및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관계자 거래 및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p>*일부 주석 미기재 사항은 증선위에서 중과실 → 고의 수정의결</p>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세무당국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처와의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이사 개인 명의 자금 차입과 관련한 회사의 지급보증 제공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 <p>*지급보증 제공사실 미공시 자체로 지적</p> |

5. Financial Reporting Risk에 대한 대응

1) 제재 사례 (계속)

XX 사, 회계 문제로 암초... 남은 과제는 오는 19일 상장 적격성 심사 '촉각'
더벨, 2021.02.10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말 XX 사가 2015~2018년까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전 대표이사),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 XX 사 재무담당임원은 임원 중에서도 회사에 가장 장시간 근무해온 인물로 입사후 쭉 재무관리를 전담해온 재무통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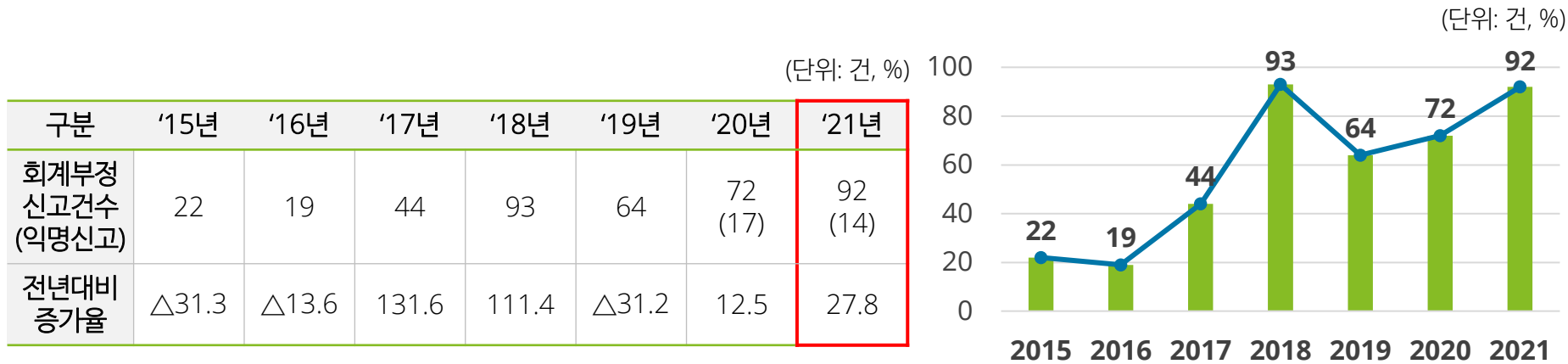
5. Financial Reporting Risk에 대한 대응

2) 제보

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2022.3.18)

-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2.1.24.부터 모바일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내실있는 회계부정 신고·포상제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
 - '17.1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1억원→10억원)하였고, '20.5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20.3월부터는 익명신고 건도 접수 및 처리(구체적 혐의 적시 및 증빙 첨부 건에 한하여 감리 가능)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이 중 14건은 익명신고로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처리현황)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1년까지 총 22사*

* (2017년) 2사 → (2018년) 6사 → (2019년) 3사 → (2020년) 6사 → (2021년) 5사

5. Financial Reporting Risk에 대한 대응

3) 감사위원회와 내부회계관리

XX 사, 500억 원대 횡령 6년 누락, 지배구조 등급 하락

데일리임팩트, 2022.07.18

- XX 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에 파견한 자금 관리 담당자 A씨가 회계 전산 시스템상 허위 매입 채무를 생성하고, 이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총 503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당시 횡령금액은 계열사 매입채무에 반영되지 않았고, 지주사인 XX 사는 해당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해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 A씨는 지난 2019년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 12년과 벌금 150억원 형을 선고 받았다. 지주사에서 경영관리 용역으로 파견된 A씨는 수십년간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관리해오면서 장기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는 지주사인 XX 사의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에게도 5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 Financial Reporting Risk에 대한 대응

3) 감사위원회와 내부회계관리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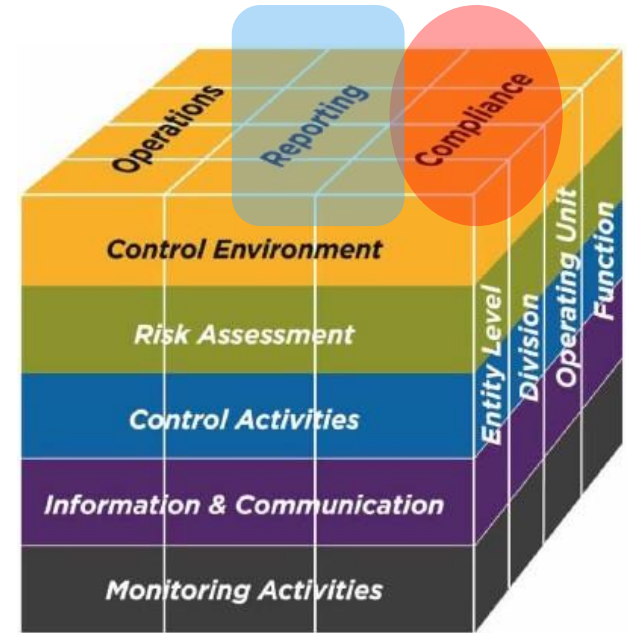
각종 법률 및 규제의 Compliance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 최근 법원 뿐만 아니라 ESG 경영이 화두로 대두되면서 '준법경영 책임'을 강조
 - ✓ 최근의 판결은 담합 뿐 아니라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사고 등의 안전, 식품, 환경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리
- 상당히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혹은 사업에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업무 (Mission-critical)를 통제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내부통제
- 감사위원회는 법규 준수 등을 모니터링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라도 감사 위원회는 법규 준수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
- 감사위원회는 법규 준수 및 윤리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이해하고 회사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 영진, 회사에 배상하라

경제개혁연대, 주주대표소송서 승소
"불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감독책임 명시적 인정"

2022/05/16 11:45, 조선비즈



5. Financial Reporting Risk에 대한 대응

4) 내부신고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내부신고제도와 관련한 신고자 관점과 감사위원회 역할

| 구분 | 신고자 관점 | 감사위원회 역할 |
|------|--------------------------|------------------------------|
| 익명성 | 익명성 보장 미비에 따른 보복의 두려움 | 내부신고제도의 익명성 보장 정책 점검 |
| 보상 | 제보에 뒤따른 부담에 대한 경제적 보상 희망 | 신고된 건의 경중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수립 |
| 사후처리 | 신고한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 | 접수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수행 및 사후처리 |

- 미국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권한 남용 및 통제 무시(management override)를 완화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감사위원회의 감독 영역
 - ✓ 경영진의 권한 남용 및 통제 무시(management override) 발생 가능 영역을 식별하고 기업의 대처 방안을 평가
 - ✓ 직접 재무보고 책임이 없는 임직원에게 질문을 통해 경영진의 권한 남용 및 통제 무시(management override) 징후 파악
 - ✓ 경영진과 유의적인 회계 추정을 논의하여 유의적인 가정과 판단의 합리성을 검토
- 내부신고 프로그램 영역
 - ✓ 내부신고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검토
 - ✓ 내부신고 보고서에서 중요한 사항을 검토, 시정 조치 필요성 고려

5. Financial Reporting Risk에 대한 대응

5) 감사위원회와 품질 좋은 감사인 선정

Financial Reporting Risk 



품질 좋은 Auditor 선정

내부 역량 (지배구조 & 내부회계관리와 시스템 & HR)



감사합니다.



Session 3 자금사고방지 현황과 대응방향

한국 딜로이트 그룹
Transformation & Analytics 이승영 수석위원

Contents

- I. 자금사고 현황
- II. 자금사고 대응을 위한 실무사례
- III. 자금사고 대응 실무 전략



I. 자금사고 현황

1. 부정 및 횡령 사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금사고는 기업의 재무적 손실은 물론,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초래하고, 기업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 신뢰도를 훼손하게 되며, 자금 사고가 기업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초유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신 외감법 무용론'



오스템 이어 또...'245억 횡령' 계양전기, 개미들만 '피눈물'



올해 발생한 주요 횡령 사건 목록(단위:원, 횡령액 규모순)



새마을금고도 횡령 사건 터졌다... 고객 돈 11억 빼돌린 직원 자수

입력 : 2022-05-25 13:52:00 | 수정 : 2022-05-25 14:41:18



시사점

- ✓ 전통적인 감사 영역인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감사 등 전통적인 감사영역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유형의 자금사고 발생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 ✓ 자금횡령과 관련한 부정 scheme에 보다 집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밀한 적발 시나리오 구성 필요(다양한 진단, 탐지 시나리오 구성 등)

2. 자금사고의 특징



Cash

회계흐름과 자금흐름 불일치

- 자금 횡령 시 본인 혹은 가족의 계좌를 활용하여 횡령하는 Case
- 계좌잔고증명서 등 자금흐름 위조

부정 및 횡령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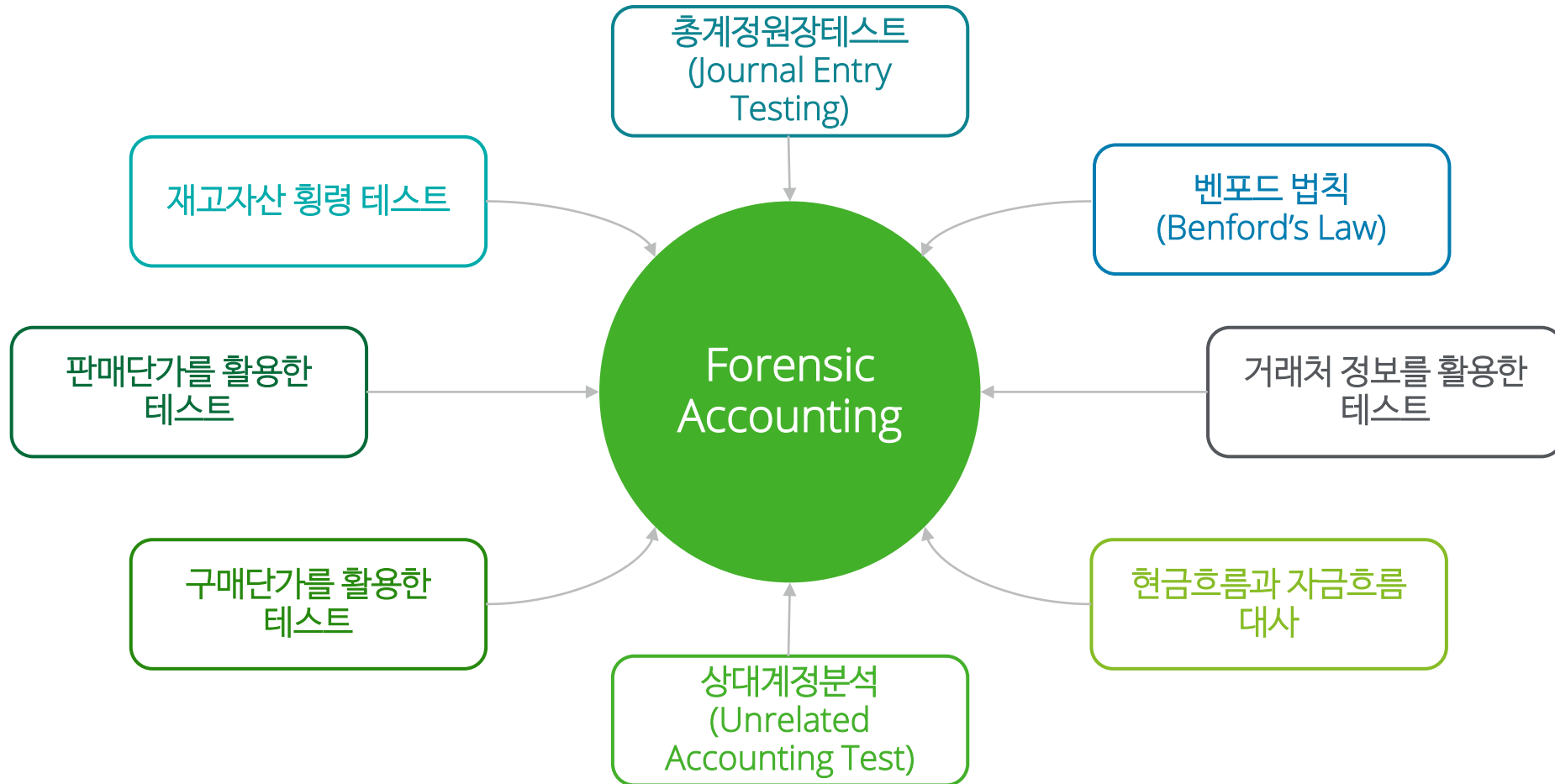
Inventory

회계흐름과 자금흐름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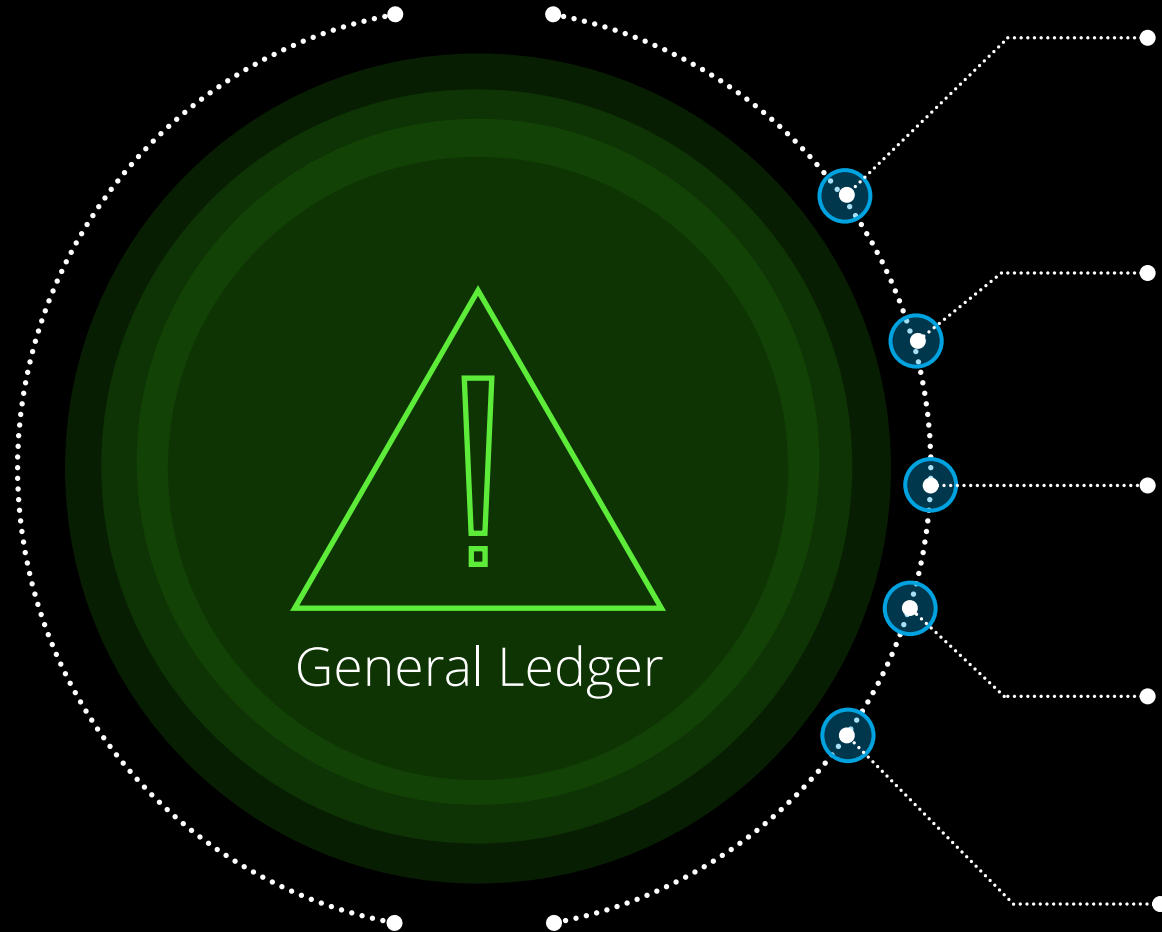
-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자금 유출
(예 위장 거래처 활용)
- 원재료, 제품 등 재고자산 자체 유출

II. 자금사고 대응을 위한 실무사례

1. 자금사고 대응 시나리오 - 실무사례



2. 총계정원장테스트 (Journal Entry Testing)



전표 입력 빈도

회사 대표이사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3천만원에 대한 전표를 입력하기위해 회사 CFO가 주말에 전표를 입력한 건



상대계정 불일치

회계기록의 짝이 맞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이후 현금/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사례



계정과목 임의상계

회사의 차입계약에 따라 부채비율이 50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결산기에 채권채무를 임의상계한 건



자금횡령금액 분할

자금 횡령을 감추기 위해 횡령한 금액을 분할하여 입력일을 나누는 경우



전표적요 미 기재

자금 등을 횡령한 경우 전표 적요에 해당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고 기재하지 않거나 특수기호로 기재하는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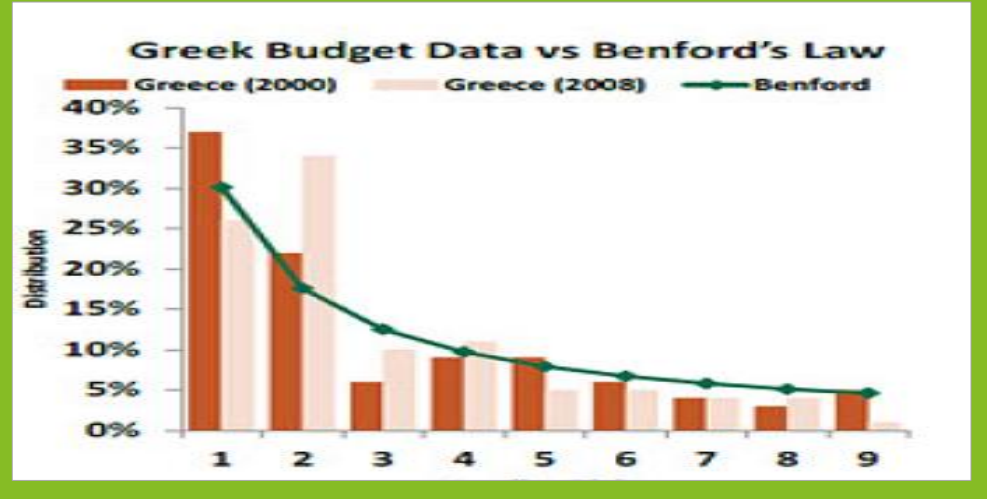
3. 벤포드법칙 (Benford's Law)

벤포드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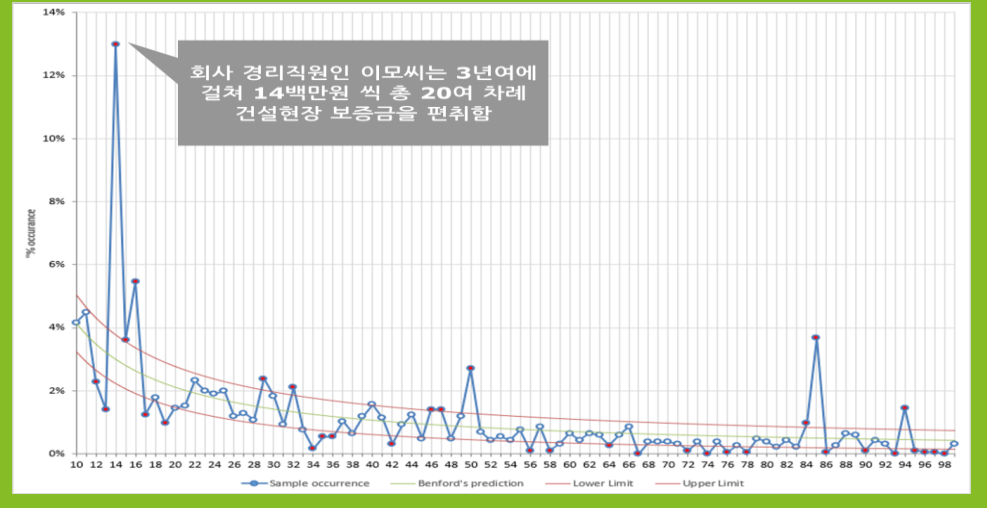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숫자(숫자의 처음 1개 숫자)의 분포가 일정한 확률(logarithmic distribution)에 따르고 있다는 이론
- 대량의 숫자가 발생하는 신용카드 거래, 구매 내역, 주식 데이터, 회계 원장 (journal entries) 등에 적용이 가능

Illustrative

그리스 GDP 조작 발견



자금 분할 횡령 발견



4. 가공의 거래처 (Shell company)

가공의 거래처

가공의 거래처를 설립한 후 해당 거래처에 회사의 제품을 납품 한 후
횡령하는 Case

(거래처 재무정보 중 매출액이 10억이나 회사와 거래한 transaction이 50억인
경우, 거래처 대표이사 혹은 임직원 정보가 회사 임직원 정보와 일치,
설립 후 1년 미만, 임직원수가 극히 적은 거래처와 거래)

거래처를 활용한 부정적발 테스트

업종과 무관한 거래처

원재료 구매업체가 통상적인 제조업과 무관한 업체일 경우
해당 거래처와 거래한 원재료 구매 거래 및 판매거래 적발
(예 철강업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업체와
원재료 구매계약 체결)

거래처 정보와 결합한 시나리오 (판매단가 혹은 구매단가)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고 구매거래처와 공모하여 차액을 편취하거나
고가로 제품을 판매 한 후 차액을 편취하거나 저가로 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 거래처와 공모하여 해당 제품을 재 판매 후 차액을 편취하는
사례로서 거래처가 가공이거나 임직원명의 대표이사를 보유한 거래처

5. 회계원장과 현금흐름 대사(Cash proofing)

- 기업의 자금흐름과 회계상 현금흐름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대사(Reconciliation)하여 부정관련 징후를 찾아내는 방법
- Proof of Cash 방법:

Illustrative

| | Beginning Balance | Receipt | Disbursements | Ending Balance |
|------------------------------|-------------------|---------|---------------|----------------|
| 회계흐름 (Per Accounting) | 100 | 800 | 350 | 550 |
| 자금흐름 (Per Bank Statement) | 100 | 950 | 600 | 550 |
| Red-flags(차이금액) | 0 | 150 | -250 | 0 |

가. 회계흐름은 원장에서 부터 자료를 요약하고 현금이 포함된 Journal을 통해 자료가 요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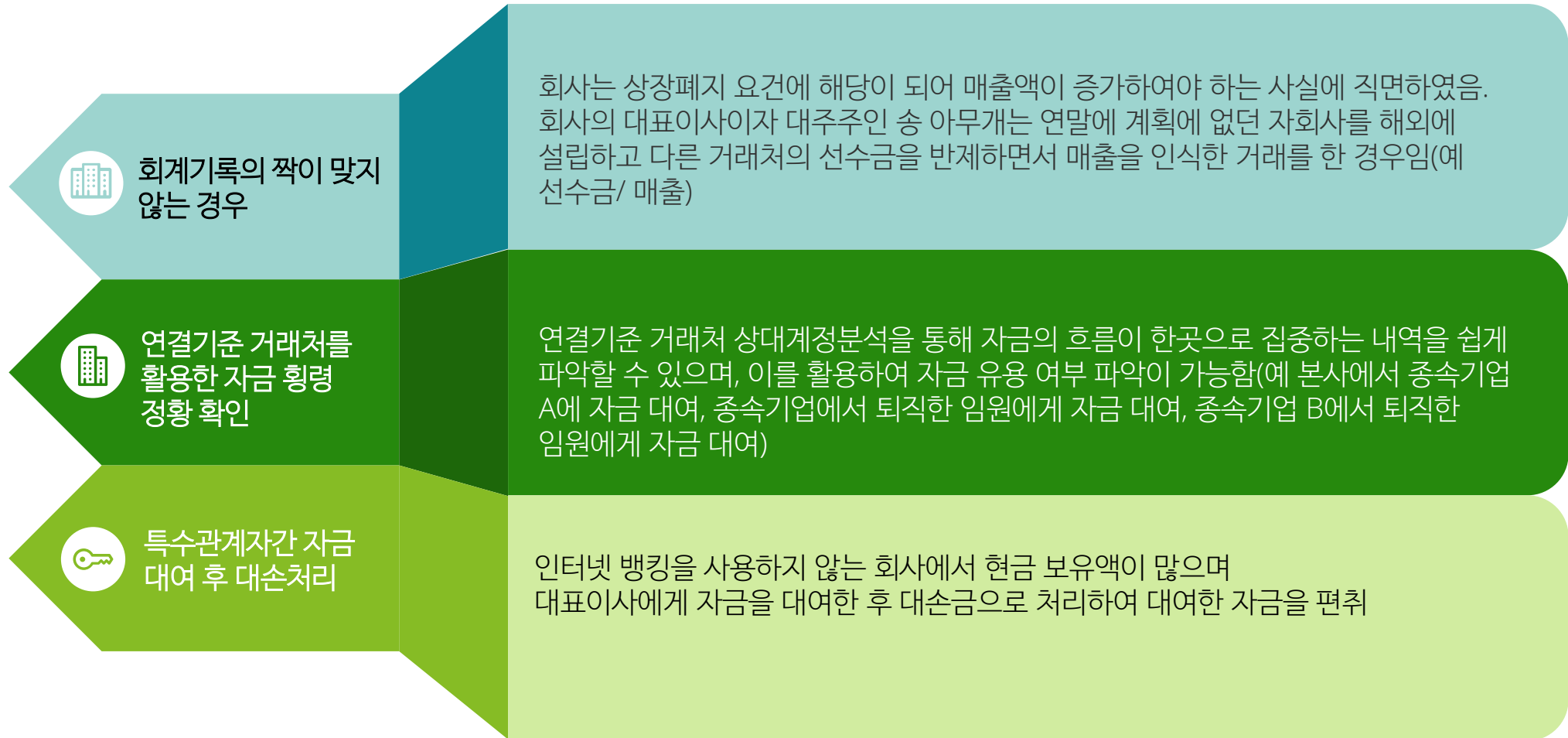
나. 자금흐름의 경우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닌 외부조회 등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을 대사

다. 차이금액은 기업의 자금관련 통제활동의 중대한 미비를 나타내고 기업 부정관련 강력한 Red-flags임

활용사례

- 해외 종속기업 자금관련 통제활동 미비사항 탐지(예 해외 법인장에 의해 자금이 무단으로 입금 후 일정 기간 후 다시 입금되는 사례)
- 국내 건설현장 등 본사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어 통제활동에 대한 우회가 가능한 경우(예 건설현장에서 경리 여직원이 보증금을 횡령 탈취한 사례)
- 국내 중소기업에서 자금과 회계에 대한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소수에 의해 권한이 집중된 기업

6. 상대계정분석 (Unrelated account)



6. 상대계정분석 (Unrelated account)

회계원장을 활용하여 자금흐름의 이상 정황 확인

Illustrative

연결기준 General Ledger 상대계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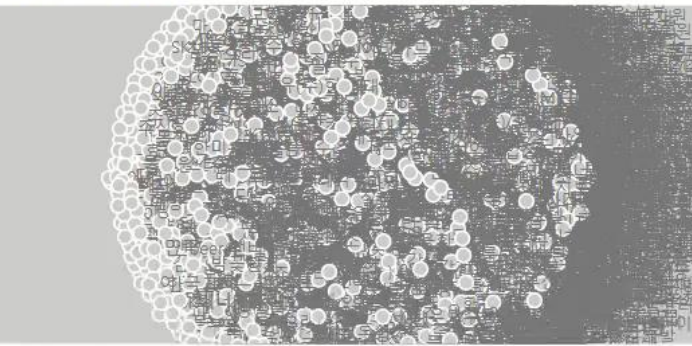
계정과목명_x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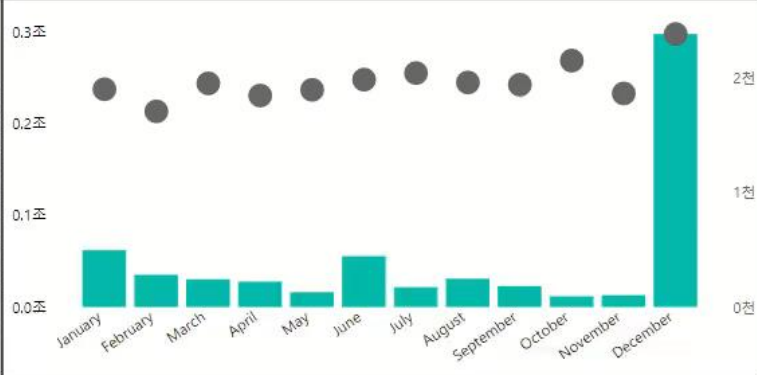
계정과목명_y
모두

-15018098745 88392589508


Network

사업부명 -> 거래처명





GL 차변->대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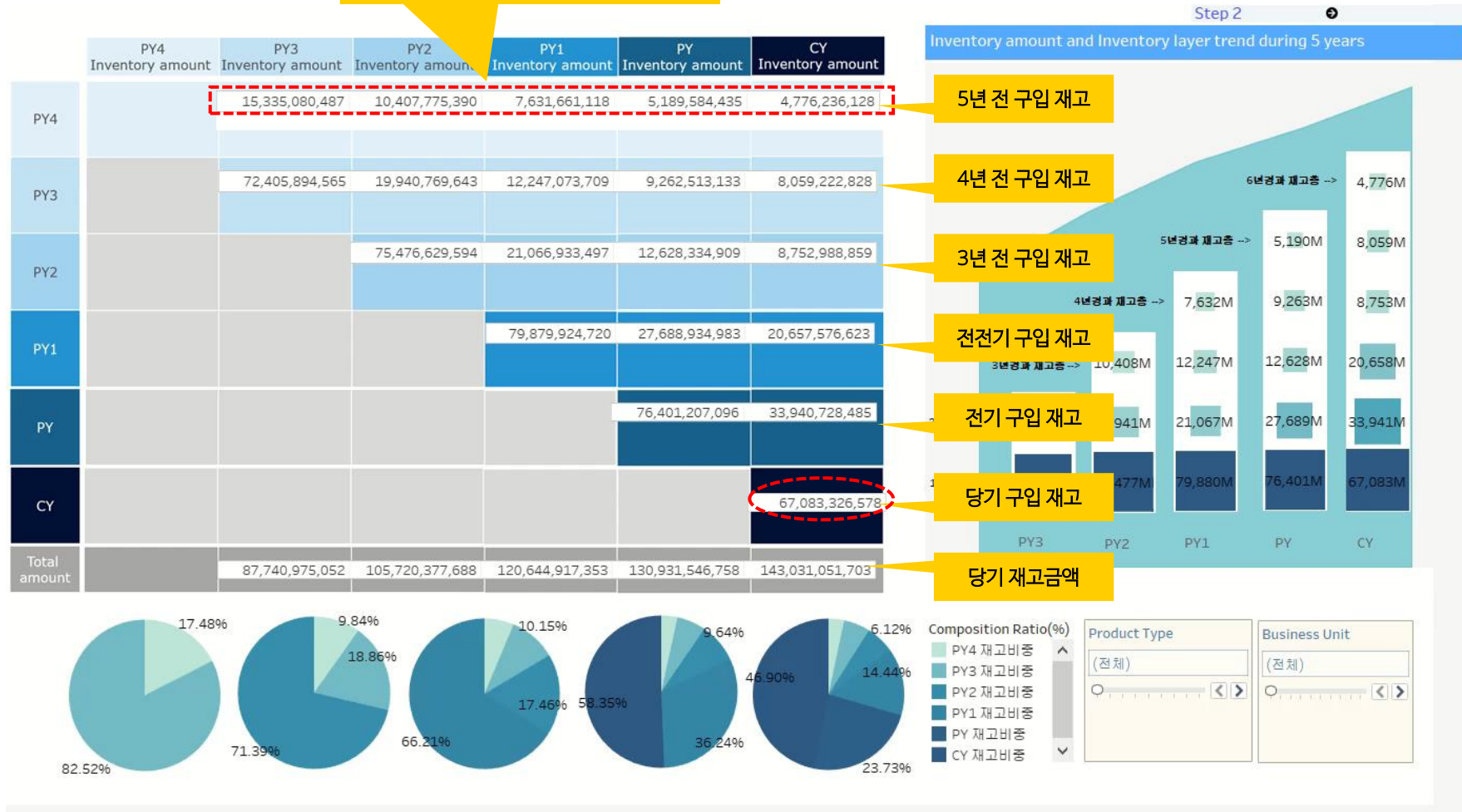


| 사업부명 | 거래처코드 | 전표번호 | 계정과목명 | 차변금액 | 대변금액 |
|-------|-------|---------------|--------|------------|------------|
| DDDMS | 98052 | DDDMS-0101-1 | 보통예금 | 0 | 43,000 |
| DDDMS | 9999 | DDDMS-0101-1 | 특리회상비 | 43,000 | 0 |
| DDDMS | 367 | DDDMS-0101-10 | 예수금 | 25,542,350 | 0 |
| DDDMS | 269 | DDDMS-0101-10 | 예수금 | 0 | 25,542,350 |
| DDDMS | 980 | DDDMS-0101-11 | 특리회상비 | -478,320 | 0 |
| DDDMS | 980 | DDDMS-0101-11 | 예수금 | 478,320 | 0 |
| DDDMS | 367 | DDDMS-0101-12 | 보통예금 | 82,230 | 0 |
| DDDMS | 367 | DDDMS-0101-12 | 예수금 | 0 | 82,230 |
| DDDMS | 2499 | DDDMS-0101-13 | 의상제일금 | 0 | 1,159,400 |
| DDDMS | 2499 | DDDMS-0101-13 | 일계좌 | 3,430,000 | 0 |
| DDDMS | 44503 | DDDMS-0101-14 | 의상제일금 | 0 | 1,031,800 |
| DDDMS | 44503 | DDDMS-0101-14 | 일계좌 | 10,414,000 | 0 |
| DDDMS | 77 | DDDMS-0101-15 | 태일증권사 | 0 | 1,105,000 |
| DDDMS | 77 | DDDMS-0101-15 | 특이회기입금 | 11,358,000 | 0 |
| DDDMS | 0 | DDDMS-0101-16 | 특이회기입금 | 1,105,000 | 0 |

7. 재고자산(Inventory)

재고자산 실물흐름을 가정하여 재고자산 적체 유무 및 이상유무 파악

5년 전 재고자산의 판매잔고 추세 확인 가능



III. 자금사고 대응 실무전략

1. 자금사고 대응 실무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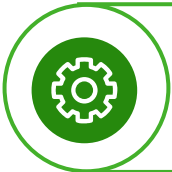
자금사고 관련 부정과 횡령을 탐지 목적으로 Data Analytics 접목 시 효과적
(예 신용카드 이중지불, 거래 이중지급을 적발하기 위한 벤포드 법칙 적용)



주요 신문기사에서 발생하는 자금사고의 사례 기반으로 경험적인 시나리오 기반으로 자금사고를 진단하고 탐지해야 함
(예 임직원 자금횡령을 위한 임직원 계좌 대사, 가공의 거래처를 활용한 횡령)



기존의 내부통제에서 목표로 두고 있는 내부 프로세스 위주 개선 뿐만 아니라 회사 내·외부자료를 활용하여
자금사고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필요¹(예 사업자휴폐업조회)



자금사고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포렌식 기반 룰 적용으로 자금관련 부정·횡령 적발 가능성을 높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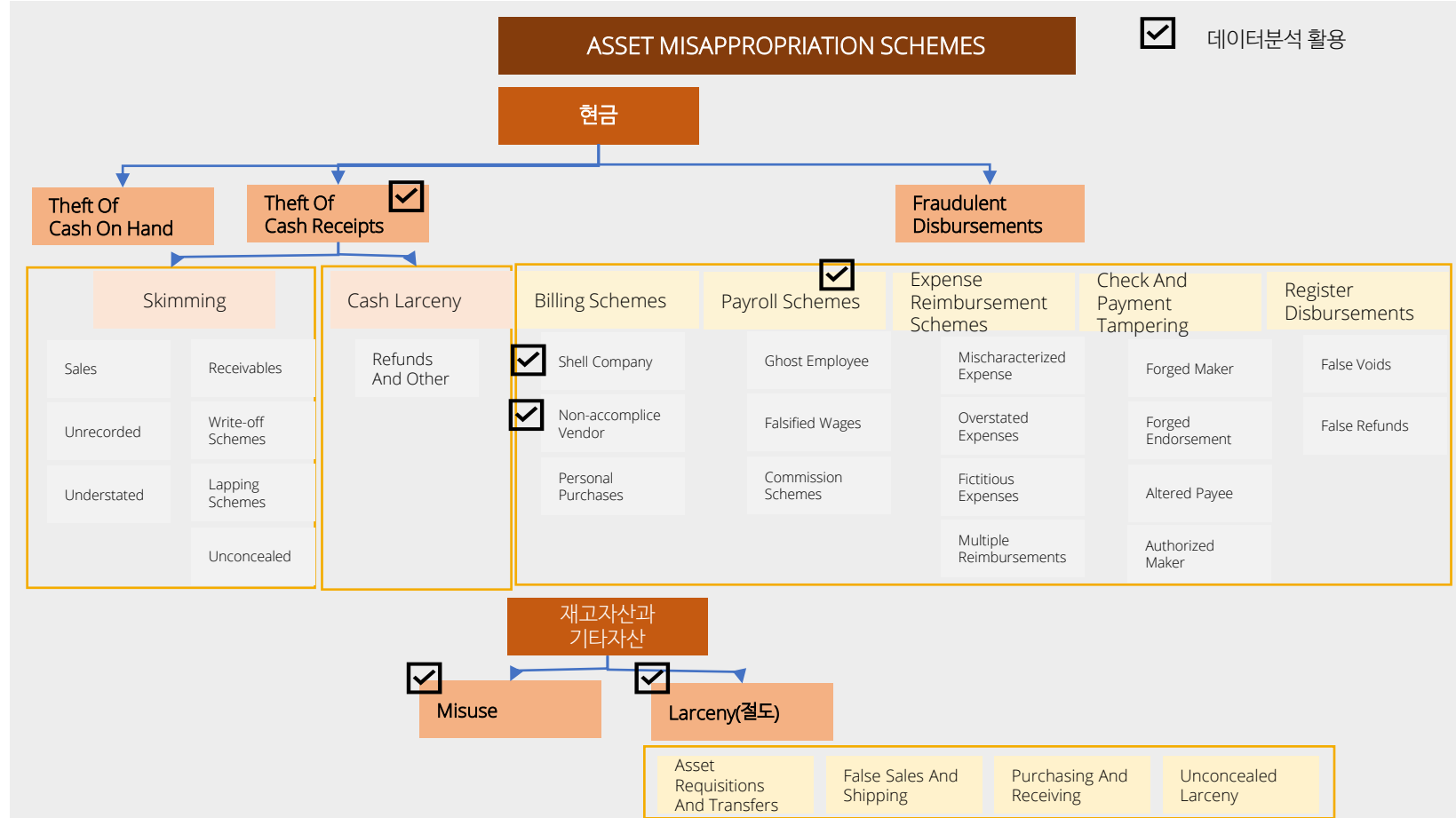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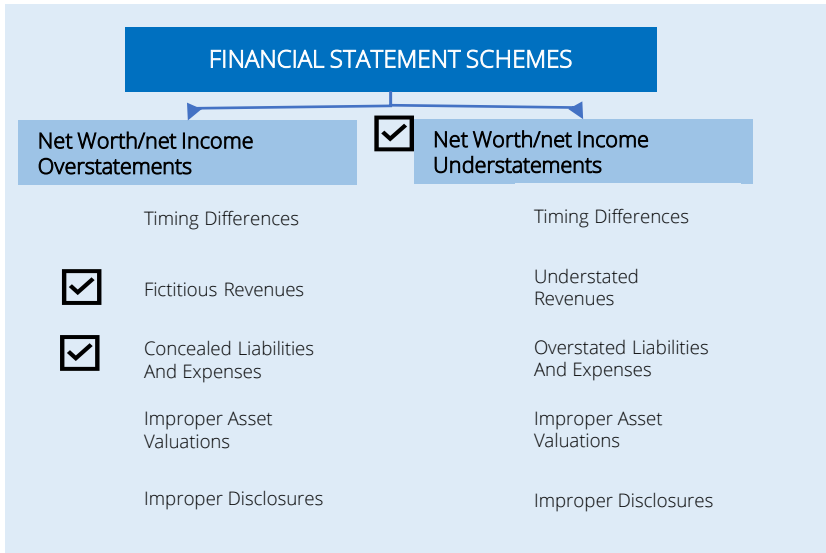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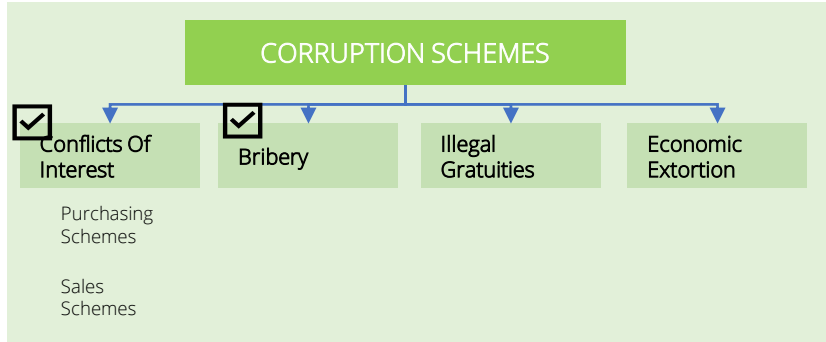


일상적인 업무 감사 등과는 다른 자금 사고 진단·탐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나리오 필요
(예 자금일보 관련 통제활동 강화 등)

¹ 가공 거래처 확인을 위한 사업자휴폐업조회, 재무정보 확인 등

[참고] 공인부정조사사 협회 Fraud Tree

The ACFE(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Fraud Tree



Source: Occupational Fraud and Abuse Classification System (the Fraud Tree), Association of Fraud Examiners 2020 Report to the Nations – Global Study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



Session 4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Empowering Business with Actionable Risk Insights

Contents

- I. 내부감사의 미래
-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 III. 데이터 시각화 활용 예시



1. 내부감사의 미래

Value Proposition 1

사후 점검 위주 감사 → 적시 인지 감사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음

Timing

Value Proposition 2

사후 개선 → 진단을 통한 예방 감사

사고가 발생하기 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진단으로 리스크가 높은 부분 조기 식별 및 예방 통제

Prevention

Value Proposition 3

간접적 데이터 활용 → 직접적 디지털 감사

IT 부서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감사 도구 제공

Self Digital Audit

I. 내부감사의 미래

1. Future of IA

The time to upgrade for future of Internal Audit



Risk based Internal Audit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스크 기반 내부감사로 전환 필요



Data Analytics for Internal Au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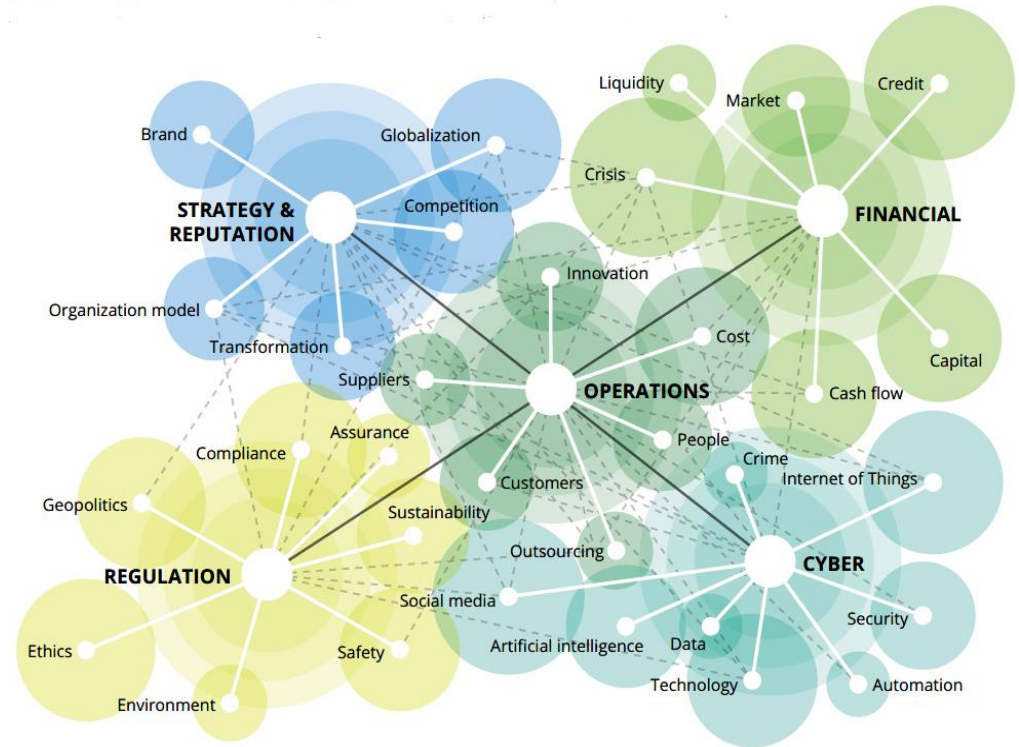
다양한 이슈에 대한 빠르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데이터 기반 내부감사기법 필요



Visualization for Internal Audit

유연하고 민첩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시각화 플랫폼을 활용한 내부감사기법 필요

The expanding risk landscape facing organizations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내부감사도 혁신이 필요함

I. 내부감사의 미래

2. Voice of Internal Auditors



Advanced & New

“내부감사 착안사항을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이 필요합니다”



Convenience

“기존 내부감사 방식이 아닌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한 리스크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Communication

“리스크 발생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감사업무의 효율화”
“신규 감사 시나리오 발굴”

I. 내부감사의 미래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내부감사 영역

부정(Fraud), 자금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감사 핵심 포인트



Vendor Health Check - 지급대상의 유효성 확인

거래처 마스터 파일내에 있는 금액 지불대상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잘못되거나 의심이 되는 지급대상을 확인합니다.



Vendor Relationship - 지급대상과의 관계

이해 상충을 유발하거나 잠재적인 부정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관계를 확인합니다.



Abnormal Transaction - 거래 이상징후

거래 이상징후를 탐색합니다. 시스템 통제 우회, 의도적인 규정 준수 회피, 비효율적인 프로세스 등을 확인하여 이상징후를 식별합니다.



System Authorization & SOD - 시스템 사용자 권한 및 직무분리

시스템 사용자 권한과 활동 내역을 체크하여 잠재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유저가 접근함을 확인하고 비효율적인 활동을 식별합니다.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1. 상시모니터링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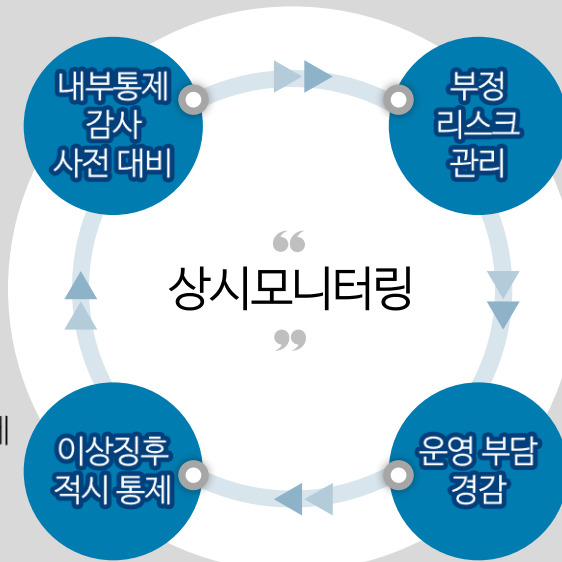
상시모니터링이란?

리스크 관점에서 설계된 내부통제와 IT 시스템의 운영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를 적시에 포착하는 체계

리스크 기반 내부통제

- ☑ 내부통제 체계 강화
- ☑ 리스크 기반 시나리오 설계
- ☑ 효율적 내부통제 운영

- 적극적으로 “중요한 취약점” 발견 필요
- 내부통제 감사 사전 시뮬레이션



- IT를 활용한 내부통제 강화
- 자동화된 통제 강화
- 특이 거래 모니터링

- 부정 리스크 중점 감사사항 권고
- 부정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운영 권고

- 효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통제 테스트 자동화
- 운영 테스트용 자동 샘플링

데이터 애널리틱스

- ☑ 증거 기반 내부통제
- ☑ 자동화된 통제 강화
- ☑ 내부통제 샘플 자동 추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이후 실제 통제 수준 강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내부감사 수준 강화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2. 상시모니터링 도입 배경

내부감사실 업무 현황

감사대상 조직 증가 및 수시감사 확대로 인한 감사 주기 지연

핵심 리스크에 대한 적시 모니터링 필요성 증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부정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능동적 대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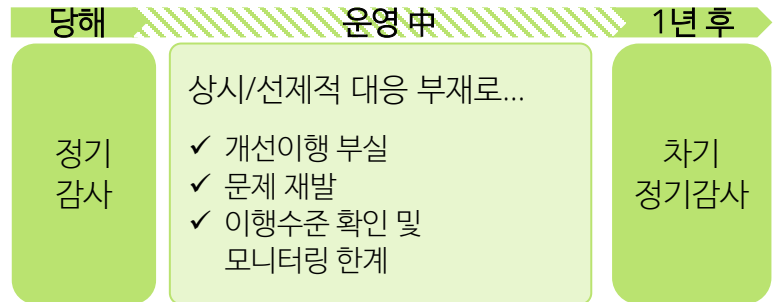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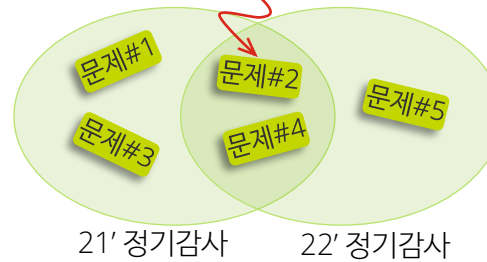
IT 기반 업무 증가로 인한 감사 방식 변화 필요

수작업 위주의 감사에서 정형화된 시스템 기반 감사로 전환 필요

전통적인 수기 처리 방식 내부감사의 한계

정기감사/수시감사 완료 후 지적사항 근본 개선 여부 확인에 한계 有

유사/동일 문제발생



데이터 분석 기반 상시 모니터링 구축 필요

리스크 식별을 통해 이슈관리, 재발방지, 근본적 개선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필요

- ERP
- 전자결재
- e감사시스템
- 공급업체 관리 시스템
- 설비자재관리시스템
- 인사 시스템



리스크 시나리오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 추출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3. 상시모니터링 추진 전략

Captured Issue

내부감사 자원의 한계

- 정기감사/수시감사 대상 조직 증가로 인한 감사 주기 지연으로 리스크 관리 한계 발생
- 수기 감사 위주의 감사 운영으로 핵심 리스크에 대한 적시 모니터링의 어려움 발생

IT 시스템 의존도 증가

- 주요 업무의 IT 시스템 활용도 증가
- 시스템을 활용한 감사로 정확성 확보 필요
- 감사업무 관련 데이터 분석 업무 수작업 위주

내부감사 업무 개선 필요

- 반복적 발생 오류/부정 사안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리스크 사전 인지 필요
- 컨설팅을 통한 감사업무 수준 및 회사 전반의 리스크 관리 수준 진단 필요

Solution

데이터 기반 감사 Data-driven

- 데이터 분석을 통한 Process X-ray 기능 구현
- 비정상적 업무 처리 결과 센싱을 위한 데이터 분석
- 디지털 분석 도구 활용 데이터 분석 자동화 체계 구현

내부감사 범위 확대 Extension

- 감사 대상 조직 및 범위 동시 확대 가능한 모델 적용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 비즈니스 Rule에 위배되는 트랜잭션 자동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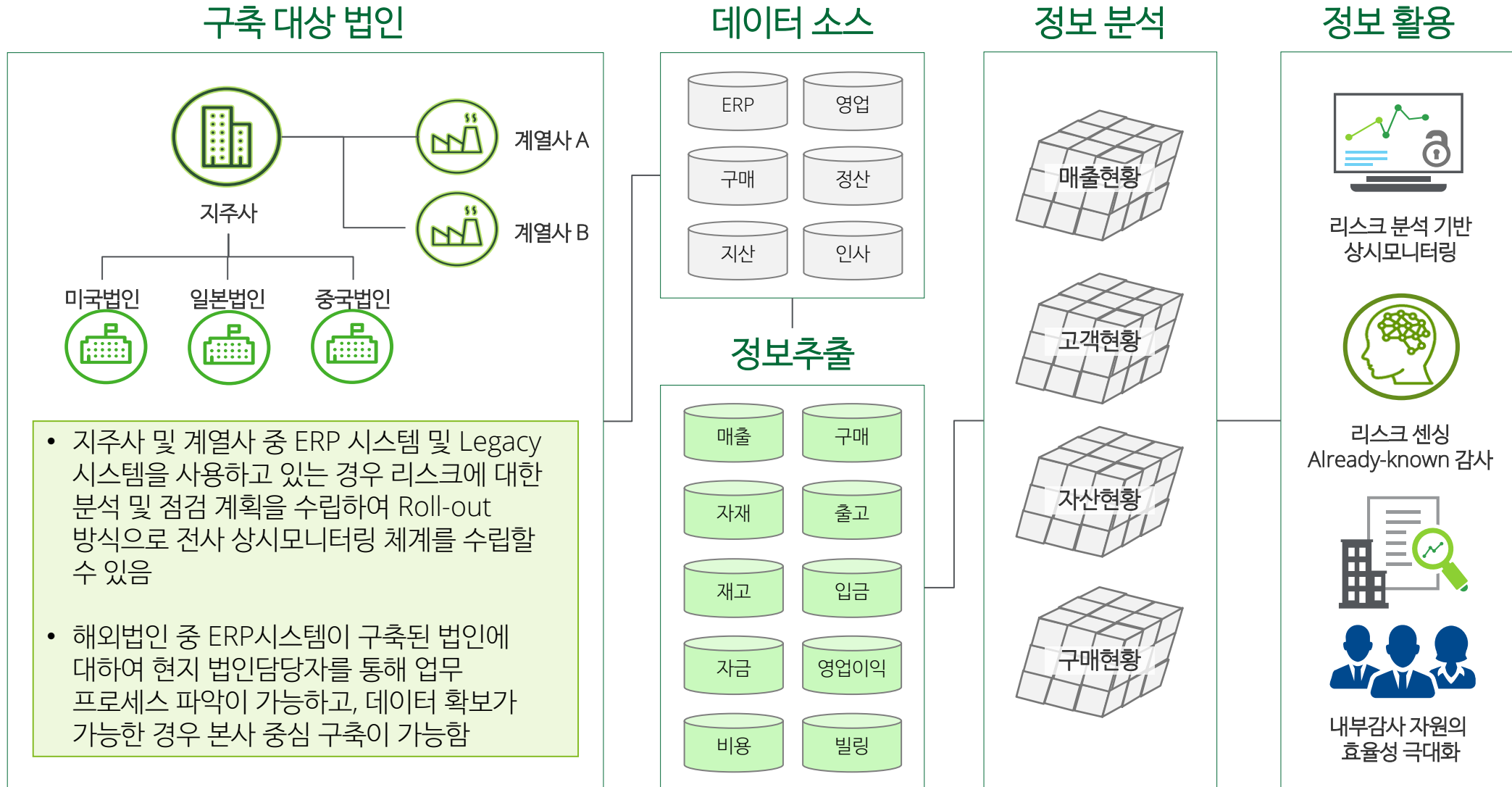
내부감사 3.0 Transformation

- 리스크 관리 수준 진단을 통한 능동적 감사로 전환
- 유연성/확장성을 고려한 Agile 감사 체계 마련
-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Mock Audit 기능 마련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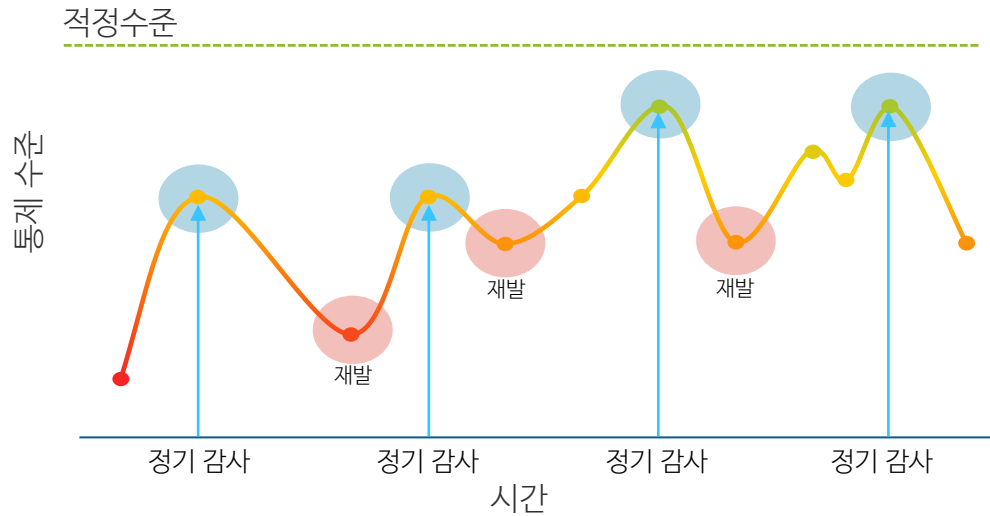
4. 지주사/그룹사 차원의 상시모니터링 체계 수립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5. 기대효과 -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수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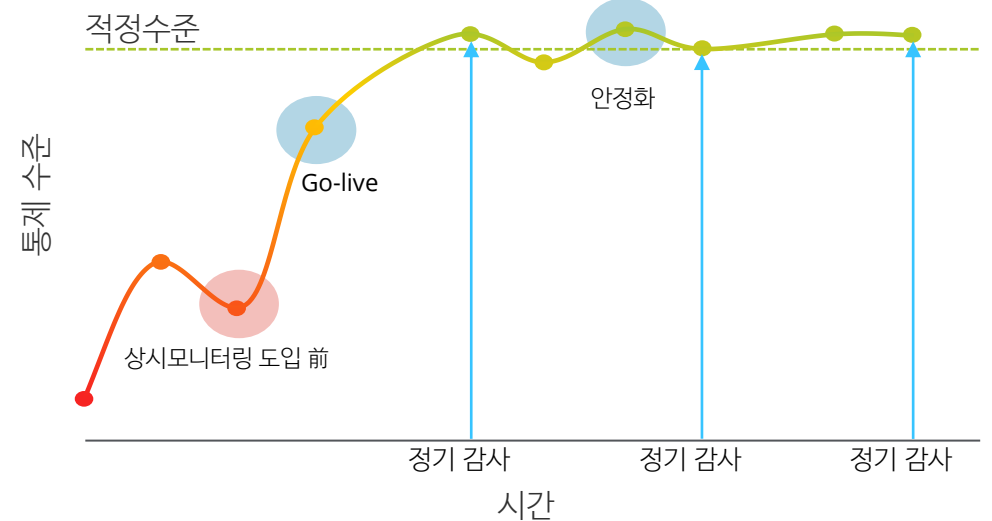
상시모니터링 도입 前



AS-IS

- 매 정기 내부감사 때마다 동일한 단순반복적인 문제점 발생
- 한정된 감사 자원 및 시간을 단순반복적인 이슈 발견에 소모
- 전수 데이터 조사가 아닌 현장 샘플 검토로 인한 감사 효과성 경감

상시모니터링 도입 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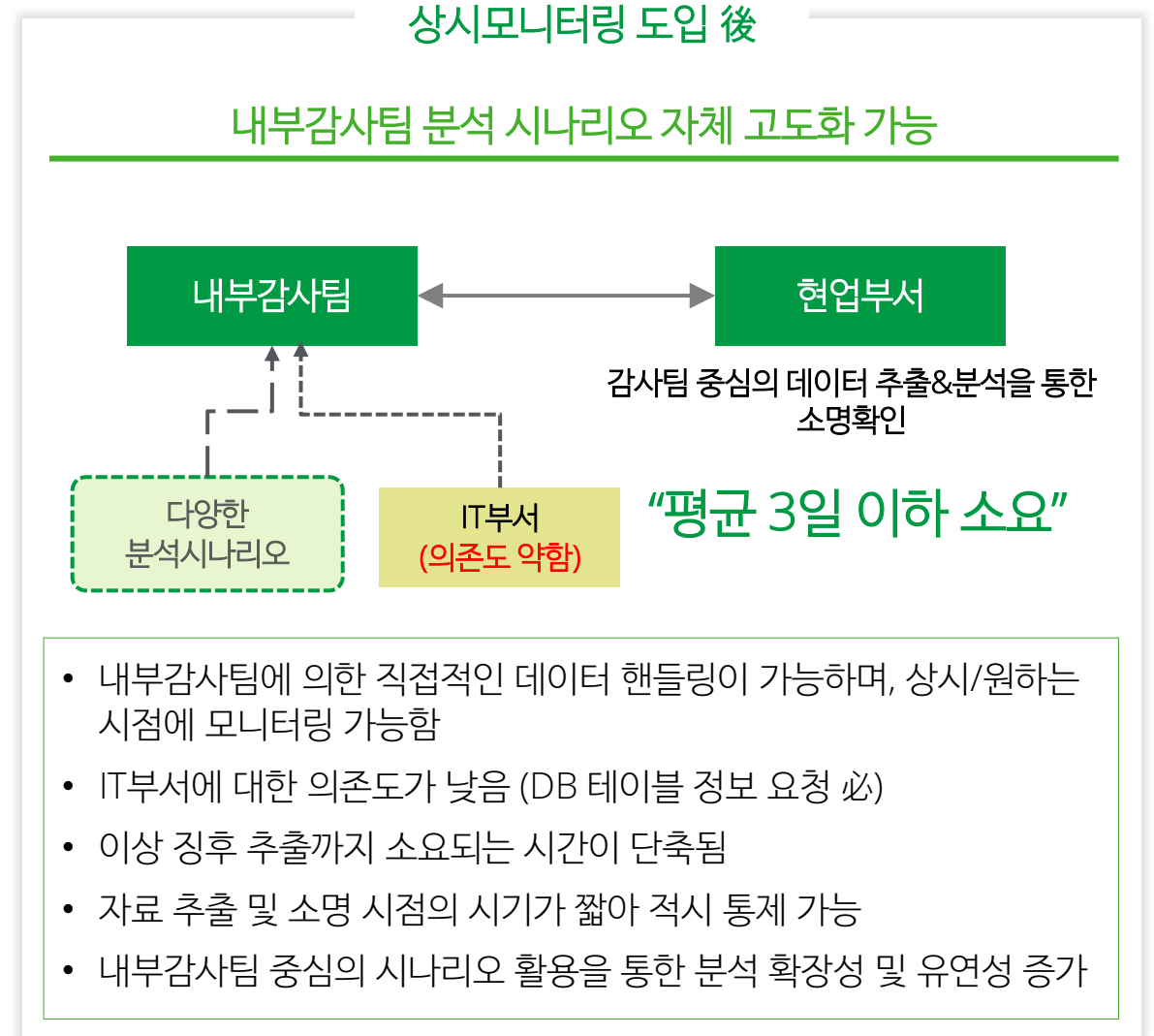


TO-BE

-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단순반복적인 문제점을 적시에 확인 및 보완 가능
- 정기 내부감사 시에는 보다 더 중요한 감사 항목에 자원 및 시간을 투입 가능
- 전수 데이터 분석을 통한 Insight 도출을 통해 숨겨진 문제점 확인 가능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5. 기대효과 - 데이터 활용 감사로 전환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6. 자금 리스크 진단 시나리오 설계

자금 프로세스 진단 시나리오 설계

| | |
|---------------------|--|
| 자금 지출 프로세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직무분리의 미설계로 인한 부정/횡령 발생을 방지하는 통제 활동 필요 |
| 현금 출납, 자금수지 프로세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월간 자금수지계획서 검토 및 승인, 일일자금수지 통제를 점검하여 현금 지출/유입의 누락으로 계획되지 않은 현금 유출/잉여의 발생위험 진단 |
| 오더, 매입, 구매/계약 프로세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주오더, 매입채무, 구매 및 거래처 정보 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재무적 손실 발생 위험 진단 |
| 계좌 관리 현황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감 및 계좌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부외부채, 부정방지 발생 가능성 진단 |
| 회계업무와 자금관리업무 간 직무분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직무 분리 점검직무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간 상호 승인, 상위관리자 정기 모니터링 및 변경사항 승인 통제 검토 필요 |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7. 데이터 기반 내부감사의 접근방법



Process Diagnosis

업무 프로세스 분석

검토 대상

실물전표, 승인 내역, 인보이스, 구매 품의, 지급명세서, 계약서, 자금일보
 펌뱅킹 승인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주요 검토항목

- 전표 생성 프로세스의 적절성
- 작성자/승인자 검증(작성자/승인자 동일 내역)
- 임시계정(가수금, 가지급금) 분석
- 개인지급 전표 확인



Risk Scenario

자금 관리 시나리오 적용

적용시나리오

개인지급 AP 전표 중 비정상적인 과대금액 이체 건 추출

분석 도구(Tool)

감사 전용 Tool(ACL), SQL, R, Python, Tableau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검토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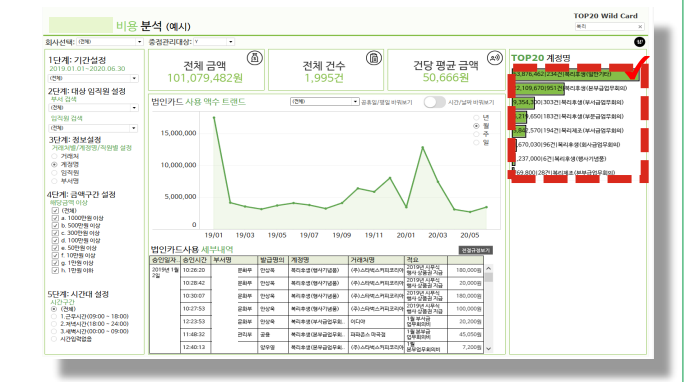
시나리오 별 데이터 분석 결과 이상 건 추출 및 시각화 대시보드 제공



Data Analytics

자금 관리 시나리오 적용

ERP 지급전표 데이터 분석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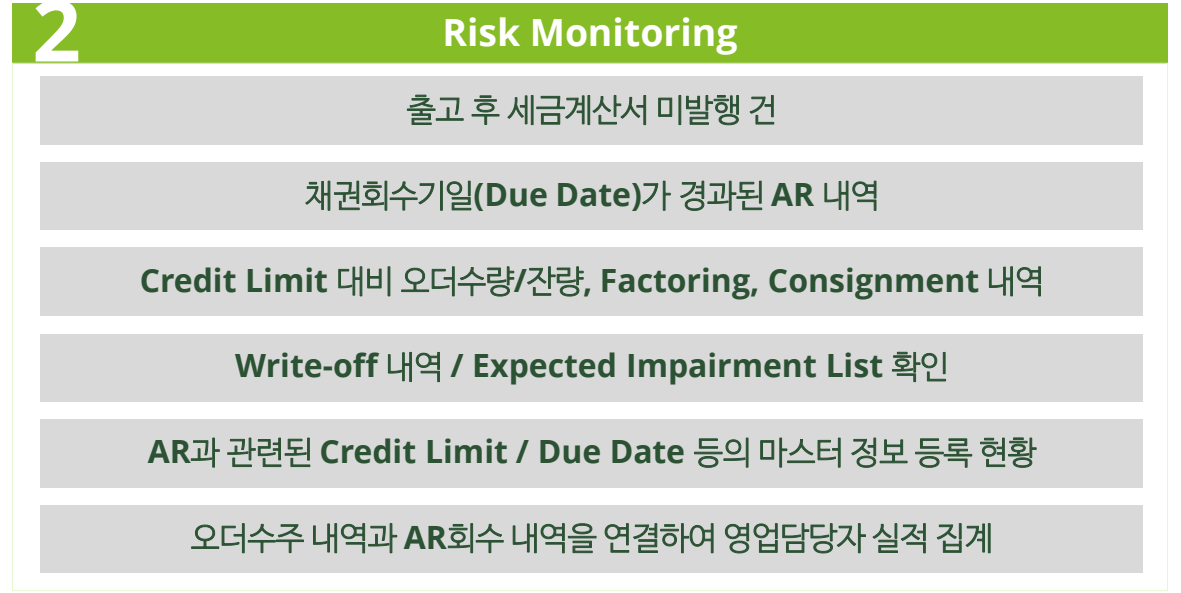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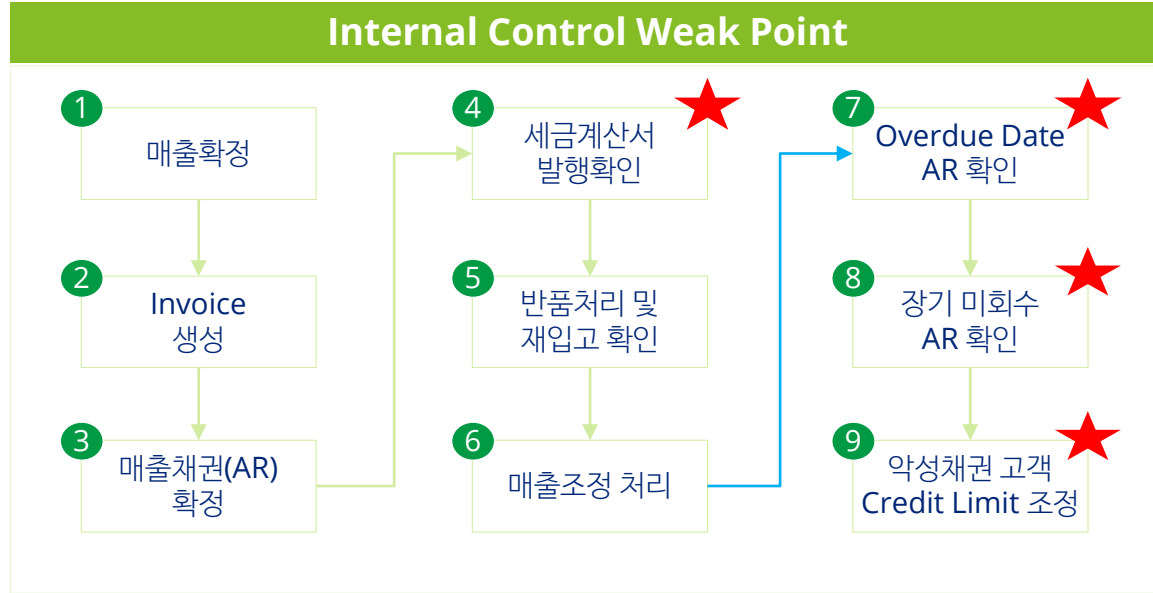
8. 리스크 분석 시나리오 예시

| 영업 | |
|-----------------|--|
| 리스크 | 리스크 시나리오 항목 |
| 거래처 계좌의 다수 등록 | 동일 업체에 대해 단일 계좌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계좌가 등록되어 관리됨에 따라 환급액 등을 업무 담당자가 유용할 위험 |
| 수주오더 허위 입력 후 취소 |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매월 말 임의로 수주오더를 입력 후 월간 실적 보고 후 매출을 취소할 위험 |
| 거래처별 판매단가 차이 | 특정 거래처의 품목별 판매 단가가 평균 단가와 차이가 발생할 위험 |
| 매출 확정 지연 | 제품이 출고되었으나, 인수 확인 지연으로 매출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을 위험 |
| 여신한도 초과 수주오더 | 여신한도를 초과한 거래처의 수주 오더가 등록될 위험 (수주잔고, 재공품, 출하대기 등 포함) |

| 구매 | |
|----------------------|--|
| 리스크 | 리스크 시나리오 항목 |
| 판매단가 차이 발생 | 오더단가와 실제 판매단가 차이 발생에 따른 손익왜곡현상 발생될 위험 |
| 구매요청(PR) 없는 구매오더(PO) | 현업부서의 구매요청(기안) 내역이 없으나 구매 담당자가 임의로 구매주문(발주)을 할 위험 |
| 거래처 정보 불완전 등록 | 거래처 마스터에 거래처 관련 정보 중 주요 필수 정보가 미기재되어 거래처 관리가 부실해질 위험 |
| 유상사급 자재 무상 출고 | 유상사급 자재가 무상사급 자재로 관리되어 무상으로 협력사에게 출고될 위험 |
| 동일품목 구매단가 상이 | 동일 품목에 대해 구매거래처별 단가가 상이하게 적용되어 구매금액의 일관성이 저해될 위험 |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9.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징후 센싱 사례



3 Results of Data Analytics

| 고객사 | 여신한도_AR차액 | 여신한도 | AR_Total | AR_AMOUNT | FACTORING_AMOUNT | BACKLOG_AMOUNT | CREDIT_LIMIT_WARNING |
|-----------------|----------------|---------------|----------------|---------------|------------------|----------------|----------------------|
| SWAN ELECTRONIC | -844,572,550 | 5,000,000,000 | 5,844,572,550 | 3,505,067,000 | 803,005,050 | 1,536,500,500 | 여신한도초과-즉시확인바랍니다 |
| TERRY DIGITAL | -335,521,000 | 4,000,000,000 | 4,335,521,000 | 2,700,465,000 | 185,056,000 | 1,450,000,000 | 여신한도초과-즉시확인바랍니다 |
| MK TECH | -3,366,585,300 | 3,000,000,000 | 6,366,585,300 | 5,135,005,000 | 454,000,300 | 777,580,000 | 여신한도초과-즉시확인바랍니다 |
| CHACHA LTD. | -3,942,314,930 | 3,000,000,000 | 6,942,314,930 | 854,390,840 | 594,833,090 | 5,493,091,000 | 여신한도초과-즉시확인바랍니다 |
| YJ TELECOM | -8,305,066,490 | 2,000,000,000 | 10,305,066,490 | 482,042,900 | 5,493,540,390 | 4,329,483,200 | 여신한도초과-즉시확인바랍니다 |
| S-BANG DIGITAL | -3,054,736,000 | 7,000,000,000 | 10,054,736,000 | 5,680,000,000 | 4,340,204,000 | 34,532,000 | 여신한도초과-즉시확인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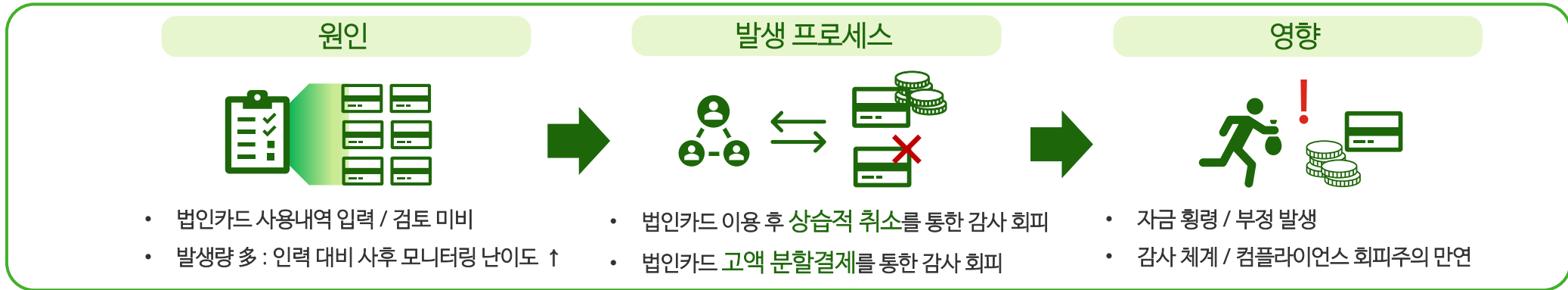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사에 대해 신용정보 및 매출채권 회수현황을 추가로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여신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주물량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채권 발생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둬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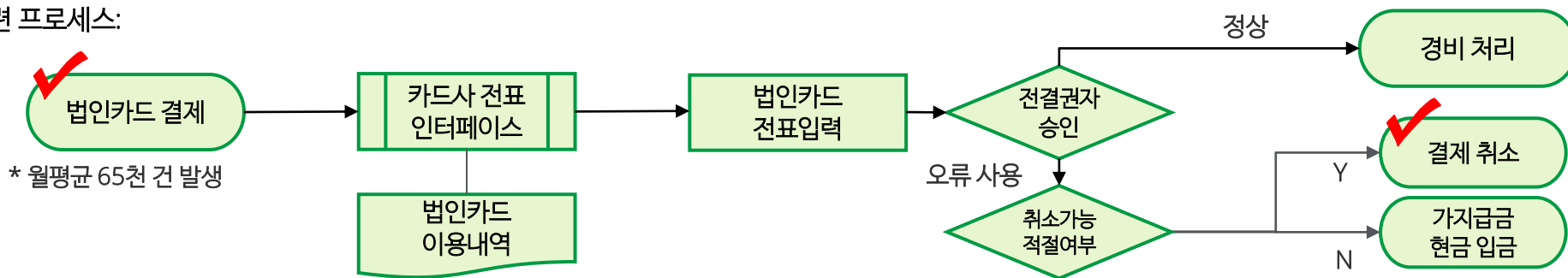
10. 리스크 진단 예시 - 비용 오남용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 의심 건

법인카드 이용 시 상습적인 취소 / 분할결제 등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할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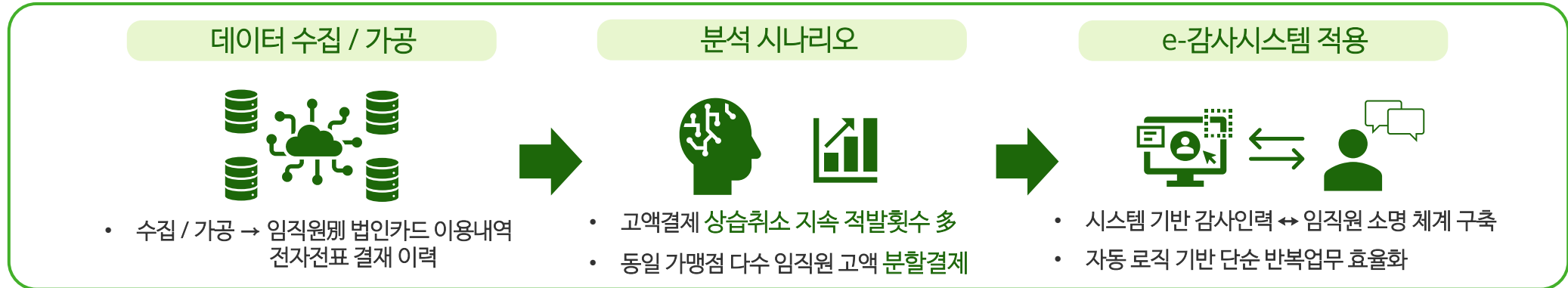


관련 프로세스: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10. 리스크 진단 예시 - 비용 오남용



* 법인카드 상습 취소 / 동일 가맹점에 대한 법인카드 대금 분할결제(2022.01.01 ~ 2022.07.31) 대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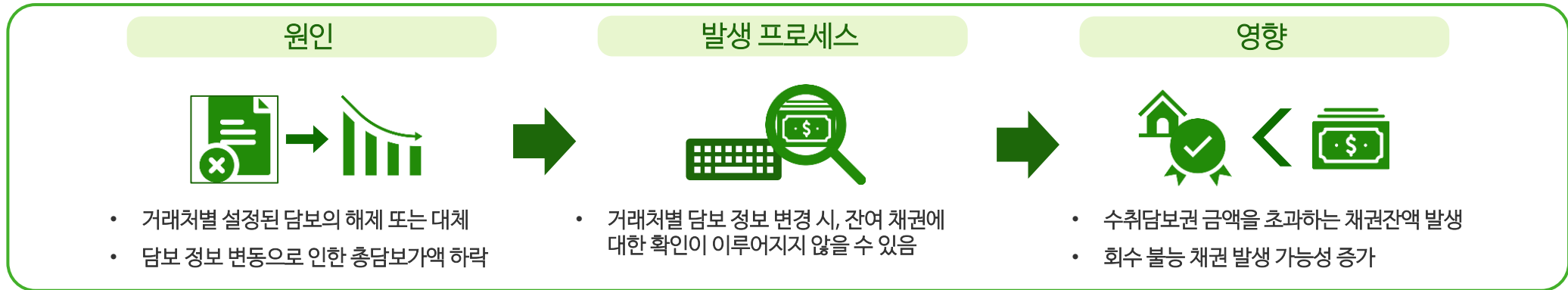
| 구분 | 카드소유자 사번 | 일자 | 시각 | 매출금액 | 취소금액 | 가맹점명 | 업종명 | 적요(Description) |
|------|----------|----------|---------|-----------|-----------|--------------|------|-----------------|
| 상습취소 | 109603 | 19/12/12 | 19시 06분 | 497,000 | 497,000 | (주)다원교육 | 보습학원 | 직원간식대 |
| 상습취소 | 109603 | 20/07/01 | 12시 16분 | 1,592,000 | 1,592,000 | (주)다원교육 | 보습학원 | 영업식대/간식대 |
| 상습취소 | 109603 | 20/08/30 | 20시 42분 | 2,328,000 | 2,328,000 | (주)다원교육 | 보습학원 | 직원간식대 |
| 분할결제 | 107889 | 22/04/20 | 22시 07분 | 340,000 | - | 지금보고싶다 안양일번가 | 일반한식 | 거래처판촉 |
| 분할결제 | 108815 | 22/04/20 | 22시 08분 | 270,400 | - | 지금보고싶다 안양일번가 | 일반한식 | 거래처판촉 |
| 분할결제 | 108370 | 22/04/20 | 23시 20분 | 221,500 | - | 지금보고싶다 안양일번가 | 일반한식 | 거래처판촉 |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10. 리스크 진단 예시 - 영업(거래처 담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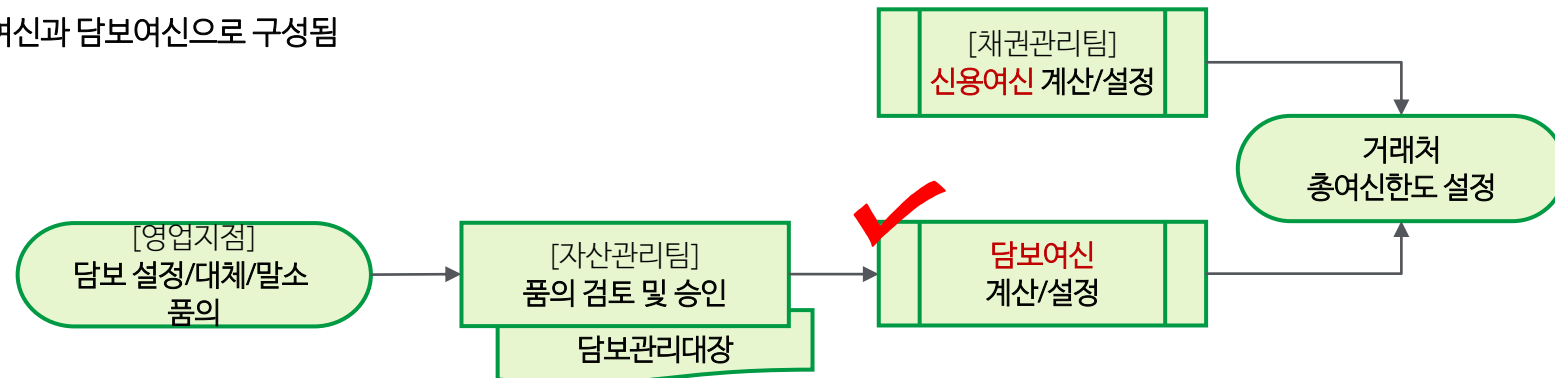
거래처 담보가액의 과도한 하락

거래처 담보의 해제 또는 대체 시, 총담보가액이 하락하여 거래처의 채권잔액이 수취담보권 금액을 초과할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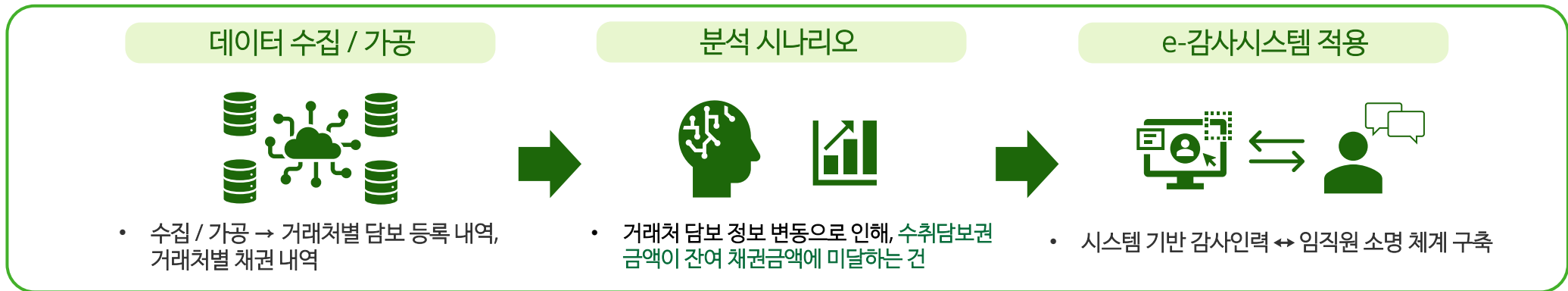
관련 프로세스: 담보관리, 여신관리

거래처 총여신은 신용여신과 담보여신으로 구성됨



II. 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

10. 리스크 진단 예시 - 영업(거래처 담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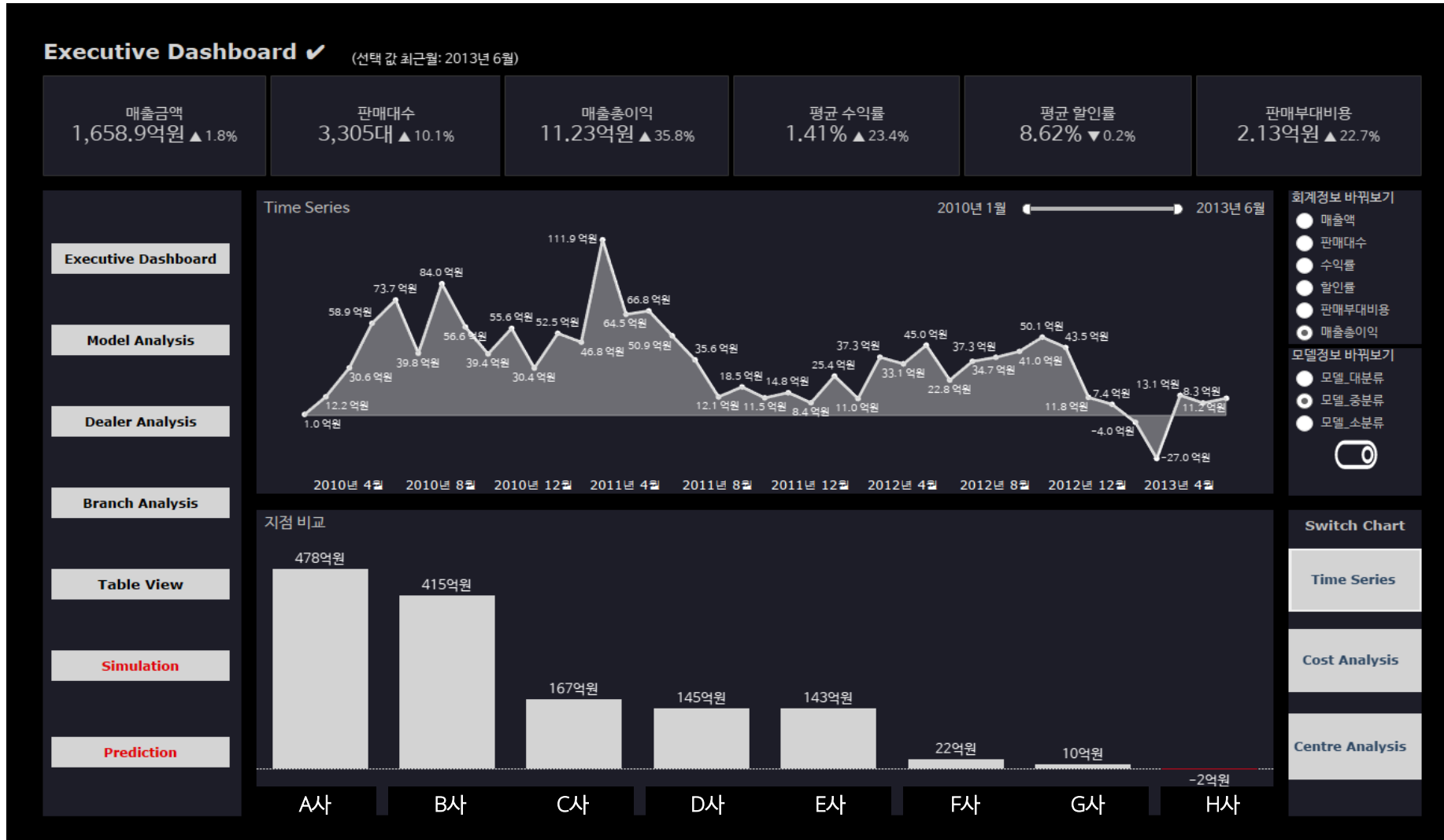
* 담보 해지/대체 이후 채권잔액이 총실담보가액을 초과한 46건 중 대표 사례 (2022.01.01-2022.07.31)

| | 담보 변동일 | 지점명 | 거래처명 | 영업중지 여부 | 담보가액 변동 | 변동 후 총실담보가액 (A) | 기준일의 채권잔액 (B) | 담보초과 채권금액 (B-A) |
|---|------------|--------|--------|---------|--------------|-----------------|---------------|-----------------|
| 1 | 2022.01.13 | 대구지점 | 삼화산업 | 정상 | -300,000,000 | 475,072,000 | 565,988,177 | 90,916,177 |
| 2 | 2022.03.11 | 수퍼서부지점 | 김포수퍼마켓 | 정상 | -40,668,512 | 43,551,983 | 79,104,890 | 35,552,907 |
| 3 | 2022.03.29 | 인천지점 | 술파는사람들 | 정상 | -23,700,000 | 45,700,000 | 67,206,454 | 21,506,454 |
| 4 | 2022.07.25 | 부산지점 | 우리주류 | 정상 | -150,000,000 | 76,139,000 | 173,256,222 | 97,117,222 |
| 5 | 2022.07.28 | 신유통1지점 | 극동 목천 | 정상 | -500,000,000 | 1,296,068,000 | 1,366,423,185 | 70,355,185 |

III. 데이터 시각화 활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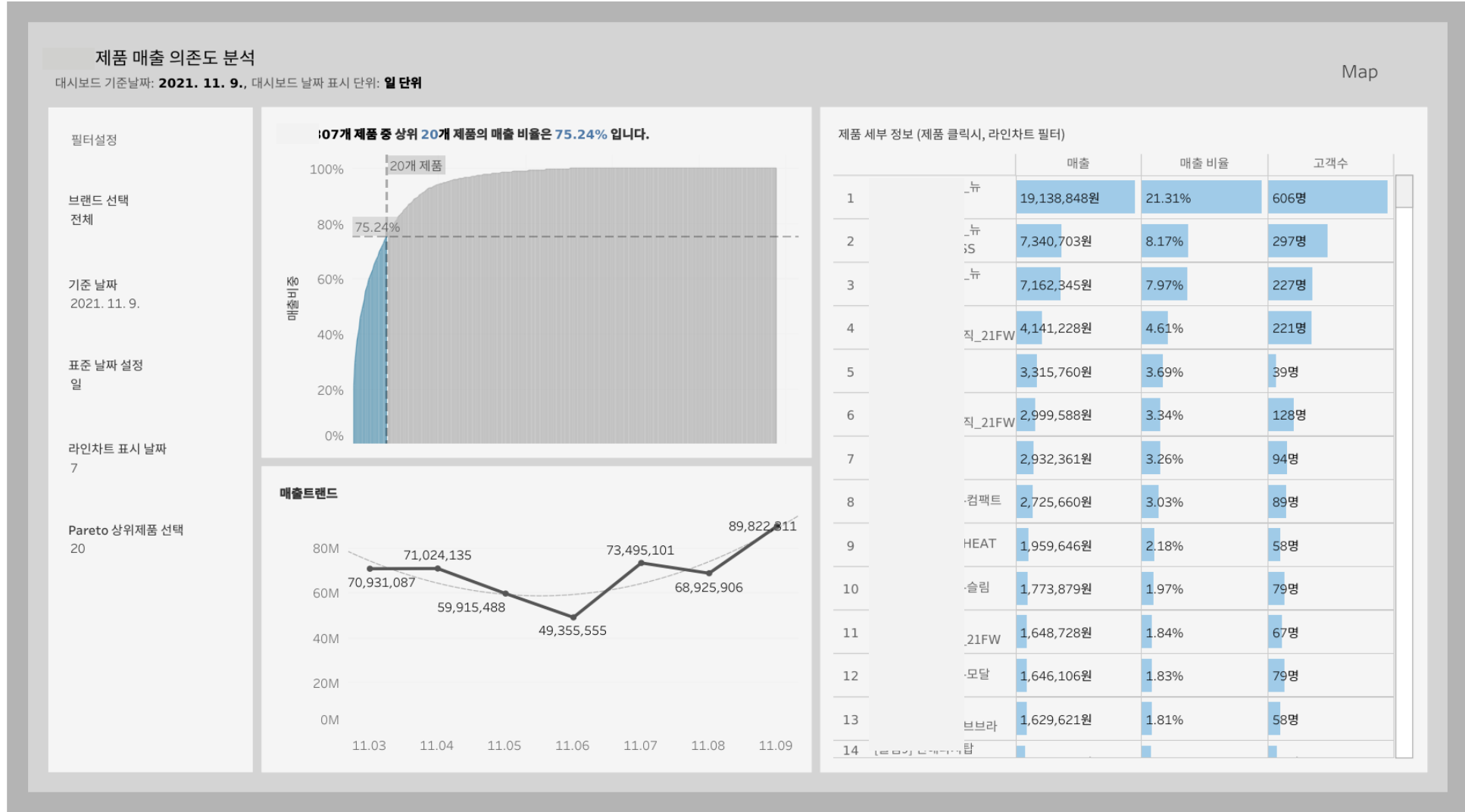
III. 데이터 시각화 활용 예시

1. 상시모니터링 대시보드 예시 - 매출현황 및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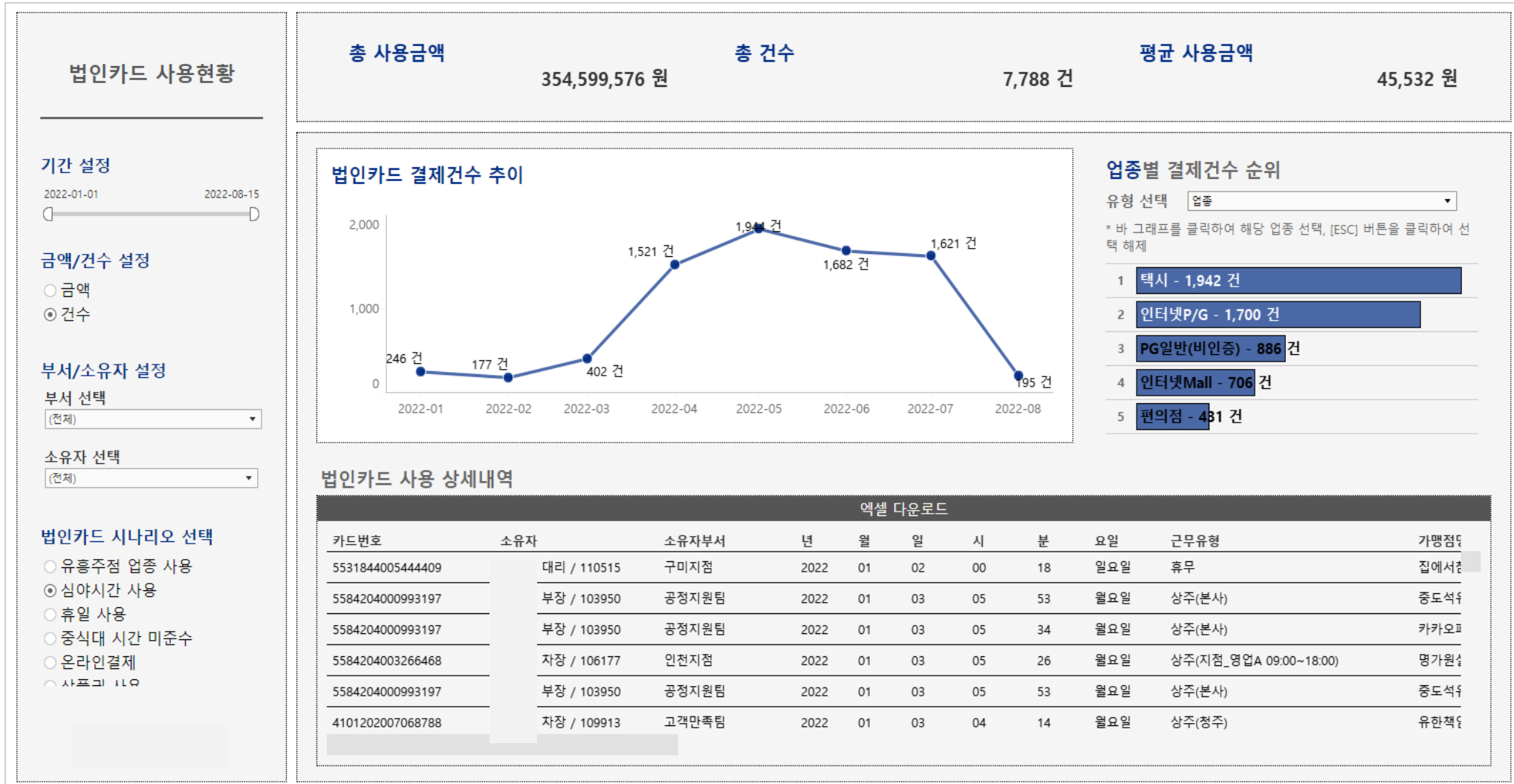
III. 데이터 시각화 활용 예시

2. 상시모니터링 대시보드 예시 - 제품별 매출 의존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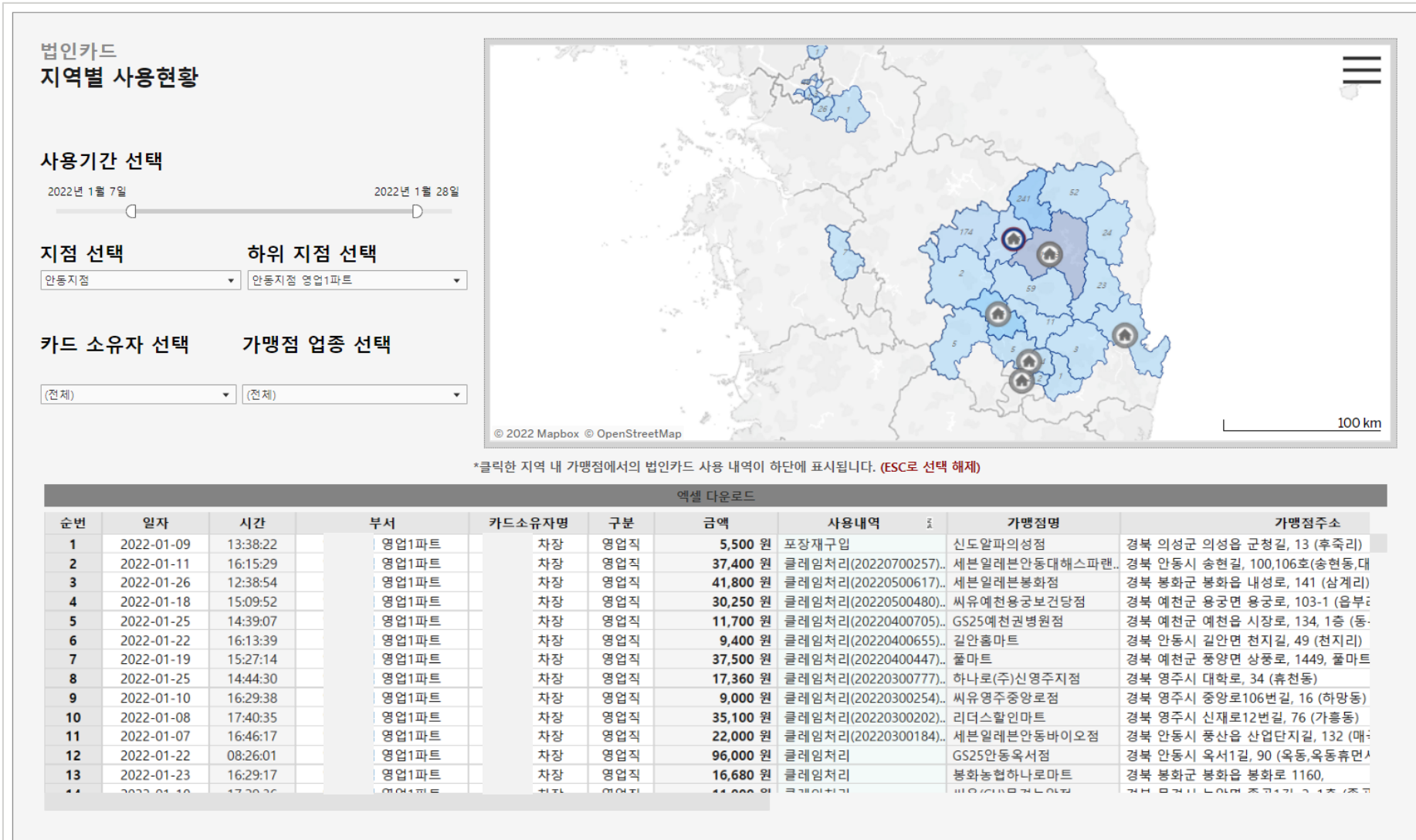
III. 데이터 시각화 활용 예시

3. 상시모니터링 대시보드 예시 - 법인카드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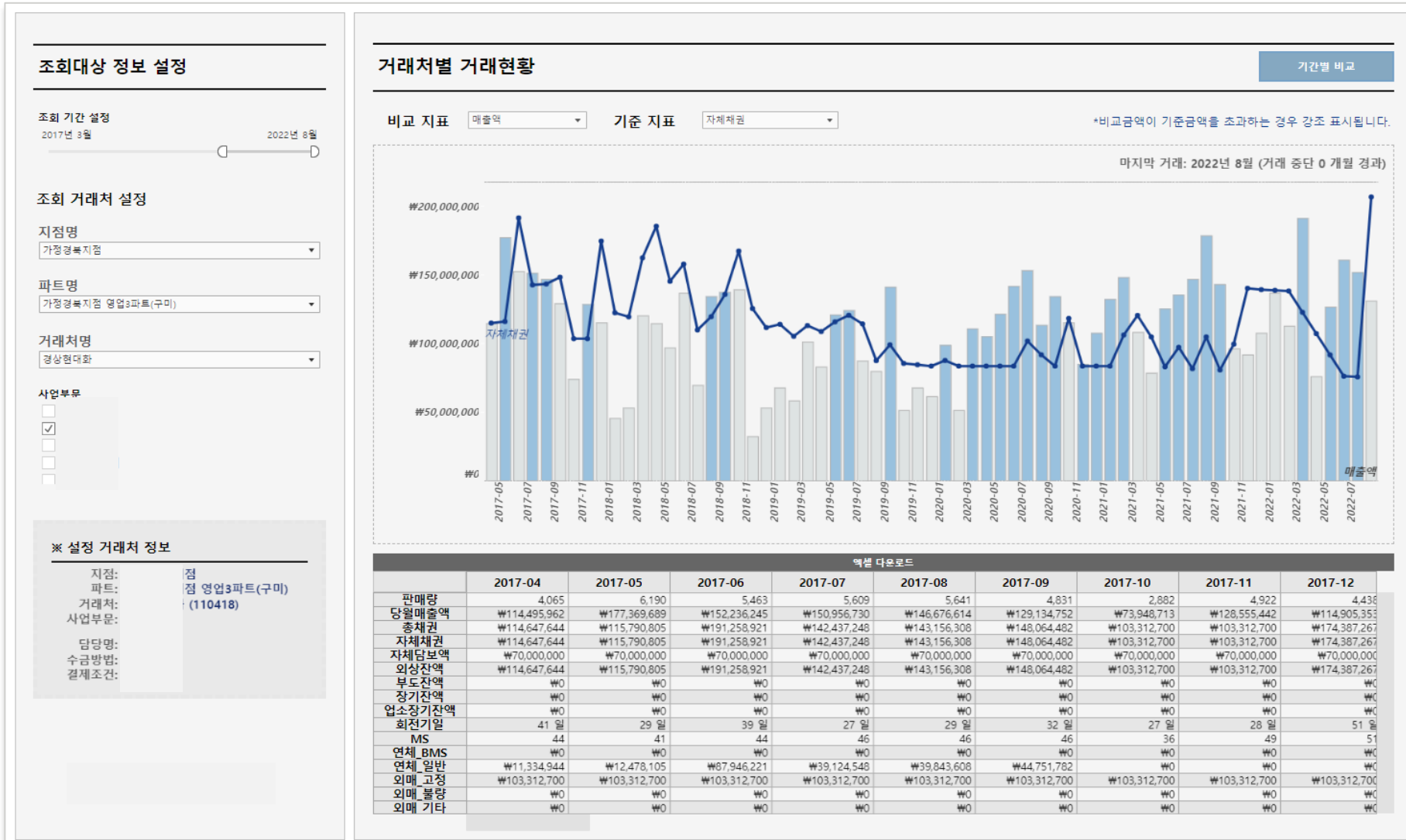
III. 데이터 시각화 활용 예시

4. 상시모니터링 대시보드 예시 - 자택/사용지역 법인카드 사용현황



III. 데이터 시각화 활용 예시

5. 상시모니터링 대시보드 예시 - 거래처별 담보 및 채권현황



III. 데이터 시각화 활용 예시

6. 상시모니터링 대시보드 예시 - 발주처별 구매 현황

조회대상 정보 설정

고액기준 변경
₩30,000,000

조회대상 기간 설정
2021-01-04 ~ 2022-07-31

장소유형 선택
 (전체)
 공장
 지점

발주처명 (기본) 선택
강원공장 생산

발주처명 (상세) 선택
(전체)

품목유형 선택
(전체)

발주처별 구매현황

구매금액 합계

₩35,072,166,912

구매건수 합계

3,148 건

고액구매건수 합계
(₩30,000,000 만원 이상)

135 건

품목별 구매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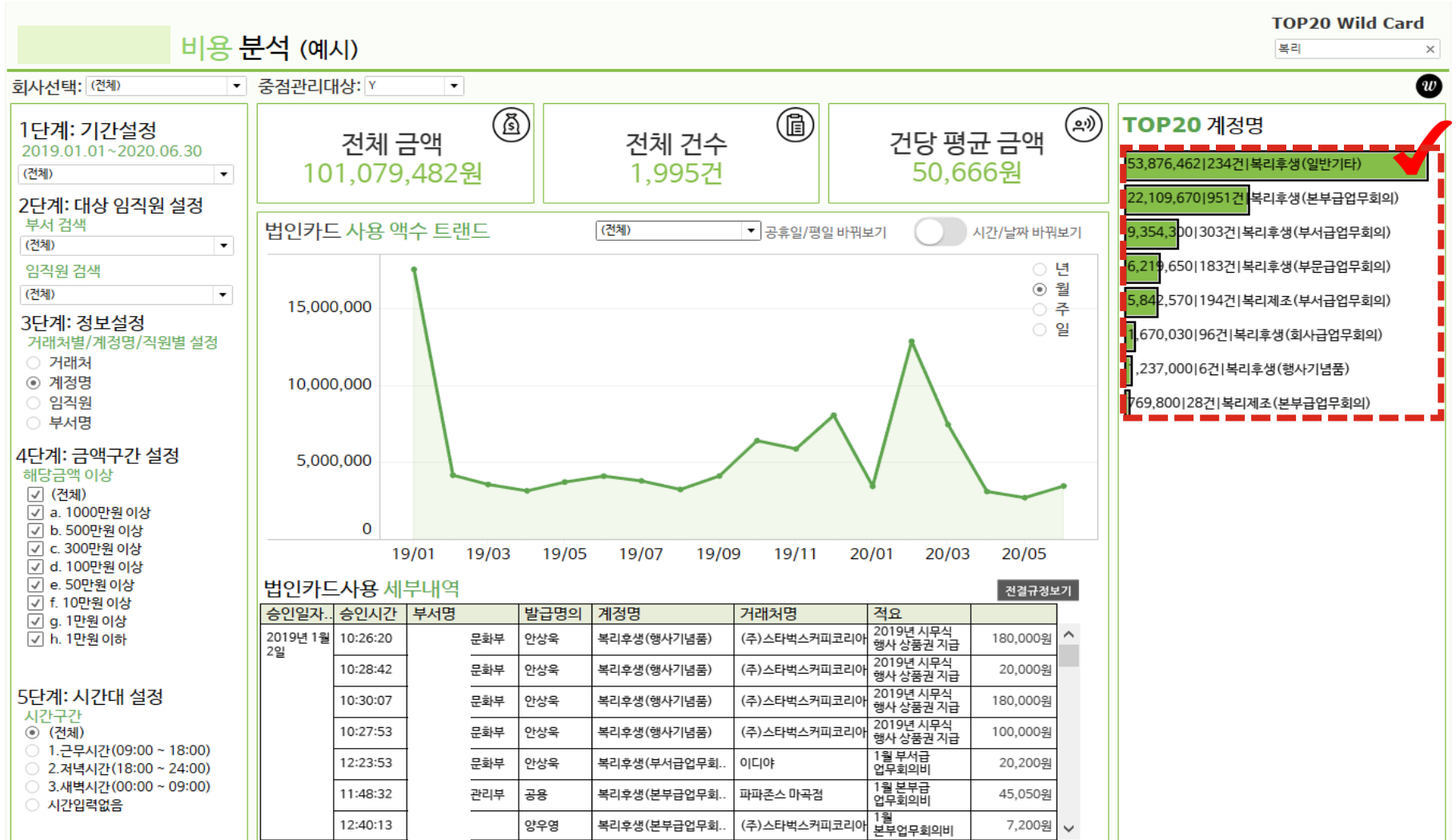
구매금액 추이

직전 6개월 평균값과 비교

| 순번 | 발주번호 | 구매발주일 | 유형 | 발주처명(기본) | 발주처명(상세) | 총 발주금액 | 거래처명 | 품목유형 | 품목명 |
|----|------------|----------------|----|----------|----------|------------|--------|------|----------------------------|
| 1 | 155224-1-1 | 2021-01-04 (월) | 공장 | 생산 | 원팀 | 46,200,000 | 기 | 판촉물 | 판촉물**진라면-매운맛, 120g |
| 2 | 155227-1-1 | 2021-01-04 (월) | 공장 | 생산 | 발1팀 | 600,000 | 내셔널(주) | 소모품 | 기타소모품**Cellometer PI Stain |
| 3 | 155227-2-1 | 2021-01-04 (월) | 공장 | 생산 | 발1팀 | 350,000 | 내셔널(주) | 소모품 | 기타소모품**실험실의자-에넥스 |
| 4 | 155227-3-1 | 2021-01-04 (월) | 공장 | 생산 | 발1팀 | 80,000 | 내셔널(주) | 소모품 | 기타소모품**가스용기 거치대-2 |
| 5 | 155227-4-1 | 2021-01-04 (월) | 공장 | 생산 | 발1팀 | 25,000 | 내셔널(주) | 소모품 | 기타소모품**고정용 압축 버클 : |
| 6 | 155227-5-1 | 2021-01-04 (월) | 공장 | 생산 | 발1팀 | 105,000 | 내셔널(주) | 소모품 | 기타소모품**Washing solution |
| 7 | 155279-1-1 | 2021-01-05 (화) | 공장 | 생산 | 품팀 | 1,044,000 | 아이 | 소모품 | 잉크류**잉크-메이크업(대주) V: |
| 8 | 155279-2-1 | 2021-01-05 (화) | 공장 | 생산 | 품팀 | 220,000 | 아이 | 소모품 | 잉크류**잉크-삼원씨엠아이 V4: |
| 9 | 155287-1-1 | 2021-01-05 (화) | 공장 | 생산 | 원팀 | 21,800,000 | 로산업(주) | 판촉물 | 판촉물**테라 중족기-500CC, 3: |
| 10 | 155289-1-1 | 2021-01-05 (화) | 공장 | 생산 | 원팀 | 46,200,000 | 기 | 판촉물 | 판촉물**진라면소컵(매운맛)-65: |
| 11 | 155289-2-1 | 2021-01-05 (화) | 공장 | 생산 | 원팀 | 46,200,000 | 기 | 판촉물 | 판촉물**진라면소컵(매운맛)-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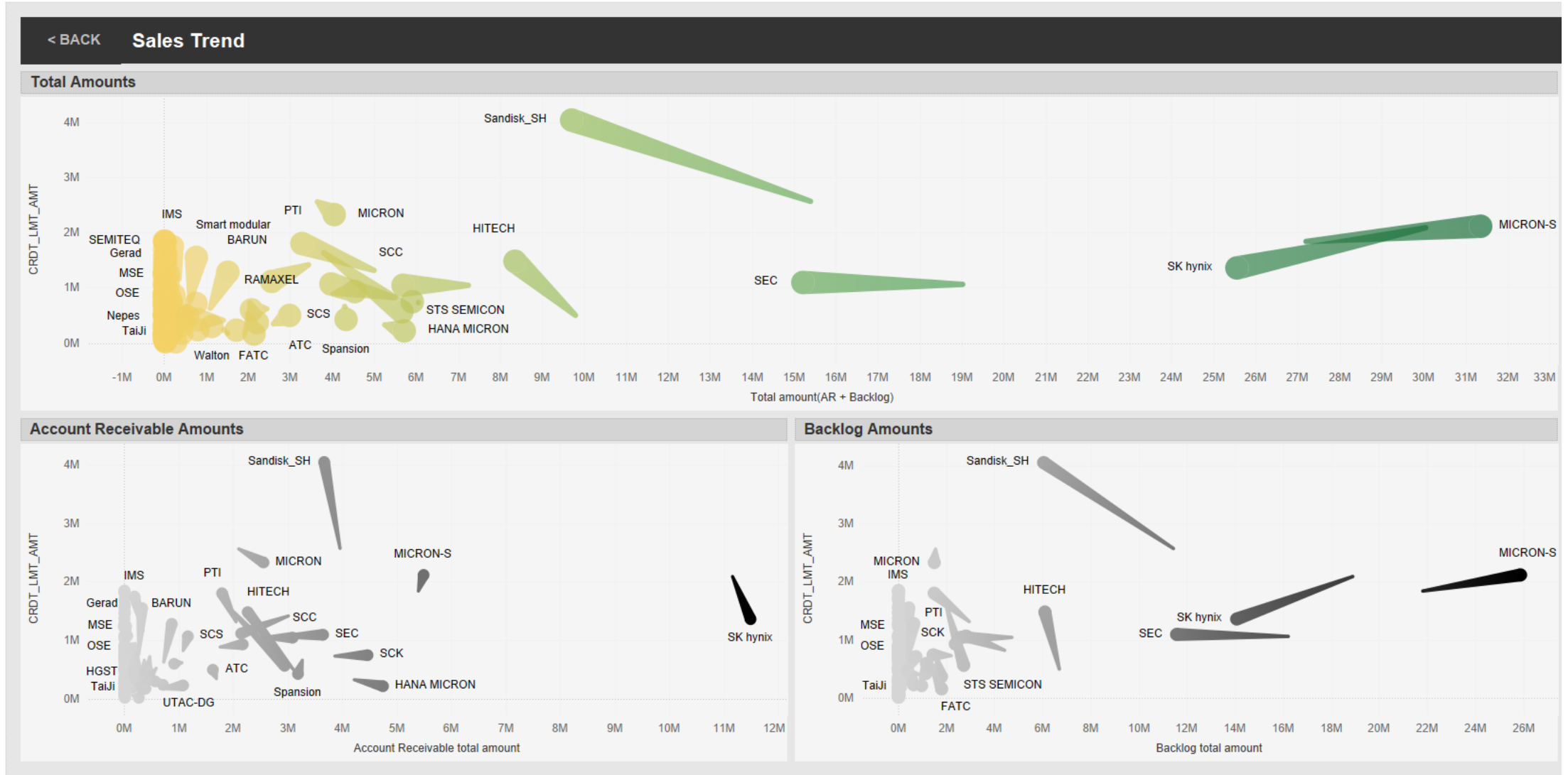
III. 데이터 시각화 활용 예시

7. 상시모니터링 대시보드 예시 - 비용 분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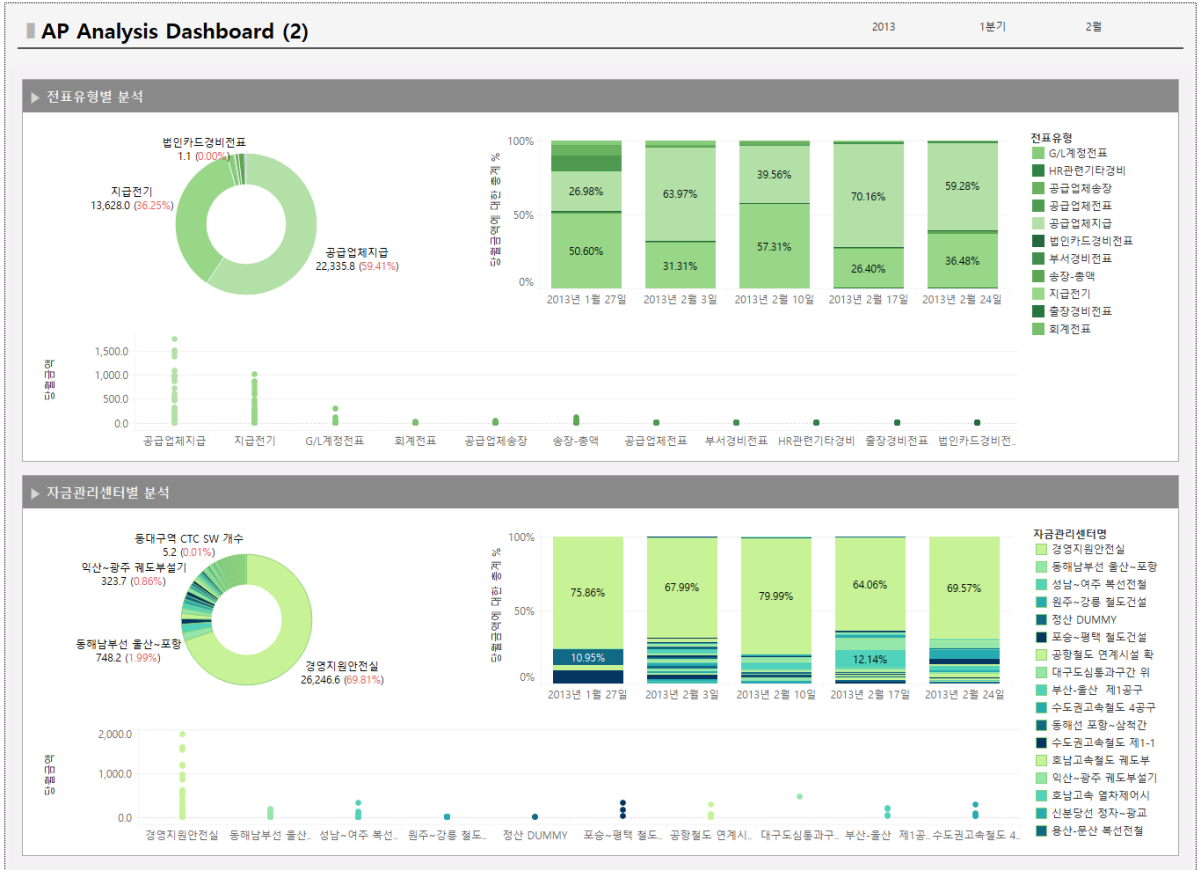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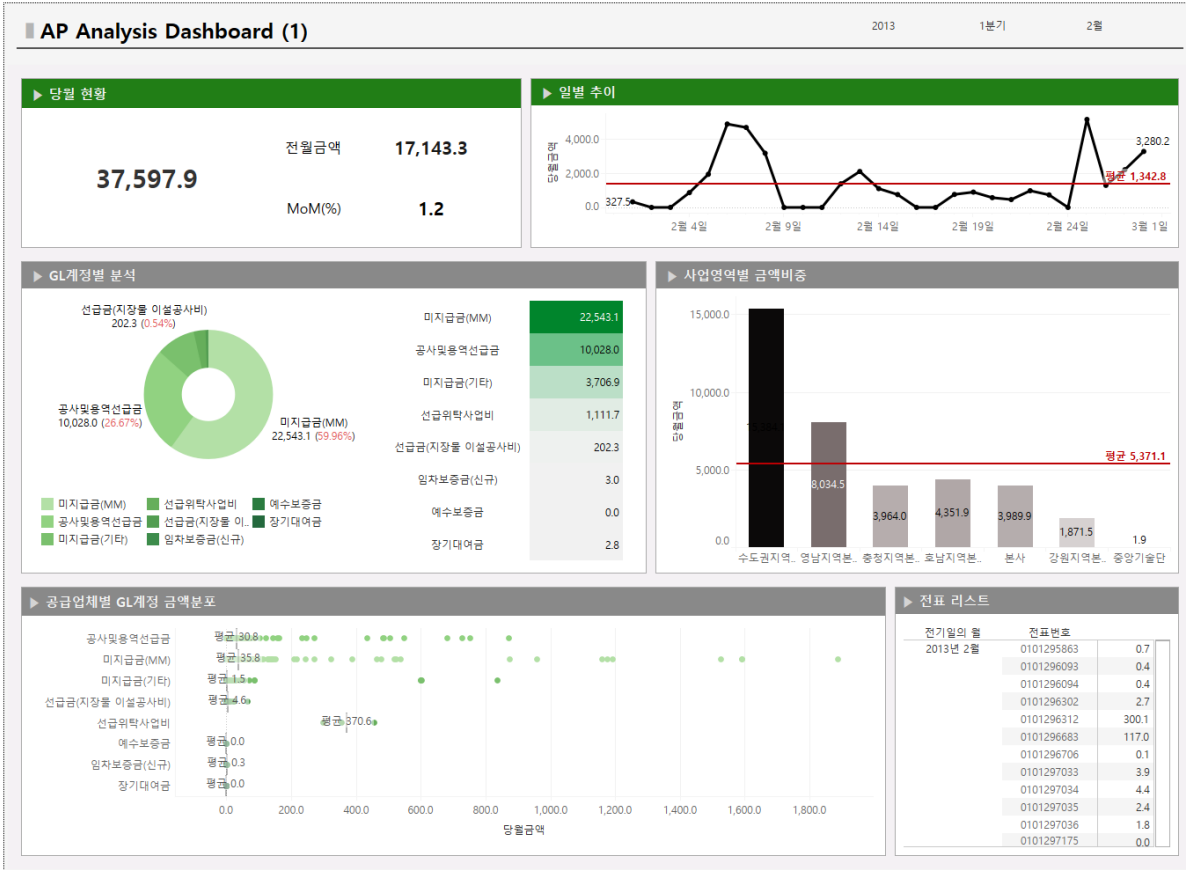
III. 데이터 시각화 활용 예시

8. 상시모니터링 대시보드 예시 - 매출현황 및 재무분석



III. 데이터 시각화 활용 예시

9. 상시모니터링 대시보드 예시 - 매출현황 및 재무분석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